



의류 및 신발 부분의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지침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

• • •

Originally published by the OECD in English under the title: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 © OECD 2018, <https://doi.org/10.1787/9789264290587-en>.

This translation was not created by the OECD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n official OECD translation. The quality of the translation and its coherence with the original language text of the work ar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 or authors of the translation.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original work and the translation, only the text of original work shall be considered valid.

© Korean National Contact Point 2023, for this translation.

• • •

이 번역본의 원 저작물은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의 제목으로 OECD에서 출판한 것이다. © OECD 2018, <https://doi.org/10.1787/9789264290587-en>.

이 번역본은 OECD가 번역한 것이 아니며, 공식적인 OECD의 번역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번역의 질, 원어 내용과의 일관성은 온전히 번역자의 책임에 달려 있다. 원 저작물과 번역본 간에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원 저작물의 문구만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번역본의 저작권은 한국NCP에 있다. © 한국NCP, 2023

본 문서에 표현된 의견과 주장은 반드시 OECD 회원국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 및 지도는 영토의 지위 또는 주권, 국제 국경 및 경계, 영토, 도시, 지역의 명칭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서 문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 이하 ‘지침’)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실사 권고사항을 의류 및 신발 부문의 공급망에서 이행함으로써 기업 활동과 공급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지지해 의류 및 신발 부문 기업 활동이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 기업 그리고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 간 상호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본 지침은 기업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포함된 실사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돕는다. 또한 본 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관련 ILO 협약 및 권고(ILO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의 원칙에 관한 삼자 선언(ILO Tripartite Declaration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과도 일치한다. 본 지침은 특정 위험 부분에 관한 실사 모듈과 함께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의 책임있는 운영 및 공급 활동에 대한 완전한 내용을 기업에게 제공한다.

본 지침은 OECD 가입국 및 비가입국, 기업, 노동, 시민사회 대표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깊이 참여해 마련하고, 기업책임경영 실무단(Working Party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 감독했다. 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 자문단(Advisory Group)이 2015년 3월에 설립되었고 독일이 의장을 맡았다. 본 지침은 자문단의 구성원은 물론 2015년 10월 1-2일 개최한 의류 및 신발 부문 공급망 실사에 관한 원탁회의(Roundtable on Due Diligence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upply Chain), 2016 2-3월에 열린 공개 자문 등 정기적으로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본 지침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접근방식을 지향한다.

본 지침은 섬유 및 의류 부문에서의 OECD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의 심층 보고서에 기반하고,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EU,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의 주도에 따라 작성되었다. 또한 라나 플라자(Rana Plaza)가 붕괴된 비극적인 사건 이후 여러 NCP가 2013년 6월과 2014년 사이 작성한 성명서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섬유 및 기성 의류와 관련해 산업 전반에 걸친 실사 기준을 선포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환영하는 2014년 6월 26일 채택된 기업책임에 관한 각료 성명서(Ministerial Communiqué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그리고 G7 회담이 열린 2015년 6월 7-8일 독일 쉘로스 엘마우(Schloss Elmau)에서 채택된 G7 정상 선언문(G7 Leaders' Declaration)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OECD 실무단(OECD Working Party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은 2016년 10월 24일, OECD 투자위원회(OECD Investment Committee)는 2017년 1월 14일 본 지침을 승인했다.

이사회(Council)는 2017년 5월 17일 지침에 관한 OECD 권고사항(OECD Recommendation on the Guidance)을 채택했다.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공통적인 입장과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다.

OECD는 기업이 여러 부문에서 책임있는 공급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부문에 맞춘 지침을 개발했으며, 특히 분쟁 및 고위험 지역 광물, 채광, 농업, 금융 부문 지침이 있다.

목 차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실사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사항	9
지침에 사용된 용어	12
지침 개요	15
배경	15
지침의 목적	15
목표 대상	15
지침의 근거	17
법규 준수	17
혜택	18
지침의 구조	19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사에 대한 소개와 실사 이행을 위한 주요 개념	20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사	22
의미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24
실사에 대한 협력	25
실사 적용 시 젠더에 관한 고려	29

섹션 I

의류 및 신발 부문의 핵심 실사 지침

1. 기업 정책 및 관리 체계에 기업책임경영을 정착	33
2.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실제적 및 잠재적 피해를 파악	40
3.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피해를 중단, 예방 또는 완화	59
4. 추적	74
5. 의사소통	79
6. 적절한 경우 구제책을 제공 또는 협력	83

섹션 II
부문 위험 모듈

모듈 1. 아동노동	95
모듈 2. 직장에서의 성희롱,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106
모듈 3. 강제노동	114
모듈 4. 근무시간	122
모듈 5. 직업 안전 및 건강	126
모듈 6. 노조 및 단체교섭	132
모듈 7. 임금	138

환경 모듈에 관한 소개

모듈 8. 유해화학물질	146
모듈 9. 물	151
모듈 10. 온실가스배출	156
모듈 11. 뇌물 및 부패	161
모듈 12. 가내노동자로부터의 책임있는 공급	168

표

1. 실사 이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보관	39
2.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의 위험	42
3. 실사 성격 및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45
4. 공급업체 평가와 관련해 실사 성격 및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55
5. 운영 상황과 관련해 실사 성격 및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56
6. 피해와 적절한 행동의 관계	57
7. 기업 공급망 피해 예방 및 완화와 관련해 실사 성격 및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71
8. 운영 수준에서의 고충처리 제도의 핵심 기준 및 구성요소 예시	85
9.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의 아동노동 위험 요인	96
10. 성희롱,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107
11.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의 강제노동 위험 요인	115
12. 반노조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설명	134
13.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고 제품수명주기 단계별 개선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의 예시	158

14. 기업 청렴성에 대한 외부 위협 요인 162
 15. 기업 청렴성에 대한 내부 위협 요인 163

상자

1. 경쟁법 및 기업책임경영 27
 2. 하도급 및 기타 실사 절차에 관한 정책 35
 3. 단계 2 이전(예. 원료)에서의 피해 위험을 평가 및 해결하기 위한 방법 52
 4. 책임있는 구매 관행을 통한 피해 예방 64
 5. 간접 공급 시 통제 방법 66
 6. 영향력을 고려한 실사의 성격 72
 7. 효과적인 구제책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84
 8. 조기 경보 체제와 구제 절차의 차이 88
 9. 다자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제도의 구성 89
 10. 차별 및 젠더에 기반한 차별 112
 11. 제조업에서 과도한 근무시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123
 12. 중소기업을 위한 권고사항 130
 13. 의정합의서 136
 14. 고위험 공급 국가 파악 143
 15. 가내노동자와 관련한 인권 침해 및 노동 착취 방지 및 완화를 위한 기본틀 .. 168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소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1976년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선언 및 결정(이하 선언)’의 네 부분 중 한 부분이다. 회원국은 선언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국제 투자 환경을 만들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독려하는 가이드라인의 원칙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현재 35개의 OECD 회원국과 11개의 비회원국 총 46개 가입국이 선언을 비준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2011년에 가장 최근 개정되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구성 내용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정부 권고사항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책임경영을 구성하는 정보의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및 부패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 및 기술, 경쟁 그리고 조세의 총 9개 주요 영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가이드라인은 가입국에서 또는 가입국에 본거지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입국 정부의 권고사항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Council) 결정에 따라 가입국은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하고,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문의 및 해결을 처리하기 위한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를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 기업 윤리의 주요 영역에서 위험에 기반한 실사를 포함시키도록 한 최초의 국제적 수단이다.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실사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사항

2017년 5월 17일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협정(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제5.b조를 고려하며,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C(76)99/FINAL]),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결정(Decision of the Council on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2000)96/FINAL as amended by C/MIN(2011)11/FINAL], 이하 ‘가이드라인에 관한 결정’), 국제 비즈니스 거래 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분쟁 및 고위험 지역 광물에 대한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실사 지침에 대한 이사회 권고사항(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C/MIN(2011)12/FINAL, as amended by C(2012)93]), 투자를 위한 정책 기본틀에 관한 이사회 권고사항(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C(2015)56/REV1]), 책임있는 농업 공급망을 위한 OECD-FAO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사항(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OECD-FAO Guidance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Supply Chains [C(2016)83]), 그리고 채광 부문의 의미있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실사 지침에 대한 이사회 권고사항(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Due Diligence Guidance for Meaningful Stakeholder Engagement in the Extractive Sector [C(2016)100])을 유념하며,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여러 정부가 권고하는 공동의 목적은 기업책임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상기하며,

투자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결정에 따라 NCP와의 협력을 통해 특정 상품, 지역, 부문 또는 산업에서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전 대책 의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 또한 상기하며,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책임있는 공급망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공동체,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력을 인정하며,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책임있는 공급망을 구성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고, 이 부문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포괄적 성장을 강화하고, 노동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가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도록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책임있는 공급망을 구성하는데 각각의 역량과 역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실사는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뇌물 및 부패 방지와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기업이 방지 및 완화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사전예방적이고 사후대응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 [C(2017)63/ADD1], 이하 ‘지침’)을 투자위원회가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본 지침은 기업 자체 활동 또는 사업 관계를 통한 실제적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과 그 해결책을 파악, 분석, 완화, 설명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는 실사의 기본틀을 제안한다는 점과, 아동노동, 직장에서의 성희롱,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강제노동, 근무시간, 직업 안전 및 건강, 노조 및 단체교섭, 임금, 유해화학물질, 물, 온실가스배출, 뇌물 및 부패, 가내노동자로부터의 책임있는 공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투자위원회의 제안으로,

- I. 기업이 의류 및 신발 공급망에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기업책임경영 기준을 준수해 기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권고사항에 가입하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하 가입국), 관련있는 경우 각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가 가입국에서 또는 가입국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기업이 본 지침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을 권고하며,
- II. 가입국에서 또는 가입국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기업이 지침에 명시된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실사 기본틀을 도입하도록 특히 가입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며,
- III. 가입국 및 관련 있는 경우 각 NCP가 OECD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본 지침을 가능한 한 널리 배포해 기업(원료 및 섬유 생산업체, 재료 제조업체 및 가공업체, 부품 제조업체, 의류 및 신발 제조업체, 브랜드, 유통업체, 중간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보장하고, 기업 단체, 노조, 시민사회단체,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 부문별 구상이 본 지침을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배포 및 이행 활동에 관해 투자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하며,
- IV. 본 권고사항을 가입국과 사무총장이 배포하도록 권유하며,
- V. 본 권고사항을 비가입국이 적절히 고려하고 준수할 것을 권유하며,
- VI. 권고사항의 이행을 투자위원회가 감시하고, 채택 후 5년 이내 그리고 이후 적절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지침에 사용된 용어

부정적 영향 : OECD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부정적 영향으로, 정보의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공여, 청탁 및 강요 방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포함한다.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피해(harm)라는 용어는 이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사업 관계 : 사업 협력으로 인한 관계, 공급망에 있는 사업장, 기업의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가 및 비국가 집단을 포함한다. 사업관계는 기업 공급망에 있는 어떠한 공급업체 또는 사업 협력업체도 포함할 수 있다. (OECD 가이드라인 제4장 해설 45)

조임목/초크포인트 : 초크포인트는 다음을 포함한다.

- 공급망 변화 시 핵심 부분
- 일반적으로 다량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소수의 행위자가 처리하는 등 공급망 단계
- 생산 및 무역 상류 활동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력이 있는 공급망 단계

시정조치계획 :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시간 제한이 있고 행동가능한 계획이다. 섹션 3를 참고한다.

직접 공급 : 기업이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가 있다.

차별 :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배경(등)을 이유로 “고용 또는 직업에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무효화 또는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구분, 배제 또는 선호이다. (ILO 협약 제111호)

실사 : 실제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 예방, 완화하고, 부정적 영향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실사의 범위가 단순히 기업 자체에 대한 심각한 리스크의 파악 및 관리를 넘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의 리스크도 포함된다면, 실사는 보다 광범위한 기업 위험 관리 체계 내에 포함될 수 있다. (OECD 가이드라인, 제2장, 해설, 14)

강제노동 :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이다. (ILO, 강제근로협약, 1930년, 제29호)

젠더 기반 폭력 :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이 있는 성별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이다. 차별할 의도가 없었던 상황에도 해당된다. 성별에 근거해 불리하고 불평등한 기존 여건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남성과 여성을 동등 또는 중립적인 대우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여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된 결과 또는 효과가 생긴 경우에도 차별일 수 있다.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피해 : 본 지침 전반에 사용되는 “피해”라는 용어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간접 공급 : 기업이 중간업체를 통해 (예. 원료 또는 완제품) 상품을 공급받는다.

영향력/레버리지 : 피해를 초래한 사업체의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데 기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OECD 가이드라인 제2장, 해설, 19)

의미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양측 참가자의 신의성실에 기반한 참여이다. (OECD 가이드라인 제2장, 해설, 2)

완화 : 완화란 부정적인 사건 발생 시 피해를 감소 또는 제거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피해 정도를 경감하기 위해 사건 전, 도중, 후에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예방 : 예방이란 피해의 발생 또는 재발을 막기 위한 행동을 말한다. 즉,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취하는 예방적 조치이다. 본 지침에서는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구제 : 부정적 영향을 구제하기 위해 제공하는 조치이다

위험 : 본 지침 전반에 사용되는 위험이란 인권, 노동권, 환경과 관련해 개인, 단체, 공동체가 받는 피해의 위험을 의미한다. 본 지침에서는 기업 자체가 받는 위험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위험 기반 : 기업이 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위험의 정도에 따라 취하는 조치이다.

부문 위험 : 부문 위험이란 부문에 만연한 위험을 말한다. 의류 및 신발 부문 위험에는 아동노동, 차별, 강제노동, 과도한 근무시간, 노동 관련 건강,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조 또는 대표 조직을 설립 또는 가입할 권리와 단체 협상권을 위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수준이 아닌 임금, 차별, 유해화학물질, 물 소비, 수질 오염, 온실가스배출, 뇌물과 부패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부문 위험에 관한 실사 지침은 섹션 2 모듈을 참고한다.

이해관계자 : 기업이나 기업 대리인이 한 행동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을 포함한다.

하도급 : 개인이나 조직이 다른 기업이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또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부문 위험 : 의류 및 신발 부문의 하위 부문의 특징적인 위험을 말한다. 운동복, 신발, 유니폼 등이 하위 부문에 속한다.

공급업체 : 단순히 보자면 본 지침에서 공급업체란 직간접적으로 기업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 관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에는 제조업체, 섬유 생산업체,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구매 대행업체, 유통업체, 글로벌 상품 판매업체, 처리업체 등 중간업체도 포함한다.

추적 : 기업이 공급망에서 재료와 제품, 생산 환경을 추적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침 개요

배경

의류 및 신발 부문은 수백만의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여성이며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인 경제 활동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 부문에 속한 기업은 자체 기업 활동과 공급을 통해 성장하고, 고용하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문에 속한 공급망 전반에서 기업이 빈번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이 부문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 글로벌 공급망 - 생산 과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고, 주문-납품 사이 리드 타임이 짧고 단기적인 구매업체-공급업체 관계 - 특징으로 인해 기업이 공급업체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고, 기업이 책임을 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배경으로 글로벌 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에 대한 위험, 환경에 대한 피해, 기업 청렴성에 대한 위협을 공급망 전반에 걸쳐 관리해야 한다.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OECD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의류 및 신발 부문에 대한 실사에 관해 공통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이 지침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이행하는 실사 방법을 권고한다. 실사는 지속적이고, 사전예방적, 사후 대응적이어야 하며,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목표 대상

OECD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류 및 신발 공급망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원료 및 섬유 생산업체, 재료 제조업체 및 가공업체, 부품 제조업체, 의류 및 신발 제조업체, 브랜드, 유통업체, 중간업체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지침은 이에 따라 아래 대상과 관련 있다.

- 글로벌 상품 판매업체, 구매 대행업체, 유통업체 등 공급망의 다양한 지점에서 활동하는 기업
- 이와 유사한 부문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실사 적용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지만 본 지침은 특히 중소기업이 자원, 공급망에서의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해 실사 이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소개 부분을 참고한다.
- 민간, 국가, 또는 민간과 국가가 공동으로 소유한 기업

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본 지침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기업을 위한 모범 관행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을 다르게 대우하는 점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다.¹⁾

본 지침은 기업이 영향을 관리할 때 권장되는 조치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해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가 가이드라인을 홍보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²⁾ 마지막으로 본 지침의 권고사항은 실사의 일부 또는 모든 절차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부문 전반 또는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 등 제3자와도 연관있다.

- 1) 다국적기업의 정의는 OECD 가이드라인 목적상 필요하지 않다. 다국적기업은 경제 모든 부문에서 활동한다. 보통 한개 이상 국가에서 설립된 복수의 기업 또는 사업장으로 구성되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조율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모든 사업장(모기업 그리고/또는 현지 사업장)에 적용된다. (OECD 가이드라인, 제1장, 4).
- 2) 2011년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하고,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문의 및 해결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를 설치한다. 본 지침은 가이드라인 홍보를 위해 NCP가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의 제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절차에 관한 해설(Commentary on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5 참조.

지침의 근거

본 지침은 OECD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원칙, 권고사항, 기준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본 지침은 의류 및 신발 부문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대사항을 명확히하고자 하며, 기대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권과 관련해 가이드라인과 본 지침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그리고 기타 ILO 협약과 권고사항과 일치시키고자 한다.

본 지침은 섬유 및 의류 부문에서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관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NCP의 보고서에 기반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마련하였다.³⁾ 본 지침은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⁴⁾

법규 준수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업의 최우선적 의무다. 가이드라인은 국내법과 규제를 대체하지 않으며 무효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여러 영역에서 국내법과 규제보다 광범위할 수 있으나 기업의 필요요건을 서로 상충하게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법과 규제가 가이드라인 원칙과 기준과 상충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기업은 최대한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이드라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 3) French NCP fo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3), NCP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ECD Guidelines in the Textile and Clothing Sector,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Paris; Italian NCP fo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4), Report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 the Textile and Garment Supply Chain, Recommendations of the Italian NCP on Implementa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General Directorate for Industrial Policy, Competitivenes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GPICPMI), Rome 참조.
- 4) 본 지침은 법적 의무가 아니나 지침에서 규정한 일부 관행, 기준, 원칙은 예컨대 비재무적 보고 요건과 뇌물 및 부패에 대한 실사 등 국내법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혜택

본 지침은 기업이 정부 정책과 조화롭게 활동하고, 기업과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 간 상호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OECD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지지한다.

본 지침은 가이드라인과 UNGP, 기타 기업책임경영(RBC)과 관련된 기준 - 예컨대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관련 ILO 협약과 권고사항,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의 원칙에 관한 삼자 선언(ILO Tripartite Declaration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등 - 에 포함된 실사 권고사항을 기업이 이행하는데 지원할 것이다.

또한 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보고 등 기업책임경영(RBC)에 대한 실사를 요구하는 관할권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이러한 규제 요건에 따르는데 본 지침이 도움될 수 있다. 또한 본 지침은 기업이 정부, 근로자,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지침을 이행할 때 예상되는 다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책임있는 공급망과 관련한 고객과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역량이 강화되고
- 참가하는 기업 및 부문에 대한 평판이 개선되고
- 하나의 기업책임경영(RBC) 기준 체계와 사무소, 사업지, 국가, 지역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일관성있는 기업 활동을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활동 결과가 더 통일성이 있고, 법규 준수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 기업 자체 활동과 공급망에서 가이드라인이 다룬 문제가 발생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위험을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지침의 구조

섹션 I	섹션 II
<p>의류 및 신발 부문의 핵심실사지침</p> <p>섹션 I은 우선 가이드라인상 기대사항과 실사의 특징과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개괄한다. 섹션 I 그리고 II 모두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협력, 젠더에 관한 고려사항이 포함된다.</p> <p>섹션 I은 의류 및 신발 부문에 속한 기업이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실사를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 일련의 지침을 제공한다. 각 하위 섹션은 실사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 해당한다. 핵심실사지침에 포함된 권고사항은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험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p>	<p>부문 위험에 관한 모듈</p> <p>섹션 II는 섹션 I에 따른 실사 권고사항을 의류 및 신발 부문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섹션 II 모듈은 별도의 지침이 아니라 섹션 I의 핵심지침 (Core Guidance)을 보충하고, 기업이 구체적인 부문 위험에 맞춰 실사를 적용하는 접근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듈은 기술적인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다. 본 지침의 권고사항과 일치되는 기존 지침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p>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사에 대한 소개와 실사 이행을 위한 주요 개념

OECD 가이드라인의 기대사항

“기업은 위험에 기반한 실사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실사를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에 포함시켜 [...] 실제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 예방, 완화한다. 실사의 성격과 범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OECD 가이드라인, 제2장, A10)

“기업은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피하고, 그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한다.” (OECD 가이드라인, 제2장, A11)

“기업이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사업 관계에 의해 부정적 영향이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사업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과 사업 관계에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OECD 가이드라인, 제2장, A12)

실사 절차 및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지원 조치

기업 정책과 관리 구조에 기업책임경영(RBC)을 내재한다.

-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기업책임경영(RBC)에 관한 기업의 의지를 명시한 정책을 도입한다.
-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피해 위험에 대한 실사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 구조를 강화한다.

〈실사 절차〉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실제적 및 잠재적 피해를 파악한다.

-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피해 위험 규모를 파악한다.
- 기업 자체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 현장에서 위험이 높은 공급업체를 평가한다.
- 기업과 영향과의 관계를 평가한다.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피해를 중단, 예방, 또는 완화한다.

- 기업 자체 운영에서 피해를 중단, 예방, 또는 완화한다.
- 기업 공급망에서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도록 노력한다.

추적

- 기업 자체 운영에서 실사 절차와 그 효과를 확인, 감시, 검증한다.*
- 기업 공급망에서 실사 절차와 그 효과를 확인, 감시, 검증한다.

의사소통

- 기업이 실제적 및 잠재적 피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실사 절차에 대해 공개한다.
- 영향 받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한다.

적절한 경우 구제를 제공하거나 협력한다

- 기업 자체 운영에서 구제 절차를 수립한다.
-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시된 기업에 대한 이의사항을 듣는다.

* 실사의 효과는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실제적 및 잠재적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 및 완화했는지에 따라 측정된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사

실사는 기업이 실제적,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방식을 파악, 예방, 완화, 설명하는 과정이다.⁵⁾ 실사는 구체적인 부정적 영향(즉, 피해)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행한다. 기업은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 있는 공급업체, 기타 사업 관계에 대해 실사를 이행할 것이 기대된다. 실사는 기업의 운영과 운영 환경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피해의 위험 또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지속적인 과정이다.⁶⁾

주요 용어

부정적 영향 - 가이드라인 맥락상 “부정적 영향(adverse impact)”은 (예컨대 아동노동, 차별, 유해화학물질 등) 가이드라인이 다룬 사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영향(harmful impact)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harm)”와 “부정적 영향(adverse impact)”은 본 지침에 걸쳐 서로 대체가능한 용어이다.

위험 - 본 지침 전반에 사용되는 “위험”이란 인권, 노동권, 환경과 관련해 개인, 단체, 공동체가 받는 피해의 위험을 의미한다. 본 지침은 기업 자체가 받는 위험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위험 기반

실사는 위험에 기반한다. 본 지침에 걸쳐 이 개념은 실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 실사 조치는 피해의 가능성과 정도에 따라 달라야 한다. 예컨대 노동 규제가 약한 국가가 공급체인 경우 노동 규제가 강한 국가로부터 공급체인 경우보다 더 광범위하게 아동노동, 강제노동, 기타 노동 관련 영향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피해의 가능성과 정도에 따라 기업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5) 가이드라인, 제2장, 해설 14 참조.

6) 가이드라인, 제4장, 해설 45 참조.

실사의 특징과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모든 기업은 그 규모나 운영 상황에 관계 없이 실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합당한 특정 조치 등, 실사의 성격과 범위는 기업의 규모, 운영 상황,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권고사항,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과 정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⁷⁾ 또한 인권에 대한 실사를 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는 다른 위험한 영역에 대한 실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지침은 기업의 규모, 사업의 특징과 공급 모델이 실사의 특징과 범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그러나 이외 다른 요소도 실사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공급 모델:** 기업의 공급 구조가 실사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경우 공급업체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대행업체와 협력할 수 있다. 단순한 설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급 모델을 제시한다.
 - **직접 공급:** 기업이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를 맺는다.⁸⁾
 - **간접 공급:** 기업이 중간업체를 통해 (예. 원료 또는 완제품) 상품을 공급받는다.
- **기업의 규모:** 기업의 규모가 실사를 이행할 책임을 변경하지는 않지만 규모에 따라 기업이 실사를 적용하는 방법이 영향받을 수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실사를 이행할 자원, 지식, 역량이 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운영 규모가 더 작고 공급업체 수도 더 적다.
- **사업의 특징:** 유통업체, 브랜드, 구매 대행업체, 제조업체 등 기업의 사업 특징이 실사를 이행하는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유통업체가 판매하지만 소유하지 않는 브랜드에 대한 실사 조치와 자사가 소유하는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실사 조치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7) 가이드라인, 제2장, 해설 15 참조.

8) “직접 공급(direct sourcing)”이란 용어는 가이드라인상 “직접 연관(directly linked)”이란 용어와 혼동하면 안된다. 공급망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과 직접 연관이 있기 위해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업은 실사 과정에서 영향받은 이해관계자가 의미있는 참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참여는 양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신의성실에 따르고, 반응이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사실에 따른 완전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자신이 영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기업이나 기업 대리인의 행동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받거나 영향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을 포함한다. 의류 및 신발 부문 이해관계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기업에 속한 근로자, 기업을 대신해 업무하는 기타 근로자,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노조 및 근로자 대표조직
- 기업 활동에 영향받는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근로자,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노조 및 근로자 대표조직
- 기업의 공급업체
- 기업 운영에 영향받는 공동체 일원
- 기업이 운영하거나 공급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

이해관계자는 다음 실사 과정, 즉 실사 과정의 계획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현장 공급업체 평가. 섹션 2.3 참조
- 수정 행동 계획 마련. 섹션 3 참조
- 영향을 확인, 검증, 감시한다. 섹션 4 참조
- 운영 수준에서의 고충처리 제도를 마련한다. 섹션 6.1 참조

실제로 근로자,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노조 및 근로자 대표조직을 노동 관련 위험에 대한 실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의 위험을 파악할 때 기업은 이해관계자와 협의, 즉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입장을 요청할 것을 권장한다.

실제로 기업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참여 방식을 찾을 것을 권장한다. 노사관계는 관리자가 근로자를 전체적으로 참여시키는데 중요한 이해관계자 참여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기업은 기업 활동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나 그 대리인을 참여시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실사에 대한 협력

본 지침의 여러 권고사항은 직접 노조와 협력 또는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을 통해 부문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지침 또한 협력을 물론 권장한다. 협력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파악, 예방 또는 완화할 책임이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사의 수단으로써 협력할 수 있다. 협력을 통한 혜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지침 섹션 I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은 아니다.

부문의 협력

부문의 협력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고,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정보의 축적** -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여러 기업은 동일한 국가와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다. 이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면 이 부문에 있는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대부분의 개별 기업보다 앞으로 일어날 위험을 더 빨리 인지할 수 있다.
- **영향력의 강화** - 영향력이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공급업체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은 공급업체와 관련해 해로운 영향을 파악, 예방,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약한 경우 등 개별 기업이 영향력이 부족한 여러 이유가 있다. 개별 기업의 영향력은 부족할 수 있으나 여러 기업이 협력하는 경우 공급업체의 시정조치계획에 포함된 행동이나 일정, 후속 조치를 일치시킴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확장 효과가 있는 조치** - 협력 구상은 효과가 있었던 (정책, 교육, 역량강화 등) 대안을 계획 시 중복을 피하면서 확장할 수 있다.⁹⁾ 확장을 통해 해결책을 시도할 초기 투자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

9) 공급업체 평가와 계획(예. 교육 구상) 중복하면 공급업체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축적, 배포하거나, 공급업체 역량을 강화하지 못한채 공급업체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일관성 있는 평가가 높은 기준을 준수한다면, 평가 방식의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인정하는 협력 구상을 통해 공급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부문 투명성 증대** - 협력을 통해 예컨대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 이행한 시정조치계획, 측정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축적된 정보를 더 쉽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문의 투명성을 더 광범위하게 높이고 동시에 준비되는대로 현장 수준의 의사소통을 개별 기업이 할 수 있게 된다.

부문의 협력을 통해 비용을 나누고 절감하는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유용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덧붙여 영향이 특정 지역에서 한 부문을 넘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우, (영향을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보다) 부문 간 협력이 더 효과적인 조치를 파악하고 확장시키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예컨대 아동노동은 모듈 1, 강제노동은 모듈 3을 참고한다.

노조와 직접 합의

위 섹션에서 언급했다시피 기업은 근로자와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노조 및 근로자 대표조직을 실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기업은 (i) 실사 과정을 수립 및 이행하는 데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촉진하거나, (ii) 근로자의 권리 기준을 충족하고 기업을 책임지게 하거나, (iii) 근로자 권리와 관련해 고충을 제기하는 데 노조와 직접 합의할 수 있다. 노조와의 직접 협력에는 글로벌 기준 협약, 결사의 자유 의정합의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예시는 아니다.

- 글로벌 기준 협약(global framework agreements, GFAs)이란 국제적 수준에서 기업과 세계노동연맹(Global Union Federation, GUF)이 협의해 합의한 문서이다. 이 협약은 기준이 특정 국가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노조의 권리, 건강, 안전, 환경 관련 관행, 근로 원칙 수준에 대한 기준을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GFA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
- 결사의 자유 의정합의서는 특정한 환경 아래 노사관계에서 결사의 자유 이행과 관련해 노조와 기업 간 공동으로 이해하고 합의한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는 특정 지역에 있는 단일 브랜드, 공급업체와 노사 간 합의하거나, 넓은 지역 또는 부문에 걸쳐 여러 구매업체, 공급업체 단체와 노조가 합의할 수 있다. 의정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
- 부문 합의서란 의류 및 신발 부문의 구체적인 부문 위험에 국제 노조와 기업이 협력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합의한 기업과 노조 간 합의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모든 구성원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와 기본틀을 형성한다.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

기업은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multi-stakeholder initiatives, ‘MSIs’)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은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부문 위험에 대응하거나 실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은 정의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포함하지만 구성원과 목적은 다양하다.

협력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

협력을 할 때 협력 구상 참여자들끼리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부문에서 (예컨대 공동의 공급업체 등록 또는 ID 코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업체를 파악하도록 권장한다.

협력 구상과 경쟁법의 양립성은 실사를 위한 협력과 관련해 부문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경쟁의 중요한 요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경쟁법은 기업 간 협력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자세한 정보는 상자 1을 참고한다.

상자 1. 경쟁법과 기업책임경영(RBC)*

경쟁의 중요한 요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경쟁법은 기업 간 협력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경쟁법과 정책은 (i) 공고한 담합/노골적인 제한, (ii) 기타 반경쟁적 합의서, (iii) 시장 지배력 또는 시장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 또는 확대하는 반경쟁적이고 일방적인 행위, 그리고 (iv) 반경쟁적 인수합병을 금지한다. 독립적인 경쟁자 간 협력하는 행위는 i 그리고 ii 부분에서 검토된다.

많은 경우 - 아마 대다수의 경우 - 기업은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고 기업책임경영(RBC)과 실사에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법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 또는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구상이 - 다음 내용을 하도록 권장한다.

- 특정 행동이나 협력 활동이 경쟁법에 반해 규제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 경쟁 당국의 자문을 구한다

- 협력 구상에 투명성을 확립함으로써 경쟁에 관한 우려를 줄인다. 경쟁 당국은 경쟁자들의 행동이 완전히 비공개적인 경우 구상이나 합의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투명성은 잠재적인 문제를 밝히고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반독점 법규 준수 프로그램을 만든다. 특정 관할권에 있는 경쟁 당국은 준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안내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모범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도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한다. Capobianco, Gillard and Bijelic, (2015), “Competition law an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eference material for the session on Competition Law an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f the Global Forum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ECD, Paris.

책임성

위에 언급했다시피 기업은 각각 실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협력 시 개별 기업의 특정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즉, 기업이 협력 구상의 효과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예컨대,

- 피해와 새로 발생하는 위험을 독립적으로 파악한 경우 보고한다.¹⁰⁾
- 기업 자체 운영 또는 공급업체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예컨대 공급업체 목록을 협력 구상에 기밀로 공유한다).
- 필요한 경우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실사 과정 단계에 협력하기 위해 협력 구상에 참여하는 경우, 협력 구상이 실사의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실사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상이 다음 내용을 하도록 권장한다.

- 구상이 실사의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한다(예컨대 부문 위험을 파악한다, 위험 우선순위를 확인한다 등).

10) 예컨대 기업에 피해의 위험이 늘어날 수 있는 현지 상황의 변화를 이해관계자가 주목할 수 있다. 기업은 이에 대해 구상과 공유해야 한다.

- 구상의 접근방식이 본 지침의 권고사항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본 지침과 일치하는 실사를 구상이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를 구할 수 있다.

실사 적용 시 젠더에 관한 고려

의류 및 신발 공급망에서 근로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피해 위험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다. 예컨대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이 더 불안정, 비공식, 또는 불규칙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저임금 여성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특히 취약하다. 특정한 환경에 놓인 여성의 특유한 입장이 실사의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기업은 다음 내용을 하도록 권장한다.

- 영향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소수민족, 젊은 여성 등) 여성이 얼마나 불균형적으로 여파를 받는지 고려한다. 예컨대 이 부문에서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대상은 여성이 압도적이다.
-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의도치 않게 여성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확인한다.
- 감시 및 평가 조치를 수립할 때 여성을 참여시킨다.
- 고충처리 제도가 모든 관련 당사자(예컨대 여성, 남성, 이주노동자 등)에게 동등하게 접근가능한지 평가한다.
- 이익제기자가 자신의 젠더, 종교 등을 불문하고 고충처리 제도 사용 지점에 있는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취약 집단에 속한 여성을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섹션 I

의류 및 신발 부문의 핵심 실사 지침

1. 기업 정책 및 관리 체계에 기업책임경영(RBC)을 정착

OECD 가이드라인의 기대사항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정보 공개(제2장 2.d)와 인권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갖도록 분명히 권고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 제4장 해설 44).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정책 선언서를 통해 인권존중 의지를 표명할 것을 권고한다. 기업 정책선언서는 (i) 기업 최고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ii) 기업 내외부의 전문지식을 반영하고 (iii) 직원, 비즈니스 협력업체, 그 밖에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당사자,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기대 수준을 명시해야 하고 (iv) 대중에게 공개되고 모든 종업원, 비즈니스 협력업체, 기타 관련당사자에게 내외부적으로 공지되어야 하고 (v) 진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정책 및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OECD 가이드라인 제4장 해설 44)

가이드라인은 정보 공개와 인권 외 정책적 의지를 확립하도록 권고하지는 않으나 모범적인 관행은 가이드라인의 모든 장에 적용가능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1.1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 기업책임경영(RBC)에 대한 기업 의지를 명확히 밝힌 기업책임경영(RBC) 정책을 도입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기업 정책은:

- 기업 자체 활동과 관련한 의지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전반에 걸쳐 공급업체, 인허가 소지자, 중간업체 등 사업 협력업체에 대한 기업의 기대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가이드라인이 다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연관된 부문 위험과 하위 부문 위험에 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관련 국제 기준을 분명히 언급한다.¹¹⁾
-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가장 중대한 위험에 대한 실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 섹션 2.1를 참고한다.
- (유통업체, 브랜드, 기타 구매업체는) 책임있는 공급 관행, 즉 공급 관행이 해로운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 상자 4를 참고한다.
- 직접적인 공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기업은 이에 대한 기대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관련있는 경우 “하도급”에 대한 정의와 하도급한 업무가 구별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포함한다. 상자 2를 참고한다.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있는 경우 가내노동에 대한 외부 위탁과 수작업에 대한 기업의 기대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모듈 12를 참고한다.
- 실사 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 받은 이해관계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사에 대한 소개 부분을 참고한다.
- 기업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이의를 제기된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듣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공급망에 초래했거나 기여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측정되고 입증된 이의를 듣고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포함해야 한다. 섹션 6.2를 참고한다.

11) 의류 및 신발 부문 위험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강제노동, 근무시간, 직업 안전 및 건강, 노조와 근로자 대표 조직을 설립 또는 가입할 권리와 단체교섭권, 보상, 차별, 유해화학물질, 물 소비, 수질 오염,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뇌물 및 부패. 국제 기준의 예시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등이 포함된다. 국가나 기업 운영의 특정 상황에 불문하고 모든 경우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에 명시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참조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제4장 39 참조.

상자 2. 하도급 및 기타 실사 절차에 관한 정책

의류 및 신발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서 제3자에게 하도급 주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관행이다. 기업은 하도급을 통해 주문-납품 사이 짧은 리드 타임과 주문 변경에 빠르게 대응하거나, 디자인과 같은 특정 업무에 특성화하거나, 스크린 날염과 같이 기업에서 하지 않는 특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을 하면 공급망에서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고, 인권과 노동권이 침해되고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험 정도가 높은 환경에서 활동하고 하도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실사 조치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실사의 일부로써 기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기대사항에 대해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활동하는 직접 공급업체에 대한 기대사항을 분명히 수립해야 한다.

기업이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기업이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공급망에 있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실사를 실행하거나, 공급업체가 실사를 실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즉, 실제로 실사의 모든 절차 단계를, 예컨대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계획을 개발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치 등, 하도급업체에 대해 실행해야 한다. 협력 구상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실사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투명성과 하도급업체 선정에 대한 분명한 요건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제요건:** 직접 계약하는 업체와 마찬가지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제요건 확인 절차를 엄격히 거쳐야 한다. 섹션 3.2.2를 참고한다. 공급업체가 사전에 승인받은 하도급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밟도록 권장한다. 승인받은 하도급업체는 거의 정기적인, 예컨대 매년, 검토를 통해 승인을 연장받을 수 있다. 직접 계약하는 업체와 마찬가지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도 고충처리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 절차:** 직접 공급업체는 사전에 승인받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직접 계약업체는 다음 내용을 공개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 하도급 업무의 목적
 - 사전 승인받은 하도급업체의 선정
 - 하도급업체에 대한 최신 정보 그리고
 - 계약 배분 규모

- 가능한 경우 제조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관련있는 경우 시정조치계획을 마련하고 감시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권장한다.

기업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허가받지 않은 공급업체가 하도급을 계속 할 위험을 줄이도록 추가 조치를 마련하거나, 주문으로 인해 강제적인 초과근무나 다른 노동 관련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예컨대 기업이 주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하도급이 발생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문-납품 사이 리드타임 또한 변경돼야 한다. 즉, 하도급을 할 요인을 줄여야 한다.

정책의 성격

기업책임경영(RBC) 정책은 하나로, 또는 개별적으로 여러개로, 또는 행동강령이나 기업 윤리원칙 등과 같이 더 폭넓은 기업지배구조 문서의 일부에 통합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과 의지에 기업책임경영 정책을 덧붙일 수 있다.¹²⁾

정책의 도입과 갱신

기업책임경영(RBC) 정책은 관련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정보를 통해 수립하고, 기업 최고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책임경영(RBC) 정책은 고정된 문서가 아니라 기업 공급망 피해 위험에 대해 늘어나는 지식과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예컨대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의 피해 위험을 파악한 후 자체 정책과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다. 섹션 2.1를 참고한다.

정책에 대한 의사소통

기업책임경영(RBC) 정책은 모든 근로자, 공급업체, 기타 사업 협력업체,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섹션 5.1를 참고한다.

12) 가이드라인과 본 실사지침의 차이, 특히 실사에 대한 기대사항과 관련 분석은 최근 내용으로 변경할 부분을 주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협력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는 당사자를 위해 여러 부문 구상, 노조 합의,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이 정책이나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기업은 기존 의지에 이러한 정책을 도입 또는 일치시킴으로써 정책 평가에 대한 부문 협력을 촉진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기업이 도입하는 정책은 본 지침 내 권고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부문 구상, 노조 합의,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에는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 발생하는 위험을 기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실사 성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

모든 기업은 그 규모, 공급망에서의 위치, 장소를 불문하고 기업책임경영(RBC)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정책은 자체 운영 및 공급망의 구체적인 피해 위험을 반영해야 하며, 이어 자체 상품, 비즈니스 모델, 공급 모델, 활동하거나 공급받는 국가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기업이 구체적인 상황과 공급 모델을 다루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예컨대 제3자 채용 또는 고용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책임있는 채용 및 고용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1.2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의 피해 위험에 대한 실사 이행을 위한 관리 체제 강화

개요

기업은:

- 기업책임경영(RBC)에 대한 접근과 이행을 주도할 이사회 및 고위경영진급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기업책임경영을 감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마련 또는 강화하도록 권장한다.
- 필요한 역량, 지식 그리고 경험을 갖춘 고위급 구성원에게 기업책임경영(RBC) 정책 이행을 감시하는 책임을 맡긴다.
- 인권, 노동, 환경, 청렴성 관련 위험에 대한 실사에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주고 이에 따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한다.

- 적절한 근무 시간을 보장하고 공급망 실사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의사결정

기업은 실사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컨대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기업이 권장받은 염료 색상과 재료에 따라 더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될 위험이 높은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한다. 기업은 비용과 실사 가능성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킨다.
- 기업이 인권 침해가 있다고 알려진 국가에 진출하려고 한다. 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책임 있게 활동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비용과 인권에 대한 실사 가능성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킨다.

기능의 일치

기업책임경영(RBC) 정책은 특징상 (공급, 디자인 등) 여러 내부 부서와 관련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 부서 및 사업부에 걸쳐, 특히 사업부의 동기 요인이 기업책임경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치시키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기업이 기능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사업부 간 실사와 기업책임경영 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촉진한다.
- 실사 관련 정보가 적절하고, 적합하고, 관련 의사결정자가 제공받도록 보장한다.
- (새로운 고위험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등) 기업 자체 운영 또는 공급망에서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사업부를 의사결정에 포함시킨다.

예컨대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구매부의 동기 요인은 공급업체의 인권, 노동, 환경 평가를 감시하는 사업부의 동기 유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구매부는 예컨대 공급과 관련해 사전에 인정받은 공급업체,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인정받은 하도급업체, 공급업체의 주문 수용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최신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실사를 지지하기 위한 정보 구조

기업은 실사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최신으로,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정보 관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는 5년 동안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이 지침 경우 실사를 위한 정보 파악과 관련해 <표 1>을 참고한다.¹³⁾

〈표 1〉 실시 이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보관

정 보	참고할 지침 부분
기업이 구매 및 생산하는 상품과 이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할 때 연 관된 일반적인 피해의 위험	섹션 2.1
(유통업체) 기업이 판매하는 브랜드 및 관련 제품 목록	표 3
(유통업체) 기업이 판매하는 브랜드가 실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표 3
피해 위험이 높다고 간주되는 국가로부터 기업이 공급받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한 정보. 원료 수출국 등 기업 공급망 상류에 있는 국가를 포함한다.	섹션 2.1
피해 위험이 높다고 간주되는 국가 또는 단계에서 운영하는 기업 공급업체 및 기타 사업 협력업체	섹션 2.3
(선택) 심각한 위험이 있는 기업 공급망 상류와 연관된 제품 공급 망의 조임목/초크포인트	상자 3
가내노동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슬, 자수, 가죽 등) 공급망 단계	모듈 12
하도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공급망 단계	상자 2
기업의 위험 분석 활동 결과	섹션 2.1
개별 공급업체 분석 결과	섹션 2.3
관련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공급업체의 의지	섹션 3.1
사전 자격 승인을 받은 공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목록	섹션 3.2.2

13)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공급망지도에 대해 많이 강조해왔다. 기업이 어디에 있는 어떤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실사, 특히 실제적 및 잠재적 피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며(섹션 2 참조), 이러한 영향을 예방 및 방지하는 데도 중요하다(섹션 3 참조). 기업은 본 지침에 따른 실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만큼 공급업체와 기타 기업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본 지침은 기업이 어느 수준의 공급망까지 지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기업이 어떻게 실사를 하는지 정당화할 수 있을만큼일 것을 기대한다(섹션 5 참조). 즉, 기업은 공급망 위험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실제적 및 잠재적 피해를 파악

OECD 가이드라인의 기대사항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가이드라인이 다룬 사항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할 것을 기대한다고 규정한다. (OECD 가이드라인, 제2장 A10)

기업 자체 운영으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제2장 A11) “기업이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사업 관계에 의해 부정적 영향이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로 인한 영향도 위 내용에 포함된다. (OECD 가이드라인, 제2장 A12)

가이드라인 맥락상 “사업 관계”란 “협력업체, 공급망 내 사업장, 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외의 비정부 조직이나 정부 조직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OECD 가이드라인, 제4장 해설 43)

2.1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의 피해 위험 분석

기업은 가장 중대한 자체 운영 및 공급망의 피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해야 한다. 이미 알려진 부문 위험은 물론 관련 위험 요인을 고려해 분석해야 한다. 분석은 정기적이고, 정보에 기반하고, 기록되어야 한다.

기업은 기업이 운영하거나 공급받는 국가, 기업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 자체 사업 및 공급 관행에 기반해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 대한 피해 위험의 가능성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문 및 하위 부문에서 위험을 파악할 것을 권장한다. 각 위험 요인은 아래 설명하였다. 기업은 원료부터 유통까지 일반적으로 위험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은 알려진 모든 정보에 기반해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 가장 중대한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피해 위험을 파악하여야 한다. 기업이 보유한 제품군의 수, 공급받는 국가의 수 등과 같은 요인은 기업이 공급망 피해 위험을 파악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3을 참고한다.

방법론

기업은 기록 및 통계에 기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권장한다. 기업은 근로자 대표단체를 포함하는 외부 이해관계자 자문단을 만들어 분석 과정에서 의견을 받고 새로운 문제 발생 시 표시해둘 수 있다. 조기 경보 제도 또는 고충 처리 제도에서 제기된 문제를 통해 영향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은 분석 결과를 (예컨대 2년마다) 거의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실사는 고정된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자체 운영 및 공급망의 피해 위험을 이해하는데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가의 규제들이 변경되는 등 변화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문 위험

부문 위험이란 전 세계 상품군과 지역에 걸쳐 의류 및 신발 산업에 만연한 위험을 의미한다. 의류 및 신발 공급망의 주요 특징을 보면 - 저숙련, 노동집약적, 분산된 생산, 짧은 주문-납품 리드타임 - 특정 노동 및 인권이 영향받을 위험이 높다. 대부분의 위험은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존재한다. 이와 유사하게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 및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는 의류 및 신발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서 특정한 환경 피해 위험을 높인다. 예컨대 습식처리 과정은 재단-제작-봉제(CMT) 과정보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위험이 높다. 공

통된 부문 위험은 기록이 있으며, 아래 목록에 포함했다. 일부 하위 부문 (예컨대 명품, 스포츠 의류, 작업복 등) 경우 (동물 복지 등) 특유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있는 경우 고려되어야 한다.¹⁴⁾

〈표 2〉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의 위험*

인권 및 노동 위험	환경 위험	청렴성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노동 • 차별 • 강제노동 • 직업 건강 및 안전 (예. 근로자 상해 및 건강 문제) • 노조 설립 또는 가입 권리 및 단체협상권 • 최저임금법 위반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수준이 아닌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 물 소비 • 수질 오염 • 온실가스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 및 부패

* 부문 위험은 위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품 위험 요인

일부 상품은 공정 과정에서 다른 상품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높다. 예컨대 목화 상품은 파라티온(Parathion), 알카브(Aldicarb) 그리고 메타미도포(Methamidopho) 등 유해한 농약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반면, 폴리에스테르 상품은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할 위험이 높을 수 있다.¹⁵⁾

국가 위험 요인

국가 위험 요인이란 위에 언급한 부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국가의 환경,

-
- 14) 동물 복지, 농업 및 축산업, 토지 권리 관련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본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의류 및 신발 공급망의 일부 행위자와 연관있을 수 있다. OECD는 이에 대한 실사를 OECD-FAO 책임있는 농업 공급망 지침(OECD-FAO Guidance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Supply Chains)에서 설명한다.
- 15) 폴리에스테르 섬유 생산은 (섬유 125 MJ/kg 만큼이나)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Muthu, S. (2014), *Assess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extiles and Clothing Supply Chain*, Series in Textiles, Woodhead Publishing, Cambridge.

생산 지역, 또는 특정 국가의 산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배구조, 사회경제, 산업 요인이 포함된다. 예컨대 이주노동자가 많은 경우 아동노동, 강제노동, 임금 관련법 위반, 성희롱이 일어날 위험 확률이 높다.¹⁶⁾ 부문 위험에 걸친 국가 위험 요인과 관련해 섹션 2 모듈을 참고한다.

비즈니스 모델 위험 요인

기업 비즈니스 모델은 판매하는 제품군 수나 제품군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즉, 연간 시즌) 등 요인이 기업 공급망의 피해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유통업체가 이와 관련했으나 다양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다.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자체 운영 및 공급망의 피해 위험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상품군 수와 종류가 많은 기업은 다양한 재료와 생산공정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공급망에서 위험이 더 광범위하고 높을 수 있다.
- 제품 주기가 매년 시즌이 있는 기업은 제품의 디자인부터 생산까지의 기간이 짧을 것을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대응시간이 짧으면 주문이 변경되고, 급한 주문이 있고, 기타 구매 관행으로 인해 과도한 초과근무, 강제적인 초과근무, 허가받지 않은 외부 위탁 등 노동 및 인권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
- 제품 주기가 다양하면 마찬가지로 기업이 더 많은 재료와 자원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탄소, 물, 폐기물이 발생한다.
- 기업의 해외 활동 범위와 그 활동 통제 범위에 따라 청렴성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공급 모델 위험 요인

이와 유사하게 기업의 공급 모델은 공급받는 공급업체 수, 계약 관계의 성격, 직접 또는 간접 공급 유형에 따라 공급망의 피해 위험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공급업체 수가 많으면 기업 공급망 피해가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많은 수의 공급업체와 공급망 실사에 투입하는 자원을 통제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
- 기업과 공급업체 간 관계 변화 가능성에 따라 기업이 공급망 위험을 파악, 예방, 또는

16) 높은 이주노동자 비율이 특정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 위험이 높다는 신호가 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이주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공급업체와 협력하지 않을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은 이주노동자를 책임있게 고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에 맞춘 실사를 해야 한다.

완화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공급업체와 관계가 단기간인 경우 공급업체 평가 시 파악한 위험을 적절히 예방 또는 완화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또 파악된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공급업체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주문 기간이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일반적인 계약 기간 하에서는 기업이 공급업체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적을 수 있다.

- 예컨대 판매 대행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을 받고, 적절한 중간업체를 선정하는 적절한 절차가 없는 기업은 공급업체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력이 제한적이다.
-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거나 공급을 받는 기업은 그 규모에 따라 더 많은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의 가장 중대한 피해 위험 파악

기업은 알려진 모든 정보에 기반해 피해 가능성과 심각성에 따라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어떤 피해 위험이 가장 중대한지 파악해야 하며, 이 위험에 대한 조치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피해의 심각성은 정도, 범위, 구제불가능성에 따라 판단한다.

- “정도”란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을 말한다.
- “범위”란 영향 받거나 받을 사람의 수와 관련있다.
- “구제불가능성”이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이전 상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으로 복구할 능력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의류 및 신발 부문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가장 중대한 피해 위험을 파악하는데 기업의 판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동참시킬 것을 권장한다. 모든 경우 기업은 어떻게 위험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했는지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섹션 5를 참고한다.

협력

기업은 특정 생산 공정, 국가, 공급 모델 등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또는 산업 차원에서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부문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발생하는 피해의 위험을 파악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실사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모든 제품군과 공급 국가에 걸친 일반적인 피해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은 지침을 이행하는데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상품군이나 부품이 특정 위험과 관련있다는 것을 (예. 보고서나 이해관계자 참여, 고충처리 제도 등을 통해) 알게된 경우, 기업은 이 정보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석을 통해 얻은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표 3> 실사 성격 및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상황	권고사항
기업에 여러 제품군이 있다	기업은 가장 심각한 피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제품군 또는 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제품군의 피해 위험을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 이 위험을 파악하고 처리한 후 이어서 다른 제품군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
기업이 여러 제품을 판매한다 (즉, 여러 부품요소)	모든 부품요소에 대한 피해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은 우선 완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과 관련된 피해 위험을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이 지퍼와 금속 장식이 있는 가죽 자켓을 판매하는 경우, 우선 가죽의 공급, 염색, 마감, 완제품 제작에 주목할 수 있다.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운영 또는 공급받는 경우	기업은 영향의 위험이 가장 중대한 국가부터 파악하고 이 위험 평가에 기반해, 분석 과정에 공급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포함시킨다.
기업이 재료 원산지 국가에 대한 가시성이 없는 경우 (예. 원료)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공급망에 있는 재료 가공업체에게 판매되는 원료의 원산지일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알아내기 위해 원료의 무역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예. 특정 국가에서 활동하는 방직업체가 대부분 구매하는 목화 원산지를 파악한다). 큰 다국적기업이 거래하는 상품 경우, 기업은 국제적인 상품 거래업체(예. 먼 거래업체)에게 연락해 원료를 어디서 공급받아 기업의 재료 가공업체가 위치한 국가에서 팔리는지 문의할 수 있다.

<p>유통업체</p>	<p>기업은 자체 소유한 브랜드와 소유하지 않지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둘 다 실사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서로 다를 수 있다.</p> <p>기업이 자체 브랜드를 소유한 경우 본 지침을 따라야 한다. 자체 브랜드가 아닌 경우 그 브랜드의 실사 여부와 실사 범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기업이 여러 브랜드를 판매하는 경우, 우선 가장 큰 거래 비중을 차지하는 브랜드나 가장 피해 위험이 높은 상품을 우선순위에 둔다.</p> <p>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 소유하지 않지만 판매하는 브랜드와 관련된 피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만들 것을 권장한다. 예컨대 기업이 판매하는 브랜드의 실사 관행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사전 자격 승인 절차를 만들 수 있다.</p>
<p>허가권자</p>	<p>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기업은 상표권을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실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양할 수 있다. 예컨대 허가권자는 피허가권자에게 본 지침에 따른 실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피허가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기업은 피허가권자가 실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피허가권자가 본 지침에 따른 실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직접 도와줄 수도 있다.</p> <p>시간이 지나면서 상표권을 사용하는 상품과 연관된 피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만들 것을 권장한다. 예컨대 피허가권자의 실사 관행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사전 자격 승인 절차를 만들 수 있다.</p>

2.2 기업 자체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기업이 자체 운영에서 피해 위험을 파악한 경우 위험의 정도와 현지 실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방법론

가능한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 대해 기존의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¹⁷⁾ 섹션 II 모듈에는 부문 위험에 대한 보충적인 권고사항과 정부 및 국제기관 자료 일부를 목록에 포함했다.

기업은 자체 운영에서 잠재적 및 실제적 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직원, 근로자, 노조,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대표 조직 등 영향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해관계자 참여에 더해 기업은 예방 또는 완화하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체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기업이 자체평가 시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제도, 조치의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파악한 위험에 대한 최고관리자급 정책 및 의사
- 구매 관행 및 가격 설정. 상자 4. 참고
- 위험 관련 규칙과 절차
- 법규 준수를 위한 기존 프로그램
- 기업 운영의 위험에 대한 근로자 교육, 기술과 지식
- 재무 자원과 거래를 추적, 관리, 보고하는 등 재무에 대한 통제. 뇌물과 부패에 대해 모듈 11 참고
-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파악하는 경보 제도 등 감시 절차
- 내부신고 및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
- 인권과 노동에 대한 영향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 (예. 운영 차원에서 고충처리 제도)

다음 경우 기업이 외부 도움을 받아 자체평가를 할 것을 권장한다.

- 영향을 적절히 예방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예. 유해화학물질 처리)

17) ILO는 근로자를 위해 노동 관련 위험을 파악하고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광범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예방 조치인 경우 (예. 화재, 건물, 전기 안전)

2.3 현지 수준에서 위험이 높은 피해와 관련된 공급업체를 평가

공급업체의 선정 (위험 기준 접근방식)

기업은 분석 과정에서 피해 위험 우선순위가 높은 공급업체를 평가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공급망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피해 위험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즉, 1단계 기업의 영향을 3단계에서 더 증대한 피해 위험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평가보다 반드시 우선순위에 놓을 필요는 없다).¹⁸⁾ 그러나 일부 요인, 예컨대 공급업체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 기업의 규모나 공급업체 수 등이 기업이 공급업체를 평가할 때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사의 성격과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아래를 참고한다.

위험이 높은 공급업체를 확인할 때 고려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공급업체가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활동한다.
- 공급업체가 위험이 높은 생산 공정과 관련있다(예. 습식처리 과정은 유해화학물질 위험이 높다).
- 이전 공급업체 평가에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험이 확인됐다.

내용

대부분의 피해 위험에 대해 기업은 공급업체 평가 시 다음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이행한 조치 (예. 정책, 교육, 시설 개선)
- 현지 실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험 (예.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처리)
-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수준

공급업체가 운영 차원에서 고충처리 제도를 설립했는지, 설립한 경우 권고사항과의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 표 8에 나온 운영 수준에서의 고충처리 제도 및 권고사항을 참고한다.

18) 이러한 접근방식은 오직 1단계 공급업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발생 지점이 어디에 있든지 기업의 가장 심각한 위험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접근방식 & 방법론

- 평가는 위험에 따라 (예. 조사, 인터뷰, 표적집단 활용 등) 달라야 한다. 모든 위험에 맞는 하나의 평가 방식은 없다. 예컨대 현지 건물 구조 건전성, 화재, 안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조사가 필요한 반면, 직장에서의 성희롱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장 밖에서 표적집단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노동 및 인권 문제 경우 근로자 인터뷰가 확실히 뒷받침돼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또는 스스로 선택한 노조나 대표조직을 통해 평가 계획부터 참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인터뷰 방식은 근로자가 보복의 우려로 정해진 답할 것을 들었을 수 있으므로 민감한 정보를 얻는데 효과적인 방식이 아닐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평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¹⁹⁾
- 평가는 현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평가를 계획할 때 현지 운영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다. 표준적인 평가가 출발점이 될 수는 있으나, 현지 상황에 맞춰야 한다. 평가단은 평가를 계획하고 이행할 때 권력 역학 관계와 일반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아래 “운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참고한다.
- **정보의 확인:** 인권과 노동 관련 위험과 같이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피해 위험 경우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정보 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여러 정보 수집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렴한 삼각측량법은 결과에 대해 신뢰하고 주장할 근거가 된다.
- 실제 결과가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경우 기업은 평가 방법을 조율해야 한다. 예컨대 공급업체에서 과도한 초과근무 위험이 높는데 그런 위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기업은 평가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평가단

평가자는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갖춘 자격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기업이 평가하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 위험과 관련해 광범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현지 상황에 비추어 실제적 및 잠재적 피해 위험을 규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을 이해한다.
-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제 및 국내 기준에 대한 지식이 있다.
- 현지에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등) 역량이 있다.

19) 참여 평가 방식이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기술로, 역할극, 그림이나 도표, 지도를 보여주고 관련 질문을 하거나,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SIMPOC (2005), Manual on Child Labour Rapid Assessment Methodology, ILO, Geneva, UNICEF 참조.

평가자가 모든 위험 영역과 모든 상황에 대해 이러한 역량을 갖춘 경우는 적다.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위에 제시한 모든 역량을 갖춘 평가단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위 역량에 더해 이 부문은 대부분 여성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성희롱, 강제노동 등) 일부 사안이 민감하므로 기업은 평가자의 젠더에 대해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평가의 빈도

평가에 대한 피로는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우려사항이다. 공급업체 평가는 정보에 차이가 있거나 상황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을 때 실시해야 한다. 즉 공급업체 평가를 통해 추가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다음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신규 공급업체는 발주 전에 평가해야 한다. 공급업체 평가 결과에는 기업이 공급업체와 책임있게 협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사전 자격 승인에 대해서는 섹션 3.2.2를 참고한다.
- 공급업체 평가는 기업이 하거나, (작년 등) 합리적인 기간 내 이미 평가가 있는 경우 기존 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뢰할만한 평가”란 실제적 및 잠재적 피해 파악 절차를 본 지침이 제시한 권고사항에 따라 정당성 있는 평가단이 수행한 평가를 말한다. 신뢰할만한 평가가 이미 있는 경우 기업은 내용을 검토한 후 파악된 위험을 예방 또는 완화하고 현지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실사 활동에 초점을 둔다.²⁰⁾
- 기존 공급업체와 관련해 기업은 (기존 평가를 사용하거나) 공급업체를 평가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 감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해 구체적인 위험과 관련해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포함한다. 효과적인 경우, 감시는 지속적이므로 개별 평가보다 더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공급업체에 대해, 가능한 경우, 지속적인 감시는 필요한 때와 장소에 추가 평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감시와 평가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근로자는 아동노동에 대해 주의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공급업체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와 평가는 특히 빨리 변화하고 수치화하기 쉽지 않은 인권과 노동, 예컨대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직업 건강과 안전 관련 일부 측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협상권과 관련된 위험 평가와 관련있다. 감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섹션 4를 참고한다.

20) 예컨대 마지막 평가 이후 상황이 중대하게 변화해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고 예방과 완화에 자원 투입을 우선순위에 둔다.

- 특정 관할권은 피해 위험이 너무 만연해 개별 공급업체를 평가해도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기업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수출가공공단(EPZ)에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성희롱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해 (즉, 기존의 효과적인 고충처리 절차가 없거나 근로자의 의식 제고에 대한 초기 투자가 없어) 기업이 공급업체를 우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가자와 협력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효과적인 운영 차원의 고충처리 제도를 설립하기로 할 수도 있다.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대해 모듈 2를 참고한다.

협력

섹션 1.1에 설명했다시피 기업은 경쟁법을 적절히 고려해 공동된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 부문에서 (공동 공급업체 ID 코드 등) 공급업체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함께 취할 것을 권장한다.

평가가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이 평가 방법을 일치시키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같은 지역이나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가능한 한 공급업체 평가에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증가한 활동을 지원한다고 해서 엄격한 평가 기준을 낮추지 않도록 한다. 예컨대 본 지침 섹션 II은 기업이 인권과 노동 관련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자 인터뷰, 표적집단 논의는 물론 가끔 참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큰 비중을 둘 것을 권장한다. 이에 따라 상황 묘사의 정성 분석을 포함해 기업들이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

기업은 위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 구상 또는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 등을 통해 협력할 것이 권장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망의 조임목/초크포인트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또는 구상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공급망의 실제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조임목/초크포인트 파악
- 조임목/초크포인트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추적
- 본 지침 권고사항에 따라 조임목/초크포인트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상류 공급업체에 대해 실사를 적용하는지 (예. 경영진 감사, 임의적인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파악
- 본 지침 권고사항에 따라 지침을 적용하는 공급망의 조임목/초크포인트에서 운영하는 기업에게 직접 공급

상자 3. 단계 2 이전(예. 원료)에서의 피해 위험을 평가 및 해결하기 위한 방법

기업은 - 예컨대 원료 등 - 공급망 상류 기업 활동이 잘 보이지 않고 영향력이 적어 해당 개별 기업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 기업의 해로운 영향을 규명할 책임은 줄지 않는다. 기업이 목적에 맞는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예컨대 추적 그리고/또는 조임목/초크포인트 분석은 공급망 상류 기업의 피해 위험이 파악, 예방, 또는 완화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의 두 가지 예시이다. 이 부분에서 협력적인 접근방식이 적절하고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

추적

추적이란 공급망에서 생산되는 재료와 상품, 환경을 (가이드라인에서 다룬 사안과 관련해) 추적하는 과정을 말한다. 추적은 기업이 상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추적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본 지침에 따른 이후 조치, 즉 피해 예방과 완화가 필수적이다.

조임목/초크포인트 활용

조임목/초크포인트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 파악할 수 있다.

- 공급망에서 변환 지점
- 상품을 대부분 가공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행위자를 포함하는 공급망 단계
- 공급망 상류 부분 생산과 거래 상황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력이 있는 공급망 단계

정의에 따라 한 기업과 공급망 조임목/초크포인트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몇몇 상류 공급업체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조임목/초크포인트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이 상류 공급업체에 대한 가시성 또는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조임목/초크포인트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상류 공급업체에 대해 실사를 이행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기업은 자체 상류 공급업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위험이 파악, 예방, 완화됐는지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업은 다음 내용을 할 수 있다.

- 공급망 상류의 심각한 영향과 연관된 상품에 대해 공급망 조임목/초크포인트에서 운영하는 (즉, 기업이 볼 수 있는 부분을 넘은) 공급업체를 파악한다.
- 공급망 조임목/초크포인트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그 공급업체와 관련된 피해를 파악, 예방, 완화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의류 및 신발 공급망에서 조임목/초크포인트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국제적인 상품 판매업체 (예. 면화, 고무)
- 수출업체, 가공업체, 도매업체 (예. 분열된 공급망)
- 화학 공장 (예. 합성 섬유)
- 제련소 및 정유소 (예. 금속)

비용 분담

추적을 이행하고 조임목/초크포인트를 참여시키려면 재정 자원이 필요하다. 본 지침은 (효과적인 실사 수단을 보여준 조임목/초크포인트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적절한 경우 공급망 상류에서의 생산에 대한 위험 실사를 지원하는 의무를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본 지침은 기업이 공급업체의 참여로 인한 비용이나 기타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공급업체가 구체적인 구상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오히려 기업은 본 지침과 일치하는 여러 협력 실사 구상, 수단 등을 인정해야 한다.

운영 상황에 대한 이해

기업은 공급업체 평가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 올바른 질문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기 위해 - 또한 장기적으로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업 운영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 내용을 할 것을 권장한다.

- 피해로 인해 가장 많이 영향받을 인구 집단, 피해를 악화시킬 수 있는 현지 위험 요소, 피해의 근본 원인, 피해와 관련된 행위자를 이해한다. 피해로 인해 가장 많이 영향받을 인구 집단을 판단할 때, 기업은 다음 요소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 여성과 남성 간 불평등 (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하면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정과 공동체에서 나이를 불문해 모든 여성이 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질 수 있다)
 - 나이 (특정 사회 경우 나이가 적거나 많은 사람은 기여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돼 무시받을 수 있다)
 - 인종 (더 지배적인 집단이나 진출국 사회와 관련해)
 - 다른 근로자나 관리자와 관련해 사회적인 분류
 - 종교 (특히 소수인 경우)

- 건강 상태 (임신, 만성질환 등)
 -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비중
 - 고용된 가내노동자 비중
 - 교육 수준 (언어, 미취학 정도 등 문해력, 기술)
- 가능한 한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 절차 제도가 이용가능한지 파악한다.
 - 피해를 예방 및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 지역적, 국가적 구상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기존의 구상, 그 목표와 일반적인 영향을 (정보가 이용가능한 경우) 분석하면 이 구상이 공급망 피해를 파악, 예방, 완화,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기업이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은 이용가능한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제적, 지역적 비정부기관이나 국제 기구(예21) 정보를 구하거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국제 노조와 협력한다.

위 지침은 상황마다 특징이 매우 다를 수 있고 복잡한 경우가 많은 인권과 노동 관련 영향 위험과 연관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위 내용은 물 사용과 같은 일부 환경 위험과도 관련된다. 기업이 운영하거나 공급받는 곳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계속 알아야 한다.

협력

기업이 동일한 국가 또는 국가에 있는 생산단지에서 공급받는 경우 위 정보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를 산업에서 널리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실사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기업의 가시성과 영향력 부족함 등을 이유로 위험이 높은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공급망에 있는 해로운 영향을 파악할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기업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표 4>에 권고사항을 참고한다.

21) 예컨대 경제협력기구(OECD),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B)이 있다.

〈표 4〉 공급업체 평가와 관련해 실사 성격 및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상황	권고사항
<p>위험이 높은 공급업체가 여러개이다</p>	<p>기존의 모든 고위험 공급업체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은 규모, 기업이 공급받는 제품 (또는 공급받는 국가) 비중이 가장 중대하거나, 예상되는 영향이 가장 심각한 경우 또는, 피해가 구제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고위험 공급업체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기업은 그 우선순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p>
<p>기업이 직접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약하다</p>	<p>기업이 (a) 공급업체보다 규모가 작거나, (b) 공급업체로 받는 공급량이 제한적인 이유 등으로 기업이 직접 공급업체에 대해 영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업은 공급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공급업체 시설에 접근하거나 시설 평가에 참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실사할 책임이 있다. 이 때 기업은 다음 내용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가능한 경우) 발주량을 늘리고, 더 장기적인 계약을 맺거나 공급업체의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등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늘린다. • 같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다른 기업과 함께 운영, 기간, 공급업체의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를 일치시킴으로써 영향력을 강화한다. • 시간이 지나면서 오직 사전 자격 승인을 받고 평가를 받은 공급업체만 참여시킨다. 사전 자격 승인에 관해 섹션 3.2.2를 참고한다. 신뢰있는 부문 또는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으로부터 평가받은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p>심각한 피해에 대해 고위험 공급업체에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기업은 공급업체와 단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섹션 3.2를 참고한다.</p>
<p>기업이 중간업체를 통해 공급받는다 (예. 구매 대행업체)</p>	<p>기업이 중간업체를 통해 공급을 받더라도 실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본 지침에 따른 실사를 이행하거나 구매 대행업체가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업체는 가격 체계에 공급업체 평가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p> <p>기업은 공급업체를 평가하는 부문 또는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을 소개하는 등 구매업체가 공급업체를 평가하는데 지원을 줄 수 있다. 중간업체의 참여와 관해 상자 5를 참고한다.</p>

<p>기업이 2 단계 공급업체를 평가하고자 한다</p>	<p>기업은 계약 관계가 없는 공급업체에 대해 영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공급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공급업체 시설에 접근하거나 시설 평가에 참여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p> <p>기업은 (예컨대 1 단계에 속한) 직접 공급업체에 (예컨대 2 단계에 속한) 자사의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 이 절차를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예컨대 브랜드가 자사의 재단-제작-봉제(CMT) 공급업체와 협력해 방적업체를 평가할 수 있다.</p> <p>또한 공급업체를 평가하기 위해 수출가공공단(EPZ) 또는 생산공단 등과 같은 공급업체 지역에 대해 부문의 영향력을 모을 수 있다.</p>
<p>공급업체가 2 단계 이상 상류 업체에 속한다 (예. 원료)</p>	<p>기업은 공급망 상류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할 수 있다. 기업은 피해 위험이 높은 상류 공급업체를 확인하기 위해 목적에 맞는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수단의 예시는 상자 3을 참고한다.</p>

* 두 예시 모두 피해 심각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한다. 공급받는 상품의 비중 또는 기업의 규모가 제일 중대한 공급업체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피해 “범위”에 해당하며, 즉, 큰 공급업체가 큰 범위의 피해를 암시할 수 있다.

〈표 5〉 운영 상황과 관련해 실사 성격 및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상황	권고사항
<p>기업의 자원이 제한적이다.</p>	<p>대부분의 경우 기존 정보는 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다. 정보가 없는 경우 기업은 평가 이행을 위해 같은 지역에서 공급받는 다른 기업과 협력할 권을 권장한다. 또 기업은 산업 협회가 평가를 의뢰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다. 제시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를 통합해서 하는 등) 실사 비용을 절감하거나, 책임있는 공급을 한다는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때까지 위험이 적은 국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p>
<p>기업이 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p>	<p>기업은 평가 이행을 의뢰하거나, 현장에서 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공급받는 다른 기업과 협력해 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산업 협회가 평가를 의뢰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다.</p> <p>신규시장이 심각한 인권, 노동, 또는 환경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지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기업이 정보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이 해당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p>

2.4 기업과 영향의 관계 분석

위 과정을 통해 기업은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영향을 파악하였다. 실사의 한 요소로써 파악한 영향을 기업이 야기, 기여, 또는 연관있는지 선의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 기업과 영향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개념적인 업무이다. 그러나 대응에 대한 기대(즉, 기업이 구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표 6> 피해와 적절한 행동의 관계

관계	적절한 행동
기업이 피해를 야기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를 야기 또는 기여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남은 피해를 완화한다. 섹션 3을 참고한다. • 피해를 구제한다. 섹션 6을 참고한다. • 향후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한다. 섹션 3을 참고한다.
기업이 피해에 (자체 운영 및 공급망과 관련해) 기여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에 대한 기여를 중단한다. 섹션 3을 참고한다. • 피해를 구제한다. 섹션 6을 참고한다. • 향후 피해에 기여할 위험을 예방 또는 완화한다. 섹션 3을 참고한다. • 영향을 야기한 사업체가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섹션 3을 참고한다.
기업이 피해와 연관 있다 (즉, 기업 공급망에 피해가 있다)	<p>내부 조치 그리고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해 공급망에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한다. 섹션 3을 참고한다.</p>

기업이 영향과의 (야기, 기여, 직접 관련있는지)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기업은 실사 과정을 통해 파악한 영향과의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이 관계에 따라 기업의 대응이 결정될 것이다.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기업은 자체 운영에서 피해를 야기하고, 공급망 피해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급망에 있는 공급업체가 야기한 피해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야기: 기업의 운영, 상품 또는 서비스와 부정적 영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였다.

살펴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 기업이 행동한 것이 부정적 영향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가?

질문. 기업이 행동하지 않은 것이 부정적인 영향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가?

기여: 다른 사업장이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도록 기업이 야기, 촉진 또는 장려했다면 기업은 영향에 “기여”했다. 야기는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살펴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 기업이 행동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이 피해를 야기했을까?

질문. 기업이 행동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공급업체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도록 가능하게 또는 더 쉽게 만들었는가?

질문. 기업이 행동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도록 부추기거나 동기를 부여했는가?

질문. 위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기업의 행동과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공급업체 등의) 행동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는가?

직접 연관성: 직접 연관성은 피해와 다른 기업을 (사업 관계 등을) 통한 기업의 상품, 서비스, 또는 운영과의 관계에 의해 정해진다. 직접 연관성은 “직접 공급”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살펴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 기업이 자체적으로 야기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피해가 공급망에 있는가?

* 이에 따라 다른 사업장이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데 기업이 야기, 촉진 또는 장려한 정도 또는 범위에 대한 고려 역시 관련있다.

3.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피해를 중단, 예방 또는 완화

OECD 가이드라인의 기대사항

“기업이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은 해당 영향을 중단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OECD 가이드라인, 제4장, 해설 42)

“기업이 공급망에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리스크를 파악한 경우, 해당 기업은 그 영향을 중단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OECD 가이드라인, 제2장, 해설 18)

“기업이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사업 관계에 의해 부정적 영향이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사업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OECD 가이드라인, 제2장, A12)

3.1 기업 자체 운영에서 피해를 중단, 예방 또는 완화

기업은 자체 운영에서 피해를 야기 또는 기여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은 자체 운영에서 향후 피해를 방지 그리고/또는 완화하기 위해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흔히 불리는 시정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plan, CAP)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이 계획은 명확한 후속조치 일정과 함께 취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조치는 피해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주요 용어

예방 - 본 지침상 “예방”의 의미는 피해 발생을 멈추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포함해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즉, “예방”이 반드시 위험을 피하는 것과 반드시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기업이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또는 공급망과 연관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급업체 역량 강화 등) 행동 모두 예방을 의미할 수 있다.

완화 - “완화”는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피해를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피해 정도를 줄이기 위한 완화 조치는 사건 이전, 도중, 이후 취할 수 있다. 예컨대 섬유 공장은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용가능한 최고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이다.

시정조치계획(CAP)의 단기 목표

단기적으로는 존재하는 영향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기업은 위험을 즉시 제거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직업 건강 및 안전에 대해 모듈 5를 참고한다. 이와 유사하게 환경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이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피해를 야기하는 (또는 야기할 위험이 있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시정조치계획(CAP)의 장기 및 결과 지향적인 목표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결과 지향적인, 즉 피해를 예방하는 대응방안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결과 지향적인 대응은 다음 기준을 충족한다: 가장 효과적인 곳에

3.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피해를 중단, 예방 또는 완화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대응이 피해 위험에 비례하고, 지속가능하고, 기존 증거에 기반한다. 그림 1을 참고한다.

[그림 1] 목표 지향적인 해결책의 기준

권고사항	예시
가장 효과적인 곳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 개입하는 경우 가장 효과가 큰 곳에 우선 자원을 배분한다.	위험: 화재 예시: 기업은 우선 직장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며, 이후 근로자에게 화재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한다.
피해 위험에 비례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대부분의 위험은 복잡하며, 이는 피해를 적절히 예방 또는 완화하는데 여러 조치가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위험: 임금 관련법 위반 예시: 기업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자동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임금, 수당, 급여명세서를 보는 방법과 관련해 법적 권리에 대해 교육이 수반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장기적인 해결책은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많은 경우 이 과정이 관리 체제에 정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유해화학물질 처리 및 폐기 예시: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처리 및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입사 교육에서는 물론 지속적으로 반복해 교육해야 한다.
기존 증거에 기반 해결책이 있는 경우 기업은 그 해결책을 도입하거나 발전시켜야 한다.	위험: 물 사용 예시: 부문에서 규정한 이용가능한 최고의 기술을 도입한다.

기업 자체 운영 시정조치계획(CAP) 요소

시정조치계획에는 이행과 후속조치에 관한 명확한 일정이 있어야 한다. 계획은 일반적으로 정책, 교육, 시설 개선, 그리고 관리 구조 강화가 포함된다.

- **정책:** 정책에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기업 의지가 담겨있으며, 교육, 시설 개선 등 추가 조치의 기반이 된다.

- **교육:** 교육의 목표, 대상, 내용이 목적에 맞아야 하며 교육은 대부분의 시정조치계획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에는 위험, 근로자의 권리, 피해의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교육 대상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 **시설 개선:** 어떤 피해는 시설과 장비의 개선을 통해서만 방지할 수 있다. 조명, 통풍, 화재 비상구, 새 기계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관리 구조:** 관리 구조는 (i)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보를 추적하고 위험 주의를 알리거나 (ii) 애초에 피해 위험을 줄이는 조치 체계를 설립함으로써 강화할 수 있다. 예컨대 방적업체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인력 모집인에 대한 사전 자격 승인을 강화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불공평한 임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을 자동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근로자의 권리:** 노동 관련 영향과 관련해 기업은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 및 가입할 권리, 단체협상권에 대한 실사를 시정조치계획에 내포해야 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노조와 근로자 대표 조직은 단체협상협의, 지속적인 감시, 근로자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거나 고충처리 제도의 형식으로 기능함으로써 현장에서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로 간주된다.

이해관계자 참여와 전문가 협의

근로자와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노조와 대표단체를 시정행동계획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등 개발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근로자가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고,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업은 근로자의 의견을 촉구하기 위해 노조와 직접 협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개 부분을 참고한다. 기업은 또한 시정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위험이 복잡할수록 대응을 계획할 때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근거의 타당성이 높아진다.

실사 성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

모든 기업은 규모, 하위 부문, 공급망에서의 위치, 운영 상황을 불문하고 자사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중단, 예방, 또는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영향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업은 단계별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다.

3.2 기업 공급망에서의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는 노력

기업은 공급망에서의 향후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명확한 후속조치 일정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조치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기업의 계획에는 다음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 기업 공급망에 대한 피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한다. 섹션 3.2를 참고한다.
- 기업 공급망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내부 조치를 이행한다. 섹션 3.2를 참고한다.
-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섹션 3.2를 참고한다.
- 공급업체가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도록 지원한다.
- 공급업체와 단절한다. 섹션 3.2를 참고한다.
- 정부를 참여시킨다. 섹션 3.2를 참고한다.

3.2.1 기업 공급망에서의 피해에 기여하는 것을 예방

기업이 스스로 피해에 기여했다는 것을 파악한 경우 피해 구제를 제공하거나 이에 협력해야 한다. 섹션 6을 참고한다.

기업이 공급망에서 피해에 기여할 위험을 파악한 경우 기업은 기여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기업이 공급망에서의 영향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영향과 기업과의 관계 부분을 지침으로 참고한다. 조치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많은 경우 계획은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공급업체 참여:** 기업이 피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공급업체의 의견을 구한다.
- **통제 조치:** 피해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한다. 효과적인 정책, 근로자와 관리자에 대한 교육 등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통제 조치의 예시이다.
- **경보 제도:** 위험 경고 또는 신호를 확인하고 피해에 기여할 위험이 파악되는 경우 기업이 따를 조치를 포함시킨다.

상자 4. 책임있는 구매 관행을 통해 피해에 대한 기여 방지

유통업체, 브랜드와 그 구매 중간업체에 대한 권고사항

유통업체, 브랜드와 그 구매 중간업체는 - 과도하고 강제적인 초과근무와 저임금 등 - 해로운 영향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문이 변경, 취소, 뒤늦거나, (특히 수요가 몰린 기간 또는 휴일에) 급하거나, 또는 주문-납품 리드타임이 가능한 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가 현저했다. 또 공급업체에 상품 대금을 늦게 또는 연체해 지급하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또한 연체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의 가격 협상이 비용 절감, 나아가 노동, 인권 또는 환경에 대한 영향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은 구매 관행을 통해 피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구매 관행이 피해에 기여하는지, 통제 조치를 이행하는지, 피해 위험에 대한 경보를 추적하는지 평가할 것이 권장된다.

구매 관행이 피해에 기여하는지 평가

- 기업의 구매관행이 피해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참여시킬 것을 권유한다. 공급업체가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주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공급업체로부터 (연간 설문지 등) 익명으로 정보를 취합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해 결과를 보여줄 제3자와 협력할 수 있다.
- 기업은 피해로 이어질 관련 지표를 추적해야 한다. 예컨대 뒤늦은 주문 비율, 주문 후 변경 비율, 마지막 변경 후 납품까지 날짜 수 등의 지표가 있다. 이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추적을 통해 기업이 (주문 변경 등) 이런 관행 빈번하다는 것을 파악한 경우,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주문 부서 구성원이 이 분석에 포함돼야 한다.

피해에 대한 통제 조치

- 기업은 구매 관행을 통해 피해에 기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를 파악했는지를 불문하고, 통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임금, 수당, 투자 비용을 포함한 가격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 내용을 구매 수량, 재료 비용, 기술 요건 등 기존의 가격 요소와 함께 고려해 본선인도가격(FOB)에 반영해야 한다.
- 추가 통제 조치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공급업체와 최종 주문일을 설정
 - 구매 부서 구성원과 마감일에 대해 의견교환
 - 공급업체와 구매 계획을 공유하고 시의적절하게 최근 정보에 대해 의견교환

-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정보를 받아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역, 분류, 상품 디자인에 걸친 조율을 포함해 예산을 일치시키도록 개선
- 수용 능력의 변동을 처리하기 위해 공급 기반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형식과 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고 이행한다.*

경보 제도

기업은 관행으로 인해 피해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매 부서가 추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주문한 후 주문이 변경되거나 뒤늦은 주문을 하는 경우, 기업은 a) 급한 주문 배송에 대해 비용을 주거나, b) 배송 날짜를 변경하거나, c) 일부 주문을 채우기 위해 하도급업체 사전 자격 승인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 권고사항의 인용 출처는 다음과 같다. "Suppliers Speak Up, How Responsible Purchasing Practices Can Improve Working Conditions in Global Supply Chains" (2014), IEH - Ethical Trading Initiative Norway and Sustainable Trade, Oslo.

3.2.2 기업 공급망에서의 위험 완화를 위한 내부 조치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예.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갖춘 공급업체와 참여) 실제적 및 잠재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예. 공급업체의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지원) 내부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중간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기업 경우 추가 지침에 대해 상자 5를 참고한다.

공급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 평가

기업은 주문 전에 공급업체를 평가한다. 평가의 목적은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을지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기업은 피해 위험이 낮거나 (예.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공급업체 자체 조치가 존재) 그리고/또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공급업체와 적절히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예. 역량 강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에만 주문을 해야 한다. 평가 수준은 위험에 기반해, 즉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

공급업체를 통한

공급업체가 매우 많은 기업 경우 범위가 넓어 영향을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총 공급업체 수를 통합하면 공급망에 대한 기업 영향력을 높여 제한된 수의 공급업체의 영향을 방지하는데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다. 이 방안은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과 특히 연관있다.

공급업체에 대한 이해

공급업체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현지 운영 상황을 이해하는 기업은 공급망에서의 위험을 잘 알고 공급업체가 결과 지향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 지원을 줄 수 있다. 현지 공급 사무소가 있거나 직접 공급업체를 방문하면 공급업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업 유인책 마련

기업이 통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기업책임경영(RBC) 정책을 준수하도록 유인할 것을 권장한다. 예컨대 기업은 다음 내용을 할 수 있다.

- 기업의 기업책임경영(RBC) 정책과 일치할 것을 공급업체에게 기대한다는 내용을 공급업체 계약서에 포함시킨다.
- 생산 수준과 기업책임경영과 관련해 모범적으로 활동한 공급업체에게 현재 또는 향후 주문을 늘림으로써 직접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은 강화한다.

상자 5. 간접 공급받는 경우 통제 조치 이행

기업이 구매 중간업체를 통해 공급업체와 연관된 영향을 파악 및 방지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내용을 권장한다. 예컨대 한 브랜드가 구매 중간업체를 통해 브랜드를 대신해 공급받는 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본 지침에 따른 실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중간업체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구매 대행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 평가

기업이 구매 대행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 평가 절차를 수립하거나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이 절차를 통해 중간업체가 공급업체를 실사하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은 사전 자격 평가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중간업체가 적절한 허가권을 가진 합법적인 기업인가
- 중간업체가 계약을 실행하는가 또는 다른 기업에 위탁하는가
- 중간업체가 공급받는 총 공급업체 수와 공급업체의 지리적 위치
- 중간업체가 공급업체를 방문하는 빈도와 공급업체를 방문하는 구성원의 역할
- 중간업체가 공급업체와 관계를 유지하는 평균 기간
- 공급받는 공급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 평가를 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
- 위기 관리와 관련한 중간업체의 실적 기록
- 공급업체와 가족 관계 여부 공개

추가 통제 조치. 사전 자격 승인받은 중간업체에 대해 다음 통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기업의 기업책임경영(RBC) 정책과 일치할 것을 공급업체에게 기대한다는 내용을 공급업체 계약서에 포함시킨다. 중간업체는 직접 공급업체와 중간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 평가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 기업은 현재 주문 위치를 언제든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중간업체는 다음 내용을 공개하도록 준비한다.
 - 사전 승인받은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에 대한 최신 정보
 - 공급업체에 대한 가장 최근 평가 결과와 이에 상응하는 예방 조치
-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파악된 경우 중간업체는 기업에게 즉시 알린다.
- 가능한 경우 중간업체는 직접 공급업체와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해 피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예방 또는 완화한다.
- 기업이 사전 승인 받은 공급업체에 대해 임의적으로 표본을 추출해 평가를 실시한다.

* 기업은 직접 공급업체에 사용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공급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 평가를 하거나 중간업체가 공급업체를 사전 자격 평가할 수 있다. 중간업체가 공급업체를 사전 자격 평가하는 경우, 중간업체는 본 지침은 물론 기업의 기대사항과 일치하는 평가일 것을 보장해야 한다.

3.2.3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공급업체에게 영향력 행사

기업은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공급업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이 피해를 야기한 사업장의 잘못된 관행을 변경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기업은 영향력을 행사해 공급업체가 시정조치계획을 이행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기업은 직접 공급업체에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브랜드는 의류 제조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있고, 이어 의류 제조업체는 방직업체와 제직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영향력의 정도는 예컨대 기업이 공급업체에게 차지하는 사업 비중, 기업이 공급업체에게 직접 또는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공급받는지 여부, 그리고 공급 계약이 단기 또는 장기인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다.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기업의 평판, 공급업체의 평판에 대한 피해 역시 영향력의 요소일 수 있다. 기업이 기업책임경영을 보여주고 그 의지를 실행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향력이 강화된다.

기업이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경우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기업이 공급업체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작아 공급업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만큼 주문을 증가시킬 수 없다.
- 기업이 공급망에서 상당히 하류 단계에 있어 상류에 있는 공급업체와의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다. 예컨대 개별 의류 제조업체는 목화 재배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드물다.

위 경우 기업은 영향력을 집합할 것을 권장한다. 예컨대 같은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여러 기업이 영향력을 모아 공급업체가 영향을 방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기업은 동일한 공급업체에 대해 시정조치계획 일정을 함께 설정함으로써 영향력을 합칠 수 있다. 또한 공급업체 평가, 시정조치계획, 계획 진행 정도를 공동으로 공개하는 것도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부문 전체에 대해 개별 기업보다 큰 공급업체에 대해 그리고/또는 부문 공급망 조임목/초크포인트에서 운영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압박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부문에서 영향력을 모아 상류 원료 생산과 연관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상품 거래업체에 압박을 줄 수 있다.

3.2.4 피해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공급업체 지원

기업은 가능한 경우 피해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지원 형태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결과 지향적인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한다.
- 교육, 관리 제도 개선 등 기술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인 전 부문 구상 또는 지역적 구상에 참여할 것을 촉진한다
- 현지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연계를 촉진한다.
- 직접 금융, 저금리 대출, 지속적인 공급에 대한 보장, 그리고 재원 확보를 지원하는 등 재원 마련에 도움을 준다.

3.2.5 공급업체와 단절

책임있는 단절을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다음 경우 단절할 수 있다.

- 공급업체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 조치를 통해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는데 실패한 경우
-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
-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파악한 경우. 예컨대 직업 안전 및 건강 위험인 경우 기업이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파악하면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적절히 해결될 때까지 영향받은 생산 사업장에서 생산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직업 안전 및 건강에 대해 모듈 5를 참고한다.

기업이 단절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책임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을 해야 한다.

- 국내법, 국제 노동 기준, 단체협상 합의서 조건을 준수한다.
- 기업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상세한 정보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노조에게 제공한다.
- 사업 관계 종료에 대해 공급업체에게 충분히 공지한다

3.2.6 정부의 참여

정부는 규제, 정책 마련, 조사, 이행을 통해 기업을 포함해 제3자의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 정부가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급업체의 참여만을 통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또는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지방 또는 중앙)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정부가 변화를 일으키도록 촉구할 수 있다. 부문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참여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적절한 임금,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물 부족, 수질오염 등이 있다. 기업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지 결정할 때 다음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 국가 또는 지역에 부정적 영향이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 정부의 규제 또는 통제가 개선되면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는가?
- 위험과 관련된 (기본 또는 기타 ILO 협약 등) 국제 기준을 비준했는가?
- 정부가 부정적 영향에 대해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보이는가?
- 기업이 단독 또는 다른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부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가?
- 문제가 제기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정부 간 또는 다자 이해관계자 등) 구상 또는 포럼에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가?

정부를 참여시키는 방법에는 정부에 대한 공개 서한, 정보 공유,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을 통한 참여, 회의 참가 등이 있다. 정부가 참여함으로써 규제를 바꾸거나 규제를 이행하는 등 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정부와 참여할 것이 권장되지만 기업이 여전히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 기대된다. 즉 정부가 책임을 질 때까지 기업이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중기적인 조치, 예컨대 공급업체와 함께 협력하도록 한다. 그러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피해가 방지될 수 있을 때까지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표 7> 기업 공급망 피해 예방 및 완화와 관련해 실사 성격 및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상황	권고사항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실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규모가 더 큰 기업과 달리 공급업체의 시정조치계획 이행을 지원하는데 자원이 제한적이고 공급업체에 대해 영향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은 공급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 평가 과정을 강화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공급업체가 참여한 이후에는 영향을 예방하는데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중소기업은 협의하는 공급업체 수를 통합하기로 할 수 있다.
간접 공급	중간업체의 참여에 대한 정보는 상자 5.를 참고한다.
영향력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은 기업의 접근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상자 6.을 참고한다.
영향이 심각한 경우	부정적 영향이 심각할수록 기업이 관계를 종료할지 결정하기 전에 더 빨리 변화를 봐야 한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원칙 19, 해설)
공급업체가 시정조치 계획을 이행할 역량	기업과 공급업체는 향후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또는 완화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자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피해를 적절히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자원이 없는 경우, 기업은 재원 마련에 기여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경우, 기업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그리고 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이 계속되고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한, 기업은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야 하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 평판, 재정, 또는 법적 - 결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상자 6. 영향력을 고려한 실사의 성격

모든 기업은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 수준을 불문하고 실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사 조치는 영향력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급업체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 정도

	높다	중간	낮거나 없다
예시	<p>기업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계에 직접 통제력을 보유한다(예, 일부 소유권 보유). • 공급업체와 장기적인 사업 관계를 유지한다. • 공급업체의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p>기업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 • 공급업체와 사업 관계가 단기간이다. • 공급업체의 사업 비중이 상당하지 않다. 	<p>기업 자체 활동 및 운영과 공급업체가 (공급망 2단계 이상에 있는 등) 멀리 떨어져 있다.</p>
실사	<p>예방 & 완화</p> <p>기업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에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기대를 포함할 수 있다. •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사업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교육, 역량 강화, 시설 개선, 관리 구조 강화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다. • 구조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가능하고 효과적인 경우 부문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협력을 구축할 수 있다. • 위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p>예방 & 완화</p> <p>기업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 다른 사업 관계에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 간접 공급 경우 (중간업체 등을 통해) 직접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실사에 대한 기대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업체가 실사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 교육, 역량 강화, 시설 개선, 관리 구조 강화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다. •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협력을 구축할 수 있다. • 구조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위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관계 단절을 고려할 수 있다. 	<p>예방 & 완화</p> <p>기업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류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임목 / 초크포인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추적할 수 있다. •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관계 단절을 고려할 수 있다.

4. 추적

OECD 가이드라인의 기대사항

OECD 가이드라인은 영향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파악할 것을 기업에게 요구한다 (OECD 가이드라인, 제2장, A10). 영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기업이 취한 조치가 효과적이고, 어떤 조치를 왜 취했는지 의사소통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4.1 기업 자체 운영에서 실사와 효과성에 대한 확인, 감시, 검증

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까지 기업은 자체 운영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취했거나 취하는 행동을 보장해야 한다.²²⁾

기업은 다음 내용을 해야 한다:

- 합의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계획 등에서) 약속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증한다.
- 목표 진행 상황에 대한 정량적 그리고/또는 정성적 지표를 감시한다.
 - 지표는 (여권을 압수당한 이주노동자 비율, 소비한 물의 양, 노동 시간 등) 직접적이거나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는 근로자 비율 등) 간접적일 수 있다.

주요 개념

확인 - 요구사항이 충족됐다고 확인하는 것이다. “요구사항”은 시정조치계획 그리고/또는 법적 규제에 따라 합의할 수 있다.

예컨대 화재 비상구가 화재 안전 규칙을 준수한다고 건물 조사가관이 확인할 수 있다.

감시 - 지속적으로 특정 위험과 정도와 관련해 현지 상황을 추적하고, 성공 지표를 추적한다. 지표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시는 일회적인 평가보다 상황을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공장이 수요가 많은 기간 동안 바느질 및 봉제 부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추적할 수 있다.

검증 - 취한 조치가 영향을 예방하는데 실제로 효과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확인과 감시에 대한 정보가 검증에 영향을 준다. 예컨대 현재 직원 교육이 장기적으로 성취를 예방하는지 기업이 검증할 수 있다.

- 교육받은 직원 수와 같은 결과는 가장 단순한 감시 지표일 수 있으나 기업이 근로자의 이해 수준(예. 인사 관리자가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인지), 태도(예. 고충처리 제도가 정당하고 사용가능하다고 근로자가 체감), 근무 환경 여건(예. 이용가능한 식수가 존재), 제도 이행(예. 정책, 공급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 평가)에 대해 감시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지 더 전체적으로 파악할 것을 권장한다.

22) 위험이 심각할수록 영향이 예방됐거나 예방되고 있다는 것을 기업이 더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 기업은 또한 영향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예. 수요가 높은 시기에 주문의 변경)를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
- 근로자는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시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는 인권과 노동 관련 영향에 필수적일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영향과 기업 청렴성 위험 과도 관련된 경우가 많다.
- 지속적인 감시를 통한 정보, 정기적인 내부 평가, 고충처리 제도에서 제기된 문제 등 알려진 모든 정보를 이용해 기업이 취한 조치가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했는지 검증한다.²³⁾

기업은 위 내용을 모두 내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영향이 예방되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장한다.

- 영향을 적절히 예방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예. 유해화학물질 처리 및 폐기, 화재 안전, 전기 안전, 건물 안전 등)
-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예방 조치인 경우

기업은 시정조치계획 진행상황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더해 기업은 (운영 차원에서의 고충처리 제도 등) 구제 과정의 효과성을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 구제 과정에 대한 정보는 섹션 6을 참고한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응

해로운 영향이 효과적으로 예방 또는 완화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피해가 효과적으로 예방 또는 완화되지 않은 이유로 효과가 없는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거나, 진전을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었거나, 시정조치계획을 이행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자원이 배분되는 등 여러가지가 있다. 기업은 시정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최선으로 유지해야 한다. 영향이 예방되거나 완화되지 않은 이유를 기업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외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2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20 참조.

4.2 기업 공급망에서의 실사와 효과성에 대한 확인, 감시, 검증

기업은 자체는 물론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업은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효과적인지 평가해야 한다.

감사에 대한 피로는 의류 및 신발 부문의 도전과제다. 동시에 기업이 공급망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신뢰를 주는 어떤 형태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감시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기업은 영향이 더 심각할수록 영향이 예방되었거나 예방되고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확인, 감시 또는 검증과 관련한 보장 수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침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확인, 감시, 검증 시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성격에 상응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시정조치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 위와 같이(5.1),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제 또는 국내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피해가 예방되었다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²⁴⁾
- 가능한 경우 기업은 시간에 따라 - 직접 또는 간접적인 - 지표를 감시해 영향이 예방되었거나 예방되고 있는지 검증한다. 피해 위험이 특정 지역의 한 부문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업은 추적한 지표를 일치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걸쳐 조율하고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데이터가 공유되면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더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기업이 예방 조치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자나 그 대표 조직은 지속적인 감시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인권과 노동 관련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영향과 기업 청렴성 위험과도 관련되어 있다.
- 감시를 통해 영향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은 처음부터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위와 같이(5.1), 시정조치가 취해졌다고 확인하거나 피해가 예방되었다고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권장한다.
 - 영향을 적절히 예방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예. 유해화학물질 처리 및 폐기, 화재 안전, 전기 안전, 건물 안전 등)
 -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예방 조치인 경우
- 공급망 조임목/초크포인트에서 운영하는 중류 공급업체에게 심각한 위험과 관련해 상류 공급업체를 실사하도록 한 경우, 기업은 중류 공급업체에 대해 본 지침에 따른 실사

24) 국제 기준 선정에 대한 부문 위험은 섹션 II 모듈 참조.

관행을 감사할 것을 권장한다. 기업은 감사 통제 지점에 대해 부문 차원에서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협력

평가가 높은 수준을 준수하는 경우 여러 기업이 확인, 감시, 검증을 인정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동일한 지역과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기업이 가능한 한 공급업체에 대한 확인, 감시, 검증에 대해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실사를 위해 (산업 협회나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경우, 협력 구상은 실사 과정과 결과가 본 지침을 준수해 검토됐는지 보장해야 한다.

실사 성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상황 - 위험이 높은 여러 공급업체

권고사항 - 기업이 여러 공급업체에서 위험을 (공급업체 평가 과정 등에서) 파악한 경우, 피해 위험이 가장 심각한 지점에 대해 공급업체와 - 확인, 감시, 또는 검증에 상관없이 - 공급업체와 후속적으로 참여하는데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5. 의사소통

OECD 가이드라인의 기대사항

기업은 본 섹션에 포함된 권고사항과 함께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보공개와 의사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기업은 다음을 포함하여, 부가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 a) 기업활동 관련성 정도에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진 사안에 관련된 기업 정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일반에게 공개하기 위해 수립된 가치선언서 또는 기업 행동강령 선언서
- b) 기업의 정책 및 기타 행동강령, 채택일, 해당 선언서가 적용되는 국가 및 사업장
- c) 해당 선언서 및 강령과 관련한 기업의 성과
- d) 내부 감사, 리스크 관리 및 준법 체계에 대한 정보
- e)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

기업이 “인권 실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실사과정에는 인권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측정 결과의 반영과 해당 결과에 따른 조치, 조치에 대한 반응 파악, 해당 영향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의사소통 등이 포함된다.”(OECD 가이드라인, 제3장 3 그리고 제4장 45)

5.1 기업이 실제적 및 잠재적 피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포함해 기업의 실사 절차를 일반에게 공개

내용

기업은 다음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²⁵⁾

- 기업의 단일 또는 복수의 기업책임경영(RBC) 정책. 또한 (예. 부문 구상, 노조 또는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 합의를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기타 가치성명서에 대해 의사소통해야 한다.
- 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실사가 의사결정과정과 정보관리제도에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등 기업의 실사관리제도
- 기업 자체 운영과 공급망에서 가장 중대한 피해 위험. 기업은 또한 이 위험을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즉각적인 주의를 요하는 우선적인 피해 위험에 대해 우선순위 선정과정에 대해서 정당화해야 한다.
- 기업 자체 운영과 공급망에서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계획 사항과 그 조치의 효과성²⁶⁾
- 관련있는 경우 정책 참여에 대한 기업의 의도와 참여 결과
- 기업 자체 운영과 공급망에서 구제를 제공하는 기업 구조. 기업은 자사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공개할 수 있다.
-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의미있는 참여를 하고 있는지
- 실사에 대한 협력을 위해 기업이 부문 또는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위험 파악, 공급업체 평가를 위한 협력 등) 기업이 협력하고있는 구체적인 사항

기업은 최소한 매년 정보에 대해 의사소통해야 한다. 의사소통은 여러 형태를 띌 수 있다. 그러나 정보는 항상 관련있고, 정확하고, 최신이고, 명확하고, 정보에 접근하려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유지하고 의사소통해야 한다. 또한 정보를 쉬운 표현으로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더 많은 기업이, 특히 협력 구상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음 내용을 공개하는 추세이다.

- 25) 기업은 영업비밀과 기타 경쟁 측면을 적절히 고려해 공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상자 1. 참조.
- 26) 실사의 효과성은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의 실제적 및 잠재적 위험이 예방되고 완화된 정도로 측정된다.

- 직접 공급업체 목록
- 공급업체 평가 결과
- 공급업체의 시정조치계획
- 기업에 제기된 고충과 해결방식

법률을 통한 비재무적 정보 공개에 대한 기대

기업은 비재무적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할 수 있다. 예컨대 규제요건에 따라 기업책임경영(RBC)을 보고하는 경우가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이다(예, EU Directive 2014/95/EU on Non-financial Reporting; UK Modern Slavery Act 2016; Article 173 of the French Law for the Energy Transition and Green Growth).

비공개하는 경우

특히 영향받은 이해관계자나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등) 잠재적 위험을 포함해 정당한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즉시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고충이나 위험이 해결된 이후 등 시간이 지난 후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

영업비밀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상자 1을 참고한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자에게 실사 과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일반 또는 관련된 협력 구상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다.

5.2 영향받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인권과 관련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인권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기업은, 특히 영향받은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 외부와 의사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는 상황에 있는 기업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든 경우 의사소통은 다음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기업이 끼친 인권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는 형식과 빈도로 의도한 대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특정한 인권 영향과 관련해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평가하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영향받은 이해관계자, 구성원, 또는 정당한 영업비밀 요건에 위협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²⁷⁾

노동권과 관련해 기업은 근로자,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노조와 대표 단체와 의사소통해야 한다. 기업은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

실사의 성격과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모든 기업은 규모, 공급 상황,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불문하고 실사 관행에 대해 의사소통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소통 정도와 성격은 자체 기업과 공급망에서의 피해 위험에 비례할 것이다. 예컨대 심각한 인권 피해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공급받는 기업의 의사소통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광범위할 것이다.

27)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21 참조.

6. 적절한 경우 구제를 제공하거나 협력

OECD 가이드라인의 기대사항

본 지침 전반에 걸쳐 강조했듯이 실사를 실행하는 핵심 목적은 피해를 피하는 것이다. 기업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구제를 위해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OECD 가이드라인, 제4장 A6)

사법 또는 국가가 주관하는 비사법적 방식과 협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섹션의 개념은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책임경영(RBC)을 증진한다는 정신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²⁸⁾

6.1 기업 자체 운영에서 구제 절차 수립

가이드라인은 인권에 대한 영향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기업이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노동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운영 차원에서의 고충처리 절차는 합법성, 접근가능성, 예측가능성, 형평성, 본 가이드라인과의 양립가능성을 충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투명성은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²⁹⁾

상자 7. 효과적인 구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기업의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국가는 사법, 행정, 입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인권 침해가 영토와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경우 침해받은 당사자가 효과적인 구제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서 운영하기로 하더라도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 OECD 가이드라인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모두 기업을 포함해 책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수립하고자 하지 않는다. 국내 법령은 피해에 대한 책임과 적절한 구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념을 활용해 평가할 것이다.

운영 차원에서의 고충처리 제도

운영 차원에서의 고충처리 제도는 기업이 -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 영향을 끼친 경우 개인 또는 집단이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를 찾을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이

28) OECD 가이드라인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모두 기업을 포함해 책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수립하고자 하지 않는다. 국내 법령은 피해에 대한 책임과 적절한 구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념을 활용해 평가할 것이다.

29) OECD 가이드라인 제4장 46

다. 운영 차원에서의 고충처리 제도는 기업 또는 현장에서 운영되므로 근로자나 공동체 구성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진입로인 경우가 많다. 운영 차원에서의 고충처리 제도는 근로자와 공동체 구성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절차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조기 경보 제도로 활용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운영 차원에서의 고충처리 제도는 내부 근로자 고충처리 제도, 노사관계, 제3자 고충처리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모든 경우 고충처리 절차는 합법성, 접근가능성, 예측가능성, 형평성, 가이드라인과의 양립가능성, 투명성 등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화와 참여에 기반하여 합의에 의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³⁰⁾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이 요건이 충족되는 방법의 예시는 <표 8>에 있다. 그러나 제도의 대상과 상황 등과 같은 요인이 구체적인 이행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예시는 규범적이거나 완전하지 않다.

기업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조사나 인권에 관한 조사를 방해하지 않고 촉진해야 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법적 수단을 배제하는 법적 면제를 기업의 고충처리 제도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기업이 제기된 고충을 공개하고, 배운점을 정책 및 감시 제도에 포함할 것을 장려한다.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라 운영 차원에서의 고충처리 제도에 대한 기존의 방대한 지침을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표 8> 운영 수준에서의 고충처리 제도의 핵심 기준 및 구성요소 예시

기준	요소의 예시
<p>합법성</p> <p>제도의 대상인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정당한 고충처리 절차라고 신뢰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이 없을 것을 보장함으로써 이의에 대한 보복을 예방한다. • 영향받는 이해관계자가 제도를 수립할 때 참여한다. 의류 및 신발 부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노조와 대표 조직이 이 제도를 수립할 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고충처리 제도를 사용 할 때 접하는 개인이 신뢰, 교육, 지식을 갖추고 이의제기자의 성별, 종교 등을 불문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노동자의 85%가 여성이고 국내이주노동자가 많은 경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특히 중요하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위협과 보복에 취약하다.

30) OECD 가이드라인 제4장 해설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인 대표자를 참여시키는 등 이의제기자를 익명으로 유지할 수 있다.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 등)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의복 및 신발 부문에서 특히 관련있다. • (의의가 해결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 상부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존재하고 신뢰있는 현지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거나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이나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가 상부기관 보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NCP에 대한 정보는 섹션 6.2를 참고한다.
<p>접근가능성</p> <p>제도의 대상인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알려져 있고 이용하는 데 특히 어려움이 있는 대상을 적절히 지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있다. • 이의를 접수하는 형식이 명확하고 간단하다. • 현지에서 이의를 보고하도록 지원한다. • 교육 수준, 특히 문해력을 적절히 고려한다. 문해율이 낮은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특히 더 고려한다. • 언어 장벽을 고려한다. 고용된 노동자가 이주민이거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이 있는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특히 관련있다. •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지점이 있어야 한다. 기업 대표가 유일한 연락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의제기자를 위해 독립적인 이용 지점이 최소한 한 곳은 있어야한다. 노조가 이용 지점인 경우 비노조원도 사용할 수 있거나 추가적인 이용 지점이 제공돼야 한다. 근로자와 관리자의 권력관계가 크게 불균형적인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특히 관련있다.
<p>예측가능성</p> <p>각 절차단계에 명확히 알려진 일정이 표시되어 있고 각 절차의 특징, 결과 가능성, 그리고 감시 이행 수단이 분명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일정이 표시되어 있다. • 각 절차 단계마다 이의제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모든 이의를 진지하게 처리한다. • 합의 결과를 이행해 제공한다는 데 동의한다.

<p>형평성</p> <p>고충이 있는 당사자가 공정하고, 정보에 기반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고충 처리 절차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출처, 조언, 전문성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p>	<p>연관된 당사자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당사자들이 정보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염두한다. 근로자와 관리자의 권력관계가 크게 불균형적인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특히 관련있다.</p>
<p>투명성</p> <p>고충 관련 당사자에게 진행상황에 대해 알리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절차 단계마다 이의제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모든 이의를 진지하게 처리한다. • 합의 결과를 이행해 제공한다는데 동의한다.
<p>대화에 기반</p>	<p>기업과 영향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표자 간 대화를 통해 고충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p>

6.2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듣고 처리하도록 노력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야기 또는 기여한 경우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구제를 제공하거나 협력할 것이 기대된다.³¹⁾

공급망에 대해 이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은 -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된 이의를 듣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한다. 고충은 상당하고 입증돼야 하며 기업이 (공급망에서의 피해와 연관되어있다는 고충과 다르게) 공급망에서의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했다는 주장이어야 한다.

합법적인 절차란 다음 절차를 포함한다.

- 영향받은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대표가 기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31) OECD 가이드라인, 제4장 6.

- 사법적 그리고 비사법적 현지 고충처리 제도와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데 노조의 역할을 약화하지 않고
- 신뢰받는 당사자가 관리한다.

실제 기업이 고충처리하는 방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공급망에서 기업 행동으로 인해 노조, 시민사회, 그리고 영향받은 당사자가 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업 고충처리 제도를 설치한다.
- 공급망 고충처리 제도를 제공하는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에 (회원 등으로써) 참여하거나 기업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의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데 동의한다(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한다).
-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망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기여한 기업 관행에 대해 노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의 수립에 대해 국제 기본 합의서 등을 통해 노조와 합의문을 체결한다.
-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사안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NCP 조정절차에 참여하는데 동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한다.

상자 8. 조기 경보 체제와 구제 절차의 차이

조기 경보 체제와 구제 절차 제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 조기 경보 체제의 목적은 기업 자체 운영 또는 공급망에서의 위험(또는 실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컨대 건물 안전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기업은 직통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 구제 절차의 목적은 피해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 관리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복직, 보상 등) 적절한 구제책을 결정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동원된다.

고충처리 제도와 같은 단일 제도가 조기 경보 체제와 구제 절차 제도로써 운영될 수 있다. 조기 경보 체제와 구제 절차 제도를 구분하려면 피해받은 당사자에 대해 피해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를 야기 또는 기여한 당사자와 함께 동원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조정

조정의 역할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데 있다. 조정인은 문제의 해결과 합의 가능성에 대해 당사자들이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을 적극적이면서 중립적으로 지원한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할 때와 같이 임의적으로 열리거나,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이의제기자가 고충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화된 형태로 열릴 수 있다. 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상호 수락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독립적이고,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역할을 부여한 기관 구성원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

다자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제도

기업은 공급망에서의 영향을 야기했거나 기여한 이익에 대해 듣고, 처리하고, 구제를 제공하는데 책임지는 방법으로써 다자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충처리 제도를 설치한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은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다. 이 구상은 기업, 노조, 그리고/또는 시민 사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회원제 방식인 경우가 많다. 다자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제도는 이익을 제기한 이해관계자와 기업 간 조정을 제공할 수 있다. 다자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제도 역시 합법성, 접근가능성, 형평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대화 기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다자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제도는 조기 경보 제도이기도 하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 경보 제도가 기업 공급망에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감시 제도로써 도움이 되지만 고충처리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상자 8을 참고한다.

상자 9. 다자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제도의 구성

다자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제도는 합법성, 접근가능성, 예측가능성, 형평성, 투명성, 대화 기반 기준이라는 핵심 기준에 제한을 둘 수 있다. 기업과 다자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제도는 이 제한 가능성에 대해 인지해야 하며, 가능한 수준까지 파악해야 한다.

-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에 가입한 이해관계자만 가입한 기업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있어 이 고충처리 제도의 접근가능성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이 이익을 듣고 처리하는데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제한에 대해 다양한 이익처리 제기에 참여할(또는 이를 통해 이익을 들을) 수 있다.

- 대표자가 아니라 오직 직접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예컨대 근로자, 공동체 구성원 등)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접근가능성에 제한이 있다. 영향받은 이해관계자는 이 구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 제도에 대한 존재나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할 수 있다. 현지 연락 지점에서 접근가능성을 높이도록 도울 수 있다.
- 고충처리 제도가 어떠한 위험에 대해 어떠한 기업을 대상으로 모든 이의제기자에게 열려있는 경우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제도의 범위가 넓어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 고충처리 제도에 대한 홍보, 이의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자원이 제한될 수 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NCP)

OECD 가이드라인은 국내연락사무소(NCP)를 통한 비사법 고충처리 제도를 설립하였다. NCP는 OECD 투자 선언(Investment Declaration) 가입국들이 설치하였다. NCP는 다음 활동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

-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문의사항을 처리한다.
-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³²⁾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가입국들은 NCP를 설치해야 한다.³³⁾ 가이드라인 절차지침(Procedural Guidance)에 따르면 NCP는 핵심기준인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 사안”(사건)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고, 공평하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NCP에게 기업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NCP는 구체적 사안 절차를 종료하면 최종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NCP는 사건의 상황에 기반해 권고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고 관행을 통해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이 절차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³⁴⁾

32) 구체적 사안이란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문제를 의미한다.

33) 2011년에 개정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 결정(Decision of the Council on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6.3 적절한 형태의 구제를 결정

구제는 다양한 형태일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영향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도 효과적인 구제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구제 형식은 사과, 제건, 원상회복, 재발 방지 조건, 피해에 대한 (재정적 등) 보상, 징벌적 제재, 특정 활동이나 관계의 단절,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른 구제 방식일 수 있다.³⁵⁾ 적절한 구제를 결정하는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구제책은 영향받은 당사자가 피해가 아니었으면 있었을 상황을 (가능한 경우) 복구하도록 해야 하며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과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 구제책은 가능한 경우 구제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 지침을 따라야 하며, 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한 사례에서 제공된 구제책과 일관되게 제공되어야 한다.
- 기업은 구제책을 결정할 때 영향받은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 기업은 제공된 절차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자의 만족도를 평가해야 한다.

협력

부정적 영향을 야기 또는 기여한 당사자가 많은 경우 기업은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영향에 기여한 정도만큼 자체적으로 구제를 제공, 촉진, 또는 지원해야하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34)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OECD (2016), *Implementing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National Contact Points from 2000 to 2015*, OECD, Paris.

35)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12),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n Interpretive Guide*,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섹션 II

부문 위험에 대한 모듈

- 모듈 1. 아동노동
- 모듈 2. 직장에서의 성희롱,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 모듈 3. 강제노동
- 모듈 4. 근무시간
- 모듈 5. 직업 안전 및 건강
- 모듈 6. 노조 및 단체교섭
- 모듈 7. 임금

환경 모듈에 관한 소개

- 모듈 8. 유해화학물질
- 모듈 9. 물
- 모듈 10. 온실가스배출
- 모듈 11. 뇌물 및 부패
- 모듈 12. 가사노동자로부터의 책임있는 공급

본 모듈 권고사항은 별도의 지침이 아니라 핵심지침(Core Guidance)을 보충하고, 기업이 구체적인 부문의 위험에 맞춰 실사를 적용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모듈은 기술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 지침의 권고사항과 일치되는 신뢰할만한 기관의 기존 지침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모듈 1. 아동노동

기업 정책과 관리구조에 기업책임경영(RBC)을 정착시킨다.

정책

아동노동에 관한 정책 의지를 도입할 때 기업은 자체 운영과 공급망에 ILO 협약 제138호와 182호에 근거해 아동노동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은 원료 단계를 포함해 모든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정책이 유효하다고 밝혀야 한다.

- 아동노동에 대한 정책은 국내 및 국제법에 일치하고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업무 종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³⁶⁾
- 국내법이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위험한 아동노동,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최저임금 등에 대해)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³⁷⁾
- 국내법이 국제 협약보다 높은 기준을 세운 경우 기업은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 모든 기준은 소년과 소녀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³⁸⁾

36) 위험한 아동노동에 대해 여러 국가는 국내법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단체, 정부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위험한 업무 목록이 없는 경우 기업이 ILO, 의료 관계자 또는 건강 및 안전 전문가와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37) 국내법과 규제와 가이드라인 원칙과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기업은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법 규정 이상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서 상충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38) 예컨대 국내법상 최소 연령 기준이 국제법보다 낮은 경우, 기업은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높은 최소 연령 기준을 세운 경우 기업은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기업의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의 잠재적 및 실제적 위험을 파악

분석 활동

아동노동에 대한 위험요소와 부문과의 관련성 예시에 대해 표 9를 참고한다.

<표 9>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의 아동노동 위험 요인*

위험 요인	설명	부문 고려사항
지배구조 최저임금과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대해 국내법이 ILO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내법을 ILO 협약과 일치시킴으로써 아동노동에 대한 ILO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다. 이는 정부가 아동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최소한의 보장이다.	여러 의류 및 신발 생산 및 수출 국가에서 아동노동을 해결하는데 법적 틀과 집행 능력의 상당한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
지배구조 정부가 아동노동법을 시행하지 않는다.	아동노동법은 시행한만큼만 효과적인 것이다. 아동노동법의 실행 여부가 아동노동 위험이 관찰권에서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아동노동법 시행에 투입된 자원, 위반에 대한 조사, 위반에 대한 법적 사례 그리고 법적 결정에 대한 시행에 대한 지표 역시 이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시민사회, 노조, 국제기구 보고서 역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지배구조 교육의 수준 그리고/또는 접근성이 낮다.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때 아동노동의 위험이 증가한다. 원인은 근처에 학교가 없거나, 교육비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있거나, 출생 확인증을 요구하는 등 행정상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구조상 노동을 했던 아동을 다시 학교에 수용하는 정책이 없을 수도 있다. 이주노동	의류 및 신발을 제작, 봉제하고, 원료 생산지가 있는 국가는 보편 교육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p>자의 아동은 교육을 받는데 특유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컨대 현지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경우이다.</p> <p>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노동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2]</p>	<p>의류 공급망이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 교육 연령이 노동 최소 연령보다 낮다.</p>
<p>지배구조</p> <p>정부가 교육법에서 적절한 차별금지 내용을 마련하지 않고 그리고/또는 적절하게 법을 시행하지 않는다</p>	<p>특정 (소수) 집단은 교육 접근 등에서 차별 및 소외를 받아 아동노동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p>	<p>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소수 집단이나 이주노동자와 같은 근로자의 아동은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적어 결국 아동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p>
<p>부문</p> <p>비공식 고용</p>	<p>경제 비공식 부문에서 아동노동이 가장 만연하며, 공식 부문에서도 아동노동이 있는 비공식적이고 규제가 없는 부분에 하도급을 할 수 있다.</p>	<p>비공식 고용은 의류 및 신발 부문 공급망에서 일반적이다.</p> <p>목화 수확 시 상당히 많은 계절 노동자를 비공식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p> <p>특히 자수나 구슬장식 등 복잡한 수작업이나 가죽 바느질 업무에 비공식 노동이 특히 만연하다.</p>

<p>부문</p> <p>아동이 더 잘하는 업무가 있다고 간주한다.</p>	<p>일부 부문에서 아동이 특정 업무를 더 잘 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다.</p>	<p>복잡한 바느질, 가죽 바느질, 구슬장식, 자수 등 특정 업무를 아동이 더 잘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다.</p>
<p>부문</p> <p>이주노동</p>	<p>계절 이주민 아동은 부모를 따라 이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아동노동에 취약하다. 계절 노동 일터는 학교와 다른 서비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계절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p> <p>이주민 아동은 고립, 폭력, 열악한 근무환경, 임금 미지급, 당국에 신고될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3]</p>	<p>목화 수확시 상당히 많은 계절 노동자를 비공식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p> <p>국제 이주노동자가 노동력의 75%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도시 이주 역시 대부분의 수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p>
<p>부문</p> <p>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임금이 아니다.</p>	<p>임금이 낮고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가계 소득이 줄고 아동이 근로하는 경제적 유인을 만든다.</p>	<p>임금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노동집약적이고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의류 및 신발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위험하다.</p>
<p>부문</p> <p>견습생 제도를 사용한다.</p>	<p>견습생으로 간주되는 아동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교육을 방해할 수 있다.</p>	<p>견습생 제도는 이 부문의 여러 상황에 사용된다.</p>
<p>부문</p> <p>하도급</p>	<p>하도급을 하면 노동 기준에 대한 가시성을 낮춰 아동노동 위험이 증가한다.</p>	<p>(방직업 등) 제조업 전세계적으로 재단-</p>

		제작-봉제(CMT) 및 마감 작업에서 하도급은 (예. 날염업체에 위탁) 일반적인 관행이다.
<p>부문</p> <p>민간 채용 또는 고용 대행업체를 사용한다.</p>	<p>채용업체나 대행업체를 사용하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가 여러 단계로 분리될 수 있다. 고용주가 자체 운영에서 채용 관행을 알지 못해 노동자가 착취당할 수 있다.[4]</p>	<p>(방직업 등) 제조업</p> <p>가내노동자와 해외 이주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 민간 채용 또는 고용 대행업체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p>
<p>부문</p> <p>채무계약과 부채가 존재한다.</p>	<p>아동에게 채무나 선금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아동은 강제노동, 채무노예, 불안정한 노동에 처하거나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높다.</p>	<p>채무구조가 견습생 제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p> <p>민간 채용 또는 고용 대행업체를 통해 채용된 이주노동자에게 채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p>

- [1] Committee on Monitoring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 (2004), Monitoring International Standards: Techniques and Sources of Information,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2] Jensen, (2000), Development of Indicators on Child Labor, A Report to the International Program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r, ILO, Geneva.
- [3] 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Migration and Child Labour website.
- [4] US Department of State (2015).

공급업체 평가

- 공급업체 평가는 (관리자가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 관리자,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에 주로 근거해야 한다.
- 기업이 평가 장소를 오직 직장에서 또는 외부에서 할지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의할 것을 권장한다.
- 기존 인터뷰 방식은 아동에 대해서는 항상 효과적이지 않으며 아동이 답변을 지도받았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아동노동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경우 기업이 참여 방식을 포함해 평가할 것을 권장한다.³⁹⁾
-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위험이 감지된 경우 아동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자격있는 전문가를 현장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

특정 지역에 아동노동을 제거하려면 정부, 산업,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아동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을 정식 교육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동노동에 대해 공동체가 감시하게 하는 등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상당한 관심과 자원이 투입됐다. 이를 배경으로 기업은 관련 있고 가능한 경우 아동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현지 전략과 자체 시정조치계획을 연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아동노동이 한 지역의 여러 부문에서 만연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 (즉, 의류 및 신발 공급망에 특정한 문제가 아니므로) 적절한 경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다른 부문에서 아동노동 위험을 파악할 것을 권장한다.

39) 참여방식의 예시로 역할극을 하고 아동에게 그림을 그려 설명하게 하고, 아동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반응을 이끌어내고, 글을 쓸 수 있는 아동에게 이야기나 설명을 하도록 하고, 도표나 지도를 보여주면서 질문하는(교육을 통해 도표와 지도를 이해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한다) 방식이 있다. SIMPOC (2005).

기업 자체 운영에서 아동노동을 중단, 예방 또는 완화

아동이 위험한 노동을 하는 경우, 즉시 아동을 위험한 업무에서 분리해야 한다. 기업이 자체 운영에서 아동노동을 중단 및 예방하는 기존 지침을 실행할 것을 권장한다. 시정조치 계획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교육, (책자 등) 자료, 워크숍, 지속적인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식을 제고한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아동노동에 대한 기업 정책
 - 아동노동에 대한 정의
 - 위험한 업무에 대한 정의 (노동 최소 연령 이상 아동에게만 관련있으며, 최소 연령 이하 아동은 전혀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국제 및 국내 규범 및 법률
 - 아동노동 시 아동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
 - 아동 노동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장소와 방법 (예. 아동노동 감시위원회 또는 기타 운영 차원에서의 고충처리 제도)
 - 아동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 제도 그리고 근로자, 감독자, 관리자의 역할을 통해 아동노동을 예방할 수 있다.
- 공식적으로 근로자 계약서를 만들고, 민간 채용 또는 고용 대행업체에 대해 사전 자격 승인 절차를 만드는 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위험을 완화하도록 관리 제도를 만든다.⁴⁰⁾ 채용 및 고용 감독자에게 아동노동에 대한 기업 정책과 아동노동 위험을 줄이는 제도에 대해 교육을 제공한다.
- 가급적이면 모든 아동노동을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직장에서의 직업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파악, 예방, 완화함으로써 위험한 아동노동을 제거한다.⁴¹⁾ 모듈 5를 참고한다.
- 가장 효과적인 예방 조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아동노동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기업은 (정부 구상,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 시민사회 구상 등) 아동노동을 해결하는데 효과를 보인 기존 구상에 기업이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예컨대 구상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거나, 직장 외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⁴²⁾

40) *Shift and IHRB, Employment and Recruitment Agencies Sector Guide on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uropean Commission.

41) Preamble iii in Netherlands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2016).

42) 아동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목적과 역할을 하는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질문에 대해 다음 내용을 참고한다.

기업의 피해에 대한 기여 예방(유통업체, 브랜드와 그 구매 중간업체를 위한)

- 기업은 가격 협상과 구매 관행을 통해 피해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고 예방해야 한다.
- 기업은 (적절한 경우) 아동노동 구성요건에 대해 공급업체의 인식을 제고하고 현지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계를 촉진하는 등 가능한 경우 공급업체가 아동노동을 예방하도록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 구체적인 아동노동 사건이 파악됐는지를 불문하고, 만약 공급 지역에서 아동노동 위험 요소가 파악되었고, 공급업체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공급업체가 아동노동을 예방하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 임금과 아동노동의 연관성을 인정해 기업이 임금에 대한 실사를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모듈 7을 참고한다.
- 아동노동이 특정 공급업체에게만 특징적인 경우가 드문 것을 인정해, 기업은 (생산단지 등) 특정 지역에서 전 부문에 걸친 지원을 하고, 공동체에 기반한 아동노동 금지 구상에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즉, 이 부문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실제로 교육, 역량 강화, 결과 추적, 여러 공급업체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조율한 전략이 있다.
- 아동노동이 특정 지역의 한 부문에만 특징적인 경우가 드물고 여러 부문에 걸쳐있고, 한 부문에서 아동을 분리시키면 아동이 단순히 다른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기업은 같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다른 부문에서도 맞춰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즉, 실제로 부문 간 지역 협의가 설치돼 특정 지역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다룰 수 있다. 또한 교육 자원, 여러 부문에 대한 지표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⁴³⁾

추적

기업 자체 운영에 대한 실사와 그 효과성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 감시, 검증

직장에 기반한 아동노동 위원회가 아동노동을 감시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위원회는 아동노동에 대해 근로자를 교육하고, 현지 고충처리 제도의 우선적인 이용 지점이

⁴³⁾ “Hard Question 5” in ILO-IOE (2015).

⁴³⁾ IOE and ITUC Child Labour Platform website.

되고, 아동이 위험한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직장에 기반한 아동 감시 위원회는 공동체 차원의 아동 감시 프로그램 및 과정과 협력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효과적인 경우) 구제를 실현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구제를 제공하거나 협력

운영 차원에서의 고충처리 제도

아동은 스스로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노동 감시 역할을 하는 위원회, 노조, 공동체 구성원, 조달 구성원, 지역 시민사회, 정부 관료 등 아동을 대신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⁴⁴⁾ 고충처리 제도 활용에 관한 활동에 현지 시민사회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은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을 관련 당국에 신고할 제도를 파악(또는 마련)해야 한다.

적절한 구제 방식 결정

- 아동이 합법적인 노동 가능 연령 이하인 경우, 구제의 목표는 아동을 직장에서부터 분리해 가급적이면 정식적인 정규 교육을 받게하는 등 대안을 보장해야 한다. 구제 과정에 아동의 보호자와 대화하고, 가능한 경우 아동 또는 가족의 복지를 악화하지 않으면서 아동을 취학시키도록 한다. 예시로 다음을 포함한다.
 - 아동을 직장에서 분리해 아동이 (학령기까지) 취학하는 동안 고용주가 아동의 학비를 부담한다.
 - 아동을 직장에서 분리해 아동의 가족 구성원이 대신 취업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임금을 받는다.
 - 아동을 직장에서 분리해 또래보다 교육이 낮은 아동을 위한 과도기적 교육을 받게 한다.
 - 아동을 직장에서 분리해 (소득 격차 등) 아동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 프로그램을 아동 가족이 참여하도록 한다.

44) IDH (2012); Stop Child Labour (2015).

- 공동체에 신뢰할 수 있는 구상이 있는 경우, 기업이 동참해 아동이 직장에서 학교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이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 아동을 즉시 위험한 일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는 범죄일 수 있으므로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위험한 일을 함으로써 (건강 등) 신체적 피해가 있는지 (의사 등)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파악하고 피해를 적절히 구제해야 한다.
- (더 높은) 국내법 또는 국제 기준에 따라 아동이 합법적인 노동 가능 연령 이상인 경우, (아동이 계속 노동할 수 있으나 위험한 일인 경우 즉시 분리하는 등) 아동이 적절한 일을 계속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업은 이전에 노동한 아동이 적절히 보호받고 있는지 감시하고, 다시 노동을 하거나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지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⁴⁵⁾

선정된 국제 문서 및 기준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hapter IV, Human Rights and Chapter V,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 ILO Convention concernin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1973 (No.138)
- ILO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 182)
-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참고자료

- Annual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Washington, D.C.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ur, List of Goods Produced by Child Labor or Forced Labor, Washington, D.C.
- SIMPOC (2005), Manual on Child Labour Rapid Assessment Methodology, ILO, Geneva, UNICEF
- Shift and IHRBC (2012), Employment and Recruitment Agencies Sector Guide on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uropean Commission

45) 5x5 Stepping Stones for Creating Child Labour Free Zones, Stop Child Labour, Amsterdam .

- IDH (2012), Report 2010-2011 Business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on addressing child labour, UN Global Compact Labour Working Group
- ILO (2007), Guide Two: How Employers Can Eliminate Child Labour, ILO, Geneva
- ILO-IOE (2015), Child Labour Guidance Tool for Business, ILO, Geneva
- ILO-IPEC (2005), Guidelines for Developing Child Labour Monitoring Processes, ILO, Geneva
- IOE and ITUC Child Labour Platform website
- Netherlands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2016), “Roadmap for Achieving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by 2016”, Outcome document from The Hague Global Child Labour Conference 2010 Towards a World without Child Labour Mapping the Road to 2016, Hague
- For information on relevant ILO standards see the ILO Helpdesk
- UNICEF,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15),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5, Washington, D.C.

모듈 2. 직장에서의 성희롱,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기업 정책과 관리구조에 기업책임경영(RBC)을 정착시킨다.

정책

기업이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대해 불관용 정책을 도입하고, 기업 자체 운영에서 성희롱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기업의 기업책임경영(RBC) 정책에 공급업체와 기타 사업 협력사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정책을 도입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기업은 다음 내용을 내부 정책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 직장에서 희롱, 괴롭힘, 그리고 폭력이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

주요 용어

성희롱 - 신체적 접촉이나 접근, 성적 의미를 내포한 발언, 포르노를 보여주거나, 말 또는 행동으로 성적 요구를 하는 성적 의도가 있는 불편한 행동 등을 포함한다. 이런 행동을 거부 시 성별을 불문하고 피해자가 채용이나 승진을 포함해 고용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차별적이다. 남성, 여성, 소년, 소녀가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 여성이나 소녀가 신체적, 성적 또는 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받는 결과를 만들거나 만들 가능성이 있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공격 또는 사적 영역에서 임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또는 위협을 포함한다.

- 기업의 기준 위반 시 일어날 명확한 결과
- 고충을 듣고, (운영 차원에서의 고충처리 제도 등) 보복이 없는 이의 제기 수단을 마련하고, 이의제기하는 근로자나 직원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잠재적 및 실제적 피해를 파악

분석 활동

여성은 의류 및 신발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 걸쳐 대다수의 노동력을 차지한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 이주노동자, 그리고/또는 비공식 노동자는 직장에서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46)

분석 활동 시 기업이 운영하거나 많은 공급을 받는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즉,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정도를 이해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신뢰할만한 국가 차원 그리고 부문 차원에서의 정보가 부족해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파악하는 것이 특히 어렵다. 이를 배경으로 문서를 검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위험이 높은 공급 국가를 파악하는데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장한다. 정보의 격차가 있는 경우 현지 이해관계자 그리고/또는 전문가와 협의할 것을 권장한다. 예컨대 기업은 시민사회 또는 노조와 함께 근로자 표적집단 논의를 하고, 노조와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대표 조직, 시민사회, 정부 등과 협의를 할 수 있다. 기업은 남성 그리고 여성이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경험에 대해 말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문화 규범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교육받은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근로자 그리고/또는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성희롱 배경을 고려해 기업은 특정 공급 지역에서 성희롱 위험이 높은 경우, 직장에서조차 그런 위험이 높다고 가정해야 한다.

〈표 10〉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위험 요소	부문 고려사항
저임금 고용 저임금 노동자는 고용 기회를 대가로 하는 성적 요구에 취약하다.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여러 단계에서 저임금을 받는 여성 및 소녀의 근로자가 압도적이다.
불안정한 고용 불안정하게 고용된 노동자는 고용 기회를 대가로 하는 성적 요구에 취약하다.	단기 고용 계약은 여러 공급 지역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 특히 제조업과 농업 (즉, 원료) 지역 경우 더욱 해당된다.

46) Cruz, A. and Klinger, A. (2011)

<p>직장 내 아동 및 청소년 직장 내 아동 및 청소년은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더 취약하다.</p>	<p>아동 및 청소년이 의류 및 신발 부문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p>
<p>승진 기회의 제한 여성이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실제 의사결정권자는 매우 드문 경우 여성은 직장에서 성희롱에 더 취약하다. 이와 유사하게 남성이 압도적으로 생산 시설 감독자를 차지하고, 각 근로자의 생산량을 보고하는 책임자이고, 승인되거나 되지 않는 결근, 지각, 행동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더 취약하다. 이를 배경으로 감독자는 성적 요구를 할 영향력이 있다.</p>	<p>여성은 의류 및 신발 공장에서 저숙련 노동자를 대부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관리자나 감독자급은 매우 드물다.</p>
<p>높은 이직률 젊은 여성 근로자 이직률이 높은 직장에서는 근로자가 알고 신뢰하는 동료 간 연결망이 없어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p>	<p>의류 및 신발 공장 이직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p>
<p>집에서 직장 위치 근로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직장이 멀리 있는 경우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성희롱과 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p>	<p>수출가공공단(EPZ)은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다.</p>
<p>현장 숙소 젊은 미혼 여성 근로자는 남성 관리자가 감독하는 현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젊은 근로자가 특히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다.</p>	<p>여러 국가에서 섬유 및 의류 제조업 근로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p>
<p>이주노동자 등 취약한 소수자 인종, 종교, 카스트 소수자 등 소수자는 “낮은 신분”을 이유로 괴롭힘과 폭력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소수자는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p>	<p>여성 소수자는 의류 및 신발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취약하다. 이주노동자는 목화 재배 및 수확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p>

<p>이주노동자는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 간 연결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괴롭힘이나 폭력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p>	<p>여러 국가에서 의류 및 신발 제조업은 국내 및 해외 이주노동자를 많이 고용한다. 해외 이주노동자가 노동력의 75%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p>
---	--

공급업체 평가

직장에서 구체적인 성희롱 사건을 파악해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근로자는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성립 요건을 모를 수 있다. 기업은 공급업체 평가 시 다음 내용을 인지해야 한다.

- 괴롭힘과 폭력의 성립 요건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 수준
-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실행한 조치
- 공급업체가 운영 차원에서 고충처리 제도를 설립했는지 여부와 설립한 경우 핵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표 8을 참고한다. 익명으로 유지가 되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곳이고 최소한 한 곳에는 관리자가 없는지,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 원칙이 있는지 여부⁴⁷⁾

근로자 인터뷰와 표적집단 논의가 공급업체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이 노조와 근로자 대표 단체의 의견을 구할 것을 권장한다.

여러 문화에서 여성과 남성이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민사회 집단 등)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켜 상황에 적절하도록 평가를 맞출 것을 권장한다. 평가수행자가 여성인 것이 가장 적절할지 고려해야 한다. 아동이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를 당한 위험이 높은 경우 평가수행자는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아동을 참여시키는 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운영 상황에 대한 이해

섹션 3.3에 따른 운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은 운영 차원의 고충처리 제도 외에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법 및 비사법적 고충처리 제도를 파악할 것을 권장한다.

47)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괴롭힘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는 감독자, 동료, 심지어 노조원일 수도 있다.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피해를 중단, 예방 또는 완화

교육과 운영 차원의 고충처리 제도 설립은 시정조치계획(CAP)의 핵심 요소이다. 근로자는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성립 요건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⁴⁸⁾ 그러므로 괴롭힘과 폭력의 성립요건에 대해 근로자의 의식을 제고하고, (있는 경우) 직장 내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 대상은 여성, 남성, 근로자, 감독자, 관리자, 기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로자,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노조와 근로자 대표 조직을 참여시키는 것은 현지 상황에 맞춰 해결책을 이행하는데 중요하다.

시정조치계획(CAP)의 추가 요소로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직장 내 또래집단을 형성해 여성이 적절한 자원 그리고/또는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 출퇴근 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출퇴근 교통편을 제공한다.
- 지역사회에서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자원 등을 제공하는 지역 단체와 협력한다.
-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근로자 및 관리자 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다.

기업은 공급업체가 직장 내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위험이 높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추적

기업 자체 운영에 대한 실사와 그 효과성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 감시, 검증

비밀을 유지하면서, 기업은 자체 운영에서 모든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의 종류,

48)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는 항상 직장에서 경험한 행동이 희롱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한다. 용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그 의미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이해도에 차이가 있다. Pantaleón, L. and Laboral Dominicana, F. (2003), "Rights for Working Women Campaign, Sexual Harassment in the Export Processing Zones of the Dominican Republic", International Labor Rights Fund.

유형, 사건, 빈도에 대한 기록을 수집해야 한다. 경미하거나 잠재적인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나이와 성별로 분류할 것을 권고한다.

기업은 자체 운영에서 취했거나 취하는 행동이 성희롱을 예방한다는 것을 가능한 한 보장해야 한다. 예컨대 간단한 설문조사, 동료 회의, 기타 근로자 참여 방식을 통해 다음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성립 요건, 그리고 기업 정책을 위반하는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 정도
- 성희롱,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 시 신고하는 방법과 장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대안 수단 등)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근로자가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자가 적절히 대응했고 대응할 것이라는 신뢰 수준

기업 공급망에 대한 실사와 그 효과성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 감시, 검증

기업 공급망에서 성희롱이 예방되고 있다고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업은 후속 조치를 통해 공급업체가 시정조치계획을 실행하고 있고, 위 내용이 기존 제도에 정착됐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확인을 넘어 기업은 공급업체, 근로자, 노조,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대표단체와 협력해 시정조치가 효과적인지 평가할 것을 권장한다. 예컨대 기업은 수집한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공급업체와 검토하거나 공급 거점에 속한 다양한 공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표본집단 논의를 열어 (교육 등) 예방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구제를 제공 또는 협력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범죄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운영 차원에서의 고충처리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괴롭힘,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 보복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 기업과 노조 대표 외 연락 지점이 있다
- 익명으로 비밀이 보장된다

아동이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아동이 고용된 직장에서 아동을 대신하는 이의제기자가 고충처리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자 10. 차별 및 젠더에 기반한 차별

ILO 협약 제111호(ILO Convention No. 111)가 정의한 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배경(등)을 이유로 “고용 또는 직업에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무효화 또는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구분, 배제 또는 선호이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정의한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란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별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이다. 차별할 의도가 없었던 상황에도 해당된다. 성별에 근거해 불리하고 불평등한 기존 여건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남성과 여성을 동등 또는 중립적인 대우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여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된 경우에도 차별이 생길 수 있다.

본 모듈은 차별 형태에 해당하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그리고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실사를 이행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한다. 그러나 차별은 괴롭힘과 폭력을 훨씬 넘어선다. 본 지침은 차별적인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한 실사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권고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은 임금, 직업 건강과 안전, 근무 시간과 연관있다는 점을 인정해, 이 상황에서 차별을 파악, 예방 그리고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를 관련 모듈에 포함했다. 이 부문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점을 인정해, 기업은 자체 운영과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배경(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차별적인 정책 또는 관행을 파악, 예방,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별적인 정책 또는 관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 임신한 근로자가 현지 법에 따라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전에 종료되는 단기 계약을 제시받는다
- 임신 테스트가 고용 조건이다
- 이민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야 다른 임금을 받는다
-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HIV 상태에 대해 질문받는다

적절한 구제 방식 결정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⁴⁹⁾ 어떤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구제를 제공할 의무책임이 있다.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사건 경우 일반적으로 사후 대응책에 상담을 포함시키도록 권장하다. 일부 피해자는 특히 폭력 사건 경우 장기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전문 상담이 포함될 수 있다.⁵⁰⁾

선정된 국제 문서 및 기준

-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No. 100)
-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
- 1998 Declaration on Fundamental Rights and Principles at Work (ILO)
-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 RES/48/104), New York, 20 December 1993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19, Violence against women (Eleventh session, 1992), U.N. Doc. A/47/38 at 1 (1993), reprinted in Compilation of General Comment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Adopted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 U.N. Doc. HRI/GEN/1/Rev.6 at 243 (2003).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w York, 18 December 1979, United Nations
-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No. 100);
-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No. 183) and its Recommendation, 2000 (No. 191).

참고자료

- Chappell, D. and Di Martino, V. (2006), Violence at Work, 3rd edition, ILO, Geneva.
- Cruz, A. and Klinger, A. (2011), “Gender-based violence in the world of work: Overview and selected annotated bibliography”, Working Paper 3, ILO, Geneva.
- For information on relevant ILO standards see the ILO Helpdesk.

49) 어떤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성희롱과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에 대한 기여를 감소할 수 있다.

50) Chappell, D. and Di Martino, V. (2006).

모듈 3. 강제노동

기업 정책과 관리구조에 기업책임경영(RBC)을 정착시킨다.

정책

기업이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 강제노동에 대한 불관용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기업은 관련 민간 채용 또는 고용 대행업체, 그리고 하도급업체 사용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는 등 위험의 특징과 연관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하도급 정책에 대한 정보는 상자 2를 참고한다.

주요 개념

강제노동 - 국제적으로 인정된 강제노동의 정의는 ILO 협약 139(제29호)에 따라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이다.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잠재적 및 실제적 피해를 파악

분석 활동

강제노동은 복잡하며, 여러 형태를 띄고,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기업은 분석 활동 시 다음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위험을 분석할 책임을 진 구성원은 강제노동의 성립요건, 강제노동의 일반적인 형태, 취약한 근로자, 그리고 국제 기준을 이해해야 한다.⁵¹⁾
- 기업은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등 신뢰할만한 기관의 기존 보고서를 참고해 강제

51) ILO(2015).

노동과 관련된 자료, 생산과정, 강제노동 위험이 높다고 표시된 공급 지역을 파악한다.

- 기업이 강제노동 위험이 높은 국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정보를 구할 것을 권고한다.
- 또한 기업이 현지 정부, 근로자,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시민단체와 전 부문 차원에서 협력해 위험이 높은 업무와 강제노동 영역을 파악하도록 권장한다.
-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이 부문 강제노동의 특징, 수준, 범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부문에 걸쳐 기업은 수집한 정보와의 격차를 파악하고 정보의 조율과 수집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의류 및 신발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위험 요인 예시는 표 11를 참고한다.

<표 11>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강제노동 위험 요인

위험 요인	부문과 관련성
<p>국가가 조직한 강제노동</p> <p>국가가 조직한 강제노동이란 정부가 특정 부문에 시민을 강제노동시키는 것을 말한다.</p>	<p>목화업</p> <p>일부 국가에서는 국가가 목화 생산을 위해 강제노동을 조직한다. 이를 배경으로 현지 당국은 목화 생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정부 및 민간 기업 구성원을 보낸다.</p>
<p>민간 채용 또는 고용 대행업체</p> <p>채용업체나 대행업체를 사용하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가 여러 단계로 분리될 수 있다. 고용주가 자체 운영에서 채용 관행을 몰라 노동자가 착취당할 수 있다.[1]</p>	<p>가내노동자와 해외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 민간 채용 또는 고용 대행업체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p> <p>이동</p> <p>노동자는 노동 중개업체나 고용 대행업체를 통해 (해양 수송 등)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일자리로 보이나 높은 취업 수수료와 부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p>
<p>채무계약과 부채가 존재</p> <p>채무 상환을 위해 노동을 제공한다. 고리의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무기한인 경우가 많다.</p>	<p>목화업</p> <p>농업 근로자가 다음 해를 위한 구매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작물 주기가 끝나 고리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p>

	<p>제조업</p> <p>채무구조가 견습생제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민간 채용 또는 고용 대행업체를 통해 채용된 이주노동자에게 채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채용돼 견습생제도로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다.</p>
<p>직장 내 아동과 청소년</p> <p>직장 내 아동과 청소년은 강제노동에 더 취약하다.</p>	<p>아동과 청소년은 의류 및 신발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p>
<p>이주노동자 채용</p> <p>이주노동자는 특히 지위가 불규칙적인 경우 강제적으로 착취를 당해 특정 강제노동 형태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다. 예컨대 이주노동자는 (여권 등) 문서를 압수 당해 강요에 취약할 수 있다. 근로자가 원할 때 문서나 기타 주요한 개인 소지품을 이용할 수 없고, 문서 없이 직장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압수는 강제노동의 표시가 될 수 있다.[2] 이주노동자는 노동 중개업체 수수료 때문에 채무로 인한 강제노동에 더 취약할 수 있다.[3]</p>	<p>목화업</p> <p>아동이 부모를 따라 이주해 목화밭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동이 자발적으로 이주하더라도 도착 시 착취당할 수 있다.</p> <p>제조업</p> <p>여러 국가에서 의류 및 신발 제조업은 국내 및 해외 이주노동자를 많이 고용한다. 해외 이주노동자가 노동력의 75%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p>
<p>현장 노동자 숙소</p> <p>현장에 거주하는 노동자는 근무시간 외 직장 또는 고용주가 운영하는 건물에 신체적으로 제약될 위험이 있다.[4]</p>	<p>여러 국가에서 의류 및 신발 수출 경제권에서 노동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p>
<p>교도소 노동</p> <p>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수감자가 비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고, 공권력의 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강제노동을 간주한다. 또한 수감자가 민간 사업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노동하는 경우도 강제노동을 간주한다.[5]</p>	<p>일부국가에서는 군복 관련 국가 계약을 포함해 의류를 생산하는데 수감자 노동력이 동원돼 강제 교도소 노동 위험이 증가한다.</p>

<p>하도급 하도급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급업체에 대한 노동 기준 가시성이 떨어져 강제노동 위험이 증가한다.</p>	<p>전세계적으로 재단-제작-봉제(CMT) 및 (예. 날염업체에 위탁하는 등) 마감작업에서 하도급은 일반적인 관행이다.</p>
<p>비공식 노동자 가내 근로자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 근로자를 포함한 비공식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는 강제노동, 특히 부채에 의한 강제 노동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된다.[6]</p>	<p>비공식 고용은 의류 및 신발 부문 공급망에서 일반적이다. 목화 수확시 상당히 많은 계절 노동자를 비공식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수나 구슬장식 등 복잡한 수작업이나 가죽 바느질 업무에 비공식 노동이 특히 만연하다.</p>
<p>생산에 대한 압박 생산 할당량이 정해져있고 주문량이 유동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강제적인 초과 노동 가능성이 더 높다.</p>	<p>의류 및 신발 재단-제작-봉제(CMT) 전반적으로 과도한 초과근무가 일반적이다. 모든 초과근무가 강제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초과근무가 의무이고, 초과근무 근거에 관계 없이 법에 따라 매주 또는 매월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강제노동이다.[6]</p>

[1] 미 국무부(2015)

[2] ILO(2015)

[3] 부채에 따른 강제노동 역시 부채노예로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4] 노동자는 근무시간 도중 또는 전후에도 직장이나 고용주가 운영하는 건물에 구속, 감금, 또는 어떠한 형식이든 제약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제한은 금지된다. ILO(2015).

[5] 수감자 노동은 국제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강제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 11에서 참고한 상황에서는 강제노동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수감자 노동은 항상 강제노동 위험이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 특정 관할권 법규를 이행함으로써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한다. Combating Forced Labour: A Handbook for Employers and Business, ILO.

[6] ILO(2015).

출처: 주요 인용 자료는 다음과 같다. Verité (2015), “Strengthening Protections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in Federal and Corporate Supply Chains” Amherst; Clean Clothes Campaign (2009), “False Promises,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Garment Industry Discussion Paper”, Amsterdam.

공급업체 평가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기존 지침에 따라 아래 내용을 고려해 강제 노동을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 강제노동은 여러 형태라는 점을 인정해, 평가를 공급 상황, 생산단지, 특정 강제노동 위험에 맞춰야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견습생제도가 일반적인 경우 그 지역에서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특유의 강제노동 위험(예. 이동의 자유)을 공급업체 평가에 고려해야 한다.
 - 민간 채용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업체를 평가에 확대적용하거나 그리고/또는 공급업체가 대행업체를 심사하는 것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공급업체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급업체 평가 시 해외 이주민으로부터 문서 압수 등 이주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특유의 강제노동 형태를 포함해야 한다.
- 전통적인 문서 평가 방식이 강제노동을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해, 공급업체 평가시 근로자, 관리자,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주로 활용해야 한다.
- 강제노동에 대한 질문에 솔직히 답변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노동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장 외에서 평가하거나 표본집단 논의와 참여 평가 방식 등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 강제노동이 (면 재배 등) 상류 생산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기업은 상규 공급업체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상자 3을 참고한다.

기업 자체 운영에서의 피해 중단, 예방 또는 완화

강제노동을 예방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위험이 파악된 이후 강제노동 예방 방법에 대해서는 본 모듈이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ILO과 같이 신뢰할만한 기관이 발표한 지침에 있는 권고사항과 관행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국제, 중앙정부, 지방 정부, 시민사회기구에서 강제노동 대응계획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있는 경우 그 전략을 기존의 현지 전략과 일치시키도록 권장한다.

시정조치계획 요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계약서, 근무시간, 이동의 자유 등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조와 근로자 대표기관을 지원한다.

-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 기준, 중요하게 기업 정책과 절차에 따라 근로자 채용과 연관된 관리자와 구성원에게 맞춘 교육을 제작한다.
- (관련있는 경우) 민간 채용 대행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 평가 절차를 만든다
- 직장과 공급망에서 단체교섭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지지한다. 노조는 강제노동을 감시하고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모듈 6을 참고한다.

기업 공급망에서의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

기업은 현지 상황에 맞춘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권고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강제노동이 파악된 경우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노동이더라도)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주문을 중단할 것을 권장한다.
-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급업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공급업체에게 강제노동 성립요건을 포함해 강제노동에 대해 인식을 제고한다.
 - 공급업체가 시정조치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 공급업체가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면서 저임금 노동의 사업적 원인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임금, 수당, 투자 비용을 포함한 가격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 내용을 구매 수량, 재료 비용, 기술 요건 등 기존의 가격 요소와 함께 고려해 본선인도가격(FOB)에 반영해야 한다. 상자 4를 참고한다.
- 기업의 최종생산물과 강제노동이 연관되어 있다고 기업이 파악한 경우 (예방 방법을 알 수도 모를 수도 있다) 부문 수준에서 이에 대해 알리고 부문 내 여러 기업과 함께 강제노동을 예방하도록 권장한다.
- 산업 협회는 노조와 이해관계자와 체계적인 협의를 구성해 부문 차원에서 강제노동에 대응할 전체적인 접근방법을 조율할 수 있다.
- 강제노동은 부문에 걸쳐 만연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 기업이 동일한 국가 또는 지역의 다른 부문과 협력해 전략 조율을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이 방식은 강제노동이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단순히 이동하는 위험을 줄인다.
- 강제노동의 영향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다자 이해관계자를 통한 접근도 필요한 상황을 인정해, (관련있는 경우) 기업이 취합한 정보와 높은 수준의 분석결과를 지역 및 국제 기구에게도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기업은 중복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효과적인 구상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예컨대 규제적 틀에 의해 그리고/또는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효과적으로 다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노동이 있는 상황인 경우, 기업은 정부를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또는 협력 구상을 통해 공급망에 있는 강제노동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의 참여는 색션 3.2.6을 참고한다.

추적

기업 공급망에 대한 실사와 그 효과성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 감시, 검증

강제노동은 잘 보이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 한 번의 현장 평가로 강제노동이 예방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조기 경보 제도 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감시가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실사를 이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기업은 노조, 공급업체,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계획해야 한다. 노조 자체로 강제노동을 효과적으로 감시자가 될 수 있다. 시민사회와 공동체 구성원 역시 강제노동에 대해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차원의 감시가 효과적이려면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경우 구제를 제공 또는 협력

강제노동의 여러 형태는 범죄이다. 기업은 관련 당국에 강제노동 범죄에 대한 신고 제도를 파악(또는 설치)해야 한다. 기업이 강제노동을 야기 또는 기여한 경우 관련당국과 협력해 적절한 형태의 구제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선정된 국제 문서 및 기준

- ILO,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 ILO,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 ILO, Protocol of 2014 to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and Forced Labour (Supplementary Measures) Recommendation, 2014 (No. 203)

참고자료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2015),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5, Washington, D.C.
- List of Goods Produced by Child Labor or Forced Labor, Department of Labor, United States of America.
- Verité(2015), “Strengthening Protections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in Federal and Corporate Supply Chains”, Amherst.
- ILO(2015), Combatting Forced Labour: A Handbook for Employers and Busines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eneva.
- For information on relevant ILO standards see the ILO Helpdesk

모듈 4. 근무시간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실제적 및 잠재적 위험을 파악한다.

분석 활동

의류 및 신발 공급망에서 운영하는 많은 기업 경우 과도한 초과근무가 일어날 위험이 높은 곳이 의류 및 신발 제조업이다.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위험이 더 높지만 대부분의 공급 국가에서 과도한 초과근무가 만연하다. 이 부문 중 이주노동자가 많이 고용된 곳에서 과도한 초과근무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나 이 지표만으로 과도한 초과근무 위험이 높은 상황을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공급업체 평가

신뢰할만한 기관의 지침에 따라 기업이 다음 내용을 포함해 근무시간을 평가할 것을 권장한다.

기업은 국내법과 국제 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 내용을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 초과시간 조건과 제한에 대한 법률 또는 단체협상 합의서 준수 여부
- 병가와 연차를 포함해 개인 휴가에 관한 법률 또는 단체협상 합의서 준수 여부
- 출산휴가, 모유수유 휴식, 육아휴직에 대한 법률 또는 단체협상 합의서 준수 여부⁵²⁾. 임신한 근로자는 현지 법에 따라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전에 종료되는 단기 계약을 할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위 내용에 더해 기업은 과도한 근무시간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예시는 상자 11을 참고한다.

근로자 인터뷰는 공급업체 평가에 핵심 요소여야 한다. 평가자는 참여 인터뷰 방식 등을 통해⁵³⁾ 근로자가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할 위험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52) Better Work, “Guidance Sheet 8, Working Time”, Better Work website.

상자 11. 제조업에서 과도한 근무시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의류 및 신발 공급망 제조업 단계에서 과도한 초과근무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다. 그 중 가장 공통적인 요인은 저임금, 비효율적인 생산 계획, 그리고 부적절한 구매 관행이다.

-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매우 낮은 경우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초과근무를 선호할 수 있다.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이다.
- **부적절한 구매 관행:** 유통업체 또는 브랜드가 과도한 초과근무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뒤늦게 스타일을 바꾸거나, 비합리적인 주문-납품 사이 리드타임이거나, 특히 재주문인 경우 더 두드러진다. 상자 4를 참고한다.
- **비효율적인 생산 계획:** 초과 예약, 부적절한 생산 계획, 비효율적인 생산 또한 과도한 초과업무 원인이다. 주문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부문에서 초과예약은 지속적인 문제이다. 공급업체는 수요가 계속 많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생산 여력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업체는 제한된 수의 기술있는 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채용한 후 수요에 변동이 있을 때 초과근무하도록 하거나, 계약직이나 하도급을 사용한다.

기업 자체 운영에서의 피해 중단, 예방 또는 완화

이 부문에서 과도한 초과근무 위험이 만연하다. 기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조치계획(CAP)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우선적으로 근로자당 근무시간을 추적할 것을 권장한다. 이후 인사 담당자에게 과도한 초과근무 위험을 표시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 저임금이 과도한 초과근무 수요의 주요 원인인 경우 기업은 임금에 대한 내부 실사를 실행해야 한다. 모듈 7을 참고한다.

53) 예컨대 하루 일정을 설명해달라고 근로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 근로자는 근무시간, 초과시간, 출산휴가, 관련 보상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교육받아야 한다. 이 내용을 첫 교육에 포함시키고 주기적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근로자 교육에 노조와 근로자 대표 단체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한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임신부, 이주 여성 노동자, 소수 인종, 기타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관행은 부적절한 초과근무 보상, 출산효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생산 구조의 설정과 설계를 바꾸는 등 더 효율적인 과정을 통해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다.

기업 공급망 피해에 기여를 방지

- 기업은 적절한 경우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침을 주는 등 공급업체를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 저임금이 과도한 초과근무 수요의 주요 원인인 경우 기업은 임금에 대한 실사에 관심을 둘 수 있다. 모듈 7을 참고한다.
- 책임있는 구매 관행에 대해 상자 4를 참고한다.

적절한 경우 구제를 제공 또는 협력

적절한 구제 방식 결정

보상은 가장 적절한 구제 방식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제 제공 과정은 섹션 6.3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기업은 보상에 대한 기존 지침과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공평한 보상을 받지 못한 연체된 임금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근로자가 휴가를 허가받지 못한 경우 구제책을 결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으나 기업과 근로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

선정된 국제 문서 및 기준

- Hours of Work (Industry) Convention, 1919 (No.1)
- Weekly Rest (Industry) Convention, 1921 (No. 14)
- Forty-Hour Week Convention, 1935 (No. 47)
- Holidays with Pay Convention (Revised), 1970 (No. 132)
- Reduction of Hours of Work Recommendation, 1962 (No. 116)
- Night Work Convention, 1990 (No. 171) and its Recommendation, 1990 (No. 178)
-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No. 183) and its Recommendation, 2000 (No. 191).

모듈 5. 직업 건강 및 안전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 대한 잠재적 및 실제적 피해를 파악

분석 활동

의류 및 신발 부문 공급망 각 단계는 고유하며 건강 및 위험 피해에 대한 증거 기록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부문 및 하위 부문에서의 건강 및 안전 위험에 대한 기존 보고서를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직업 건강 및 안전 위험을 분석할 때 국가 특유의 위험 요인이 특히 관련있다. 조사의 수준, 건물 높이, 도시 계획 정도, 공기의 질 등이 건강 및 안전 위험 특징에 큰 영향을 준다. 국가 위험 요인을 판단할 때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직업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규제와 규칙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가?
- 국가 조사관 그리고/또는 제3자가 조사하는가?
- 제3자가 조사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어떤 견제와 균형이 있는가?
- (국가 또는 제3자) 조사관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이 자격요건은 국제 기준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 검사관의 (뇌물 수수 등) 위반 사례가 알려진 경우 어떤 결과가 있으며 이 요건이 실행되는가?
- 정부 조사와 관련해 국가 뇌물 수수에 대한 합리적인 위험이 있는가?

공급업체 평가

기업은 산업 전반적으로 검사 기준을 높이고 공급업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생산단지 등) 공급 지역 협력을 통해 공급업체를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⁵⁴⁾

현장에서 평가하는 위험은 국가 그리고 공급망의 구체적 단계에 알려진 위험에 부합해야 한다. 평가는 아동, 임산부 또는 수유하는 산모 등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54) 예컨대 아래 내용을 참고한다. Bangladesh 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 and the Alliance for Bangladesh Worker Safety.

근로자에 대한 직업 건강 및 안전 위험을 포함해야 한다. 예컨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아동이 위험한 노동에 고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노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듈 1을 참고한다.

심각한 피해 위험과 관련해:

- 기업은 공급업체가 국내 및 국제 기준에 따라 요건을 갖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정부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관련 자격을 갖춘 (구조물 기술자, 화재 보호 전문가, 전기 기술자, 화학물질 처리와 관련한 건강, 안전 및 환경 전문가 등) 자격있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공급업체 평가에서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사고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때 근로자가 안심하고 솔직히 답변해도 되는 환경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 평가단에는 근로자,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노조와 대표단체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개인, 공동체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 위험이 없는 경우:

- 교육받은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지만 독립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에는 여성 등 근로자 그리고/또는 대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공급업체 평가 방법에 대해 신뢰할만한 기관의 기존 지침에 따를 수 있다.

기업 자체 운영에서의 피해 중단, 예방 또는 완화

기업은 모든 관련 ILO 건강 및 안전 수단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현장 조사 이후 분명한 일정에 따른 행동과 재무 계획을 상세히 기술한 시정조치 계획(CAP)을 개발해야 하며, 이 계획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개발되고, 현장 고위 관리자가 서명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 심각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영향이나 영향의 위험이 차단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대피하고, 건물을 사용하는데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생산을 중단한다.

-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예방과 완화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문서와 함께 직업과 환경 건강 및 안전 프로그램에 기반하며, 근로자,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노조와 대표 단체, 관리자가 이를 감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 기준과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 즉각적인 조치와 장기 프로그램 (기술자를 포함한) 구성원과 민주적으로 현장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근로자 안전 위원회에 대한 교육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심각한 위험(예. 구조 청렴성, 전기 안전, 화재 위험, 유해화학물질 등) 경우 시정조치계획(CAP)은 (구조 기술자, 화재 보호 전문가, 전기 기술자, 화학물질 처리와 관련한 건강, 안전 및 환경 전문가 등) 자격있는 전문가와 협력해 개발해야 한다.
- 아동이 현장에 고용된 경우, 시정조치계획(CAP)은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 및 안전 위험을 다루고, 아동의 (근로자 교육 관련 등) 기술 이해도를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 참여

직업 건강 및 안전 피해를 예방하는데 근로자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 관리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직업 위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해야 하며, 아동, 임산부, 수유하는 여성, 기타 불균형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도 포함된다. 근로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화재 등) 위험한 상황에 대피하는 방법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는 위험 평가, 모든 직업 건강 및 안전 정책, 프로그램, 절차, 시정조치계획(CAP)의 설계와 이행에 참여해야 한다.
- 근로자는 선의에 따른 경우 안전하지 않은 업무를 거부하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고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 근로자는 (적절한 경우) 피해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이 있어야 하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외부의 자격있는 전문가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

- 기업은 생산단지 내에서 등 근로자와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감독하는 관리자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예컨대 합동 방문이나 지역 안전 위원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기업 공급망에서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는 노력

-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파악된 경우, 기업은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적절히 해결되기 전까지 영향받은 생산 현장에서 생산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기업은 공급업체가 시정조치계획(CAP)을 이행하는데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임금, 수당, 투자 비용을 포함한 가격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 내용을 구매 수량, 재료 비용, 기술 요건 등 기존의 가격 요소와 함께 고려해 본선인도가격(FOB)에 반영해야 한다. 책임있는 구매 관행에 대해 상자 4를 참고한다.
- **공장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기업은 공동 투자, 대출, 후원자 또는 정부 지원 사용 촉진, 사업 장려책 등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능한 자금 조달을 촉진할 것을 권장한다.
 - 기업도 공급업체도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리고/또는 예방이 불가능하면 기업은 필요한 경우 관계를 유지 및 단절하는데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 공급업체가 통지와 주의 절차 이후 영향 예방을 거절할 경우 단절을 선택할 수 있다. 섹션 3.2.5를 참고한다.

추적

심각한 피해 위험인 경우:

- (구조 기술자, 화재 보호 전문가, 전기 기술자, 화학물질 처리와 관련한 건강, 안전 및 환경 전문가 등) 자격있는 독립적인 전문가는 시정조치계획(CAP) 이행을 감시 및 평가하고, 합의한 일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피해위험의 지속적인 감시에 참여해야 한다. 고충처리 제도를 통해 근로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고충을 제기하면 공급업체와 기업은 자격있는 전문가가 시의적절하게 고충을 조사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 공동체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 위험이 없는 경우:

- 감시 접근방식은 체계적이고 위험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감시 계획은 각 사업장에서 개발해야 하며 관리자와 근로자가 주로 이행해야 한다.

- 근로자는 적절히 지속적인 감시에 참여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직업 건강 및 안전 감시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기존의 기술적 지침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적절한 경우 구제를 제공 또는 협력

기업은 가능한 경우 ILO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ILO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과 일치하는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직업 건강 및 안전 영향에 대한 가장 적절한 구제 형식은 보상인 경우가 많다. 다음 내용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 의료 및 관련 비용
- 손실된 근무시간 또는 수입
- 통증 및 기타 신체적 고통
- 영구적인 신체 장애 또는 훼손
- 가족, 사회 및 교육 경험의 상실
- 위 내용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

근로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이 협력할 수도 있다.

상자 12. 중소기업을 위한 권고사항

모든 사업장은 규모, 위치, 기타 요인과 관계없이 건강과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일한 기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사고 위험과 관련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 예컨대 대기업보다 정식적인 운영 구조가 없고, 기술자나 안전 전문가를 거의 고용하지 않으며, 직업 건강 및 안전에 대해 사업 협력업체나 기타 외부 자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권고사항을 마련하는데 중소기업이 가진 강점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절차 변경을 할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의사소통 수단이 더 개방적일 가능성이 높다.

중소 제조업체 및 생산업체를 위한 권고사항

중소기업의 다양한 우려사항과 한계를 처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다음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 안전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안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 안전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그리고/또는 기타 기업과 협력에 동참한다
- 다른 기업과 “상호 지원” 대책반을 설립한다
- 전문적인 조직에 가입한다

구매업체와 공급업체(공급업체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필요한 경우 정보, 지침,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도록 중소기업을 도와야 한다.

중소 구매업체를 위한 권고사항

지역 및 전 부문 접근방식을 촉진하는 본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이 부문 구상, 노조와의 합의서, 다자 이해관계자 구상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출처: OECD (2003), Guiding Principles for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선정된 국제 문서 및 기준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No. 155)
- Promotional Framework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2006 (No. 187)
- Chemicals Convention, 1990 (No. 170)

참고자료

- OECD (2003), Guiding Principles for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Toolkit.
- IFC (2007),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for Textile Manufacturing,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Washington, D.C.

모듈 6. 노조 및 단체교섭

기업 정책과 관리구조에 기업책임경영(RBC)을 정착시킨다.

정책

기업은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 반노동자 정책과 행동을 관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의도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의 성격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의 잠재적 및 실제적 피해 파악

분석 활동

공급망에서의 다른 위험과 달리, 노조를 설립 또는 가입하고 단체협상할 권리는 구체적인 상품군이나 공급망 단계와 일반적으로 연관이 없다.⁵⁵⁾ 영향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평가할 때 오히려 구조적 그리고 법적 틀이 더 중요한 위험요소일 가능성이 높다. 단체협상을 위해 노조를 설립 또는 가입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제한하는지 이해하려는 목적은 이 권리에 대해 기업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이해 또는 파악할 것을 권장한다.

- 보호받고 행사되는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의 정도
-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틀 그리고 노조의 역할과 단체협상이 있는 정도
- 근로자에 대한 실행되고 있는 법적 보호 정도 그리고 근로자의 인권에 대해 이용가능하고 효과적인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 정도
- 부문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주요 노조단체 및 이 권리 행사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단체

55) 한 국가에서 일부 하위 부문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위 내용을 이해할 때,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는 노조 및 대표단체를 설립 또는 가입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국내법은 주의 대상일 수 있다.

- 협상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거나, 특정 국가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업을 전면 또는 “핵심” 산업에서 금지하며 국가가 운영하는 연합에 가입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법률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이 없다는 경고이다.
- 법 없이 정부가 노조를 해산하도록 허용하거나, 노조 등록 절차를 어렵게 만들거나, 노조 구성을 제한하거나, 한 사업장에 (소수 노조를 포함해) 복수의 노조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노조 회원, 간부 또는 고문이 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등 정부의 간섭을 허용하는 법률
- 특정 노동자, 예컨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 노조와 정당 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국내 법률 및 헌법

추가적으로 위험이 높거나 주목해야 할 지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결사의 자유를 지지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판결 기관이 없다
- 노조 정부에 의해 지도자가 수감 또는 추방당하거나, 해고, 부상당하거나, 살해되고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소하지 못하는 정도
- 파업자가 보복을 당하고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소하지 못하는 정도
- 과도한 지연 또는 비용이 있거나, 처벌이 약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등 정부의 이의제기 절차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
-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소 없이 (폭력이나 경제적 걸취를 위해 정부가 범죄 인물을 동원해 노조를 통제하는 등) 노동 관련 부패에 대한 정부 조치

다른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공급업체 평가

공급업체 평가 목적은 공급업체가 추진하는 반노동자 정책과 관행을 파악하는 것이다. 공급업체 평가는 근로자, 관리자, 노조 인터뷰에 주로 근거해야 한다. 전통적인 문서 평가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

기업은 일부 근로자가 반노조 정책에 대한 질문에 솔직히 답변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예시로 직장과 떨어진 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표본집단 논의와 같은 비전통적인 평가방법이 있다.

공급업체 평가는 다음 내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각 사항에 대한 예시는 표 12를 참고한다).

- 근로자에 대한 위협과 반노조적 태도
- 고용주가 지배하는 구조,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제도, 부패한 노사 관계와 관행
- 선의에 따라 협상할 것을 거부
- 단기계약, 기타 다른 형태의 임시계약, 비공식 노동이 노동자의 단결에 미치는 영향
- 노조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고용주의 반대와 적대적 태도

〈표 12〉 반노조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설명

반노조 정책 및 관행	설명
근로자에 대한 위협과 반노조적 태도	예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협박; 생계 위협으로 노동자를 협박; 채용 시 노조 지지에 따라 선별; 노조 지지자 “요주의 명단”을 만들고 사용; 노조 지지자를 해고; 강등, 불리한 업무, 불리한 업무환경을 통해 노조 지지자를 차별; 임금, 수당, 교육기회 감소, 이직 및 전근; 기간제 및 임시 고용자가 노조 지지자인 경우 계약 연장 불가; 노조에 대표될지 여부를 선택하는 과정에 간섭; 노조의 법적 인정에 대한 법적 및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연; 고용주 단체와 공동체 지도자를 포함해 반노조적 캠페인; 기업이 통제하는 부지에 근로자가 거주하거나, 민간 사업 단지나 수출가공공단(EPZ)과 같이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등 근로자와 노조 대표가 격리됨
고용주가 지배하는 구조,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제도, 부패한 노사 관계와 관행	고용주가 근로자 위원회나 기타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경우, 노조를 설립 또는 가입하거나 단체협상권을 행사하는데 방해물이 될 위험이 있다. 특히 진정한 노조가 있더라도 활동이 제한된 경우 더욱 그렇다. 이 구조는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노조나 대표 단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p>선언에 따라 협상할 것을 거부</p>	<p>기업이 단체협상할 진정한 기회를 거부하거나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를 파악해야 한다. 단체협상권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근무조건, 고용 조건, 절차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노조와 기업 간 모든 협상을 포함한다. 단체협상에 복수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 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단체협상 결과는 법정에서 집행가능한지 여부와 상관 없이, 보통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서면 합의서이다. 합의를 이행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단체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하지만, 단체협상권은 기업이 아닌 노동자에게만 제한적이다.</p>
<p>단기계약, 기타 다른 형태의 임시계약, 비공식 노동이 단절에 미치는 영향</p>	<p>단기 계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근로자는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단절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p>

기업 공급망에서의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는 노력

- 기업은 공급망에서 반노조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업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공급업체가 (6-9개월 등)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도 주목할만한 개선을 보이지 않은 경우, 공급업체가 개선을 보일 때까지 기업이 주문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 기업은 구매 관행 등 반노조 활동 위험을 늘리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체 활동을 해결해야 한다. 책임있는 구매 관행에 대해 상자 4를 참고한다.
- 기업은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부문 차원의 협력을 할 수 있다. 기업은 공급망에서의 노조 권리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합의 틀이나 결사의 자유 의정 합의서 등을 통해 노조와 직접 협의할 수 있다.
- 노조원에 대한 폭행이 있는 등 심각한 인권 영향이 파악된 경우, 기업은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책임있는 단절에 대한 정보는 섹션 3.2.5를 참고한다.

상자 13. 의정합의서

결사의 자유 의정합의서는 특정 상황의 노사관계에서 결사의 자유 이행과 관련해 노조와 기업이 공동의 이해와 의지를 확립한다. 의정합의서는 현지 단일의 브랜드, 공급업체와 노조 간 또는 지역 및 전 부문 차원에서 복수의 구매업체, 공급업체와 노조 간 체결될 수 있다. 의정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

의정합의서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권장한다.

- 모든 당사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합의서 협상을 한다
- 의정합의서는 현지 상황을 고려한다
- 브랜드와 구매업체는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공급업체에게 사업적 장려책을 제공한다.

의정서의 효과는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분쟁 해결 수단의 설치에 부분적으로 달려있다. 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예컨대 민간 화해조정인, 조정인, 또는 중재인을 임명하는 등 상호 수락가능한 의정서를 만들 것을 권장한다.

선정된 국제 문서 및 기준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hapter IV. Human Rights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hapter V.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 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 ILO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 ILO Workers' Representatives Convention, 1971 (No. 135); Recommendation 1972 (no 143)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3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2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8

참고자료

- Freedom House (2010), The Global State of Worker's Rights, includes an assessment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in 165 countries.
- NAFTA Labor Secretariat has produced substantive analysis of workers' freedom of association in member countries.
- Committee on Monitoring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 (2004), Monitoring International Standards: Techniques and Sources of Information,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 For information on relevant ILO standards see the ILO Helpdesk.

모듈 7. 임금

임금에 대한 실사는 국내법은 물론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임금을 제시한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를 포함해야 한다.⁵⁶⁾ 본 모듈은 이에 따라 ‘국내법을 준수하는 임금’ 그리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임금’ 두 섹션으로 나뉜다.

국내법을 준수하는 임금

기업 정책과 관리구조에 기업책임경영(RBC)을 정착시킨다.

정책

임금에 대한 정책 의지를 도입하기 전에 (가능한 경우) 이주노동자 채용 및 고용, 하도급 등 임금 규정 미준수 위험 요인에 대한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상자 14를 참고한다.

56) 가이드라인 제5장 4b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이 비교대상이 될 만한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는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정부 정책의 기본 틀 내에서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임금과 수당,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의 경제적 상태와 연계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 제5장에서 명시적으로 존중할 것을 권고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ESCR)을 포함한 ‘국제인권장전(Bill of Human Rights)’를 참조.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잠재적 및 실제적 피해를 파악

분석 활동

노동집약적이고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의류 및 신발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분석 활동을 국가 위험 요인에 집중할 것을 권장한다. 임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이행이 없거나 효과적인 단체협상 수단이 없는 경우 임금 규정 미준수 위험이 높다고 간주될 수 있다.

추가적인 위험 요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이 다양
- 업무 건수별로 임금 지급
- 높은 비율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부문⁵⁷⁾
- 높은 비율로 비공식 노동자를 고용하는 부문
- 현장에 노동자가 거주⁵⁸⁾
- 고용주가 높은 비율로 젊은 노동자 그리고/또는 견습생을 고용
- 근로자가 전자(또는 기타 추적가능한)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임금 수령
- 근로자의 높은 문맹률 그리고/또는 낮은 교육 수준

공급자 평가

기업은 최저임금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높은 공급 국가에 대한 공급자 평가를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다.

공급자 평가는 국내 최저임금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공급업체가 세부 비용을 공유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 양 당사자가 신뢰 하며, 가격 협상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제3자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은 공급업체의 임금 준수 평가 방법에 대해 기존 지침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평가자는 국내 노동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⁵⁹⁾

57) 이주노동자는 국내법과 고충처리 제도 이용에 대해 모를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임금 차별에도 취약하다.

58) 현장 거주 비용이 임금에서 공제되는 경우 근로자가 법정 제한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임금에 대한 국내법 준수에 더해 평가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근로자가 임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임금이 시한 내 지급되고, 근로자가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한 임금 명세서가 제공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임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제가 합리적이고 국내법과 단체합의서를 준수한다; 의무 상여금 그리고/또는 급부가 제공되며, 출산휴가를 포함해 법에 따른 휴가가 허용되고, 근무시간에 대해 모듈 7을 참고한다; 그리고 모든 사회보장 비용을 지급하고, 모으고, 수급한다.⁶⁰⁾ 가능한 한 공급자 평가는 임금 차별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성별, 인종, 국적 등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임금을 받는지 분석한다.

공급자 평가는 근로자,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노조와 대표단체의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기업 자체 운영에서의 피해 중단, 예방 또는 완화

기업은 임금 법률 미준수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계획(CAP)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계획에 포함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 인식을 교육, (책자 등) 자료, 워크샵,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제고한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최저임금 요건
 - 임금 명세서 읽는 방법
 - 임금, 수당, 기타 형태의 보상
 - (관련있는 경우) 임금 조정 절차
- 비준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구조를 마련한다.
 - 인사부 또는 기타 임금 지급 담당자를 교육한다. 교육 주제의 예시로 국내법과 관련 단체합의서, 정규 및 초과근무 시간 임금, 수당 계산, 공제 계산 방법 및 공제가 합리적이고 국내법을 준수, 기록 관리 등이 있다.
 - 근로자에게 명확한 임금 명세서를 제공한다.
 - 명확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급여 내역을 마련한다.
 - 부정 행위 위험을 줄이는 (자동 급여 등) 급여방식

59) 프랑스 NCP의 섬유 및 의류 부문에서의 OECD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OECD Guidelines in the Textile and Clothing Sector) 참조.

60) Better Work, Guidance Sheet 5: Compensation 참조.

- 최저임금을 제공하는데 자원이 불충분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 계획 구조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재무 관리 및 계획 제도를 수립한다.

기업의 공급망에서의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노력

- 기업은 가격 협상과 구매 관행을 통해 피해에 기여하는 것을 평가 및 예방해야 한다. 책임있는 구매 관행에 대해 상자 4를 참고한다.
- 기업이 국내 최저임금과 협의 임금을 준수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것을 권장한다.
- 기업은 가능고 적절한 경우 - 기록 관리, 재무관리제도 등 - 기술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근로자에게 자동화된 급여를 제공하는 등 현지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도록 공급업체를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 임금, 단체협상, 근무시간 간 연관성을 인정해, 기업은 이 부문 위험에 대한 실사를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모듈 4와 모듈 6을 참고한다.

적절한 경우 구제를 제공 또는 협력

적절한 구제 방식을 결정

보상은 가장 적절한 구제 방식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제는 본 지침 섹션 6.4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임금

기업의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의 잠재적 및 실제적 위험을 파악

분석 활동

기업은 공급망에서 공급받는 국가 중 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지 않는 국가를 파악할 것을 권장한다. 그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은 아래 상자 14를 참고한다. 기업은 최저임금이나 협상 임금에서 배제돼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지 않는 임금을 받는 데 취약한 근로자의 종류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취약한 근로자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비공식 경제에 고용된 근로자
- 해외 이주노동자⁶¹⁾
- 업무 건수별 임금, 시급 임금을 받는 근로자

가능하고 합리적인 경우 기업은 실제 임금과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임금 간 격차가 가장 큰 국가에 대한 실사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공급업체 평가

공급 국가 전반적으로 위험이 만연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개별 공급 평가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은 이해관계자, 제일 중요하게는 근로자,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노조와 대표단체와 협의해 실제 임금과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임금 간 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이해할 것을 권고한다.

61) 해외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임금이 다를 수 있다.

상자 14. 고위험 공급 국가 파악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국가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 어려울 수 있다. 국가에서는 지역, 근로자 나이, 경제 활동, 또는 전문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가별 부문별 하나의 최저임금 수준을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현지 상황의 현지 기본 상품 및 서비스 비용, 그리고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다르다.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과 부문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최저임금과 국가 임금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임금(소위 “중위임금”)을 비교할 수 있다. 중위 임금은 국가의 임금 분포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비교하는데 평균임금에 비해 더 좋은 기준이다. 또 다른 방식은 한계임금(예. 국가 중위임금의 60%)을 계산해 부문 최저임금 또는 협상임금과 비교하는 것이다. 기업은 한 국가의 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동자에게 적용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인 가장 적절한 최저임금을 고려할 수 있다.

과도한 초과근무가 만연하다는 것은 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지표이다.

복잡성을 감안해 기업은 고위험 국가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 노조, 그리고 전문가와 산업 차원에서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기업 공급망에서의 피해 예방 또는 완화 노력

기업이 공급업체를 참여시켜 양자적 노력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임금 받는 경우를 높이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기타 기업과 협의(그리고 가능한 경우 협력)하는 기업은 국가 또는 분야 차원에 참여해 효과적인 임금 조정 및 이행 제도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실제 임금과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임금 간 격차에 대한 위험의 심각성
- 정부의 정치적 의지
- 기존 임금 설정 제도의 현재 효과
- 정부에 대한 산업의 영향력(예. 경제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광범위한 참여는 여러 형태를 띌 수 있으며, 참여의 성격은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참여 방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임금에 대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지지를 표명 그리고/또는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고 시행할 수 있는 전 부문에 걸친 단체협약서
-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임금을 협상하도록 공급업체를 독려
-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임금을 협상하고 국내법에 포함된 경우 고위험 국가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겠다는 약속

기업은 위 내용에 대해 공동 행동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력은 장기적인 과정일 수 있다. 기업은 국내법 준수,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노조를 설립 또는 가입할 권리, 그리고 단체협상 권리에 초점을 두면서 정부와 위 내용에 대해 계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선정된 국제 문서 및 기준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hapter V, Paragraph 4.b.
- ILO Protection of Wages Convention, 1949 (No. 95) and Recommendation, 1949 (No.85).
- ILO Minimum Wage Fixing Convention, 1970 (No. 131) and Recommendation, 1970 (No.135).
- ILO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Employer's Insolvency) Convention, 1992 (No. 173) and Recommendation, 1992 (No.180).
- UN Charter o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Article 7.
- Universal Human Rights Declaration, Article 23.

환경 모듈에 대한 소개

의류 및 신발 부문은 기성복부터 보호 신발, 명품까지 최종제품이 매우 다양하다. 각 공급망 단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다양한 과정, 투입물과 생산물, 환경 영향 수준과 특징이 단계마다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모듈 8부터 11까지는 의류 및 신발 공급망의 원료 생산 및 제조 단계에서 주로 발견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실사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다. 본 모듈에 있는 문제는 부문에서 환경 위험으로 알려진 문제를 선정한 것이나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망에서 위험을 분석할 때 모듈 8부터 11에 포함된 환경 위험과 다른 환경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생산과 관련한 환경 영향의 상당한 부분은 생산 디자인 단계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실사의 요건으로써 기업은 상품과 연결된 환경 위험을 이해하고, 상품군의 환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품 디자인 단계에서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⁶²⁾ 이와 관련해 기업은 개발할 상품을 평가할 때, 가능성, 비용, 수요 등 외에 상품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상품 디자인에서 개발까지 결정할 때 다음을 고려사항에 포함할 수 있다.

- **재료 선택:** 생산 전반에 걸쳐 일부 재료는 다른 재료보다 부정적 영향 위험이 높다. 생산 포장에서도 마찬가지다.
- **사용 단계 (예. 착용, 세탁, 건조, 다림질, 수선):** 상품 사용, 구체적으로는 세탁 단계에서 여러 환경 영향이 있으며, 물 사용과 에너지 소비 부분이 두드러진다.
- **수명 종료:** 상품의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은 제품이 매립되는지 또는 재사용이나 재활용될 수 있는지, 재사용 및 재활용되기 쉬운지 여부에도 영향받는다. 또한 사용 기간이 짧은 제품(예. 3-6개월만 사용)은 더 오래 사용되는 제품보다 더 많이 자원을 고갈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가능한 한 제품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기업은 위험 기반 방식을 취해 가장 위험이 심각한 위험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다.

62) 기업의 상품군 수가 실사의 성격과 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모듈 8. 유해화학물질

본 모듈은 유해화학물질의 환경 영향에 초점을 둔다. 건강 및 안전 위험에 관련된 정보는 모듈 5 직업 건강 및 안전을 참고한다.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잠재적 및 실제적 피해를 파악

분석

기업은 다음 내용을 해야 한다.

- 위험하고 유해한 화학물질과 제한된 화학물질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위부문 제품 생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분석한다. 기업이 기존 참고자료에 기반할 것을 권고한다.
- 위험하고 유해한 화학물질과 제한된 화학물질을 사용할 위험이 높은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 단계를 파악한다. 의류 및 신발 공급망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 섬유 생산 및 가죽 공정에서 위험이 가장 높다.
- 화학물질 사용을 적절하게 규제하지 않거나 기존 규제를 실행하지 않는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위험이 높은 국가를 파악한다.
- 기업 상품을 생산 및 제작할 때 사용하는 화학물질 목록을 (위험 기반 접근방식으로) 작성한다.
 - 우선 상품 생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종류를 파악하는 것을 시작해 체계적으로 점차 화학물질 목록 범위를 넓힌다
 - 기업 상품군이 다양한 경우 우선 유해화학물질 위험이 높은 상품 평가를 우선적으로 시작해 체계적으로 점차 화학물질 목록 범위를 넓힌다

공급자 평가

- 기업은 공급망에서 위험하고 유해한 화학물질 관련 고위험 국가, 고위험 단계(예, 섬유 생산 및 가죽 공정)에서 운영하는 공급업체를 파악해야 한다.

- 기업은 기존 지침에 의지해 기존의 신뢰할만한 산업 구상에 참여해 공급업체를 평가할 수 있다.
- 공급업체 평가는 현장 방문, 화학물질 시험, 품질 증명서를 포함해야 한다.
- 관련있는 경우, 기업은 위험하고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위험이 높은 날염이나 기타 공정이 공급업체 내부에서 또는 하도급에서 이루어지는지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

기업 자체 운영에서 피해를 중단, 예방 또는 완화

시정조치계획(CAP)의 일환으로 기업에게 다음 내용을 권고한다.

- 신뢰할만한 과학 기반 유해성 평가(환경 위험 평가 및 건강 위험 평가)에 근거해 부문에 대한 산업 전반에 걸친 공동의 제조제한물질목록(Manufacturing Restricted Substances List, MRSL)을 만들어 도입한다.⁶³⁾
- 규제를 통해 아직 제한되지 않고 대체가능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위험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 전반적인 연구목록(Research List)를 만들어 도입한다. 기업은 연구목록(Research List)에 있는 위험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무기한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 대체가능 물질이 발견되면서 화학물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삼아야 한다. 연구목록(Research List)은 화학물질 공급업체와 의사소통해야 한다.

시정조치계획(CAP)의 일환으로 기업은 다음 내용을 해야 한다.

- 제조제한물질목록(MRSL)에 있는 화학물질 사용을 즉시 중단한다.
- 위험 평가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식에 기반해 제조제한물질목록(MRSL)에 있는 화학물질 대체물질을 파악해 사용한다. 기업은 기존 신뢰할만한 대체물

63) 환경 위험 평가에는 위험 파악, 유해성 특징, 노출 평가, 위험 특징을 포함한다. 첫 두 단계가 유해성 평가 과정으로 간주된다. 환경 위험 평가 방법은 OECD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OECD 환경위험평가도구(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Toolkit)를 참조. 인체 건강 위험 평가 마찬가지로 위험 파악, 유해성 특징, 노출 평가, 위험 특징을 포함한다. 건강 위험 평가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국제화학물질안전계획(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 IPCS), WHO 인체건강위험평가도구:화학물질 유해성(Human Health Risk Assessment Toolkit: Chemical Hazards)을 참조. 건강위험은 모듈 5 직업 건강 및 안전에서도 설명한다.

질 목록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대체물질을 도입하기 전에 기타 잠재적 영향(예. 물 또는 에너지)과의 상충관계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기업은 부문 또는 하위부문에서 최고가용기술 참고문헌(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s)에서 정의한 최고가용기술(BAT)을 실행한다.⁶⁴⁾
- 기업은 현장 수준에서 강력한 화학물질 관리 계획을 이행하며, 이 계획에는 안전한 화학물질 보관, 화학물질 표시, 개인 보호 장비 사용,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모든 이에게 안전성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유해성에 노출될 경로가 있는 경우, 우선 기술적 통제를 통해 제거, 대체, 또는 완전 격리해야 한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로 장애물, 격리, 보호, 방지, 또는 부분 환기를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유해성을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한다. 기업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기존 지침과 기준에 의지할 것을 권고한다.
- 화학물질의 사용, 보관 등에 대해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

기업은 기존 사업 모델이 지식을 교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인하는지 아니면 자원을 과용하고 화학물질을 남용하도록 유인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은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경우 혁신적인 사업 모델(예. 화학물질 임대사업)을 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기업 공급망에서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는 노력

기업에게 다음 내용을 권고한다.

- 기업은 신뢰할만한 과학 기반 유해성 평가(환경 위험 평가 및 건강 위험 평가)에 근거해 부문의 공동 제조제한물질목록(MRSL)을 만들어 도입한다.
- 제조제한물질목록(MRSL)(그리고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어떠한 추가 기대사항)에 대해 위치에 상관없이 공급망에서 위험이 높은 단계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급업체에게 의사소통한다.
- 유해성과 위험 평가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식에 기반해 제조제한물

64)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 for the Textiles Industry, 2003).

질목록(MRSL)에 있는 화학물질 대체물질을 파악한다. 기업은 기존의 신뢰할만한 대체물질 목록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대체물질을 도입하기 전에 기타 잠재적 영향(예, 물 또는 에너지)과의 상충관계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기업은 공급업체가 시정조치계획(CAP)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공급업체와 참여하는 동안 기업은 화학물질 관리 관련 연락망을 지정해 공급업체와 의사소통할 것을 권장한다. 마찬가지로 공급업체도 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관련 연락망을 만들어야 한다.
- 하도급이 일반 관행인 경우 하도급 공급업체와 연관된 피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하도급에 대해 상자 2를 참고한다.

기업은 시정조치계획(CAP)을 이행하는 동안 공급업체와 계속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공급업체가 계속 제조제한물질목록(MRSL)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공급업체가 해당 화학물질 사용을 중지할 때까지 주문을 중단하거나 단절해야 한다.

선정된 국제 문서 및 기준

- OECD Guidelines for the Testing of Chemicals
- OECD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GLP)
-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Implementing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PRTRs)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hapter VI. Environment.

참고자료

-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Toolkit, OECD.
- Enterprise-level indicators for resource productivity and pollution intensity, UNIDO / UNEP RECP Programme.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Toolkit.
- OECD (2011), “Chapter 2: SIDS, The SIDS Plan and the SIDS Dossier” in the Manual for Investigation of HPV Chemical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UN (2011),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Fourth revised edition,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 OECD eChem Portal
- OECD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 OECD Portal on Perfluorinated Chemicals
- OECD, “OECD Substitution and Alternatives Assessment Toolbox (OECD SAAToolbox),”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European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 (ESIS)
-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Clearing House, Textile Mills and Clothing Manufacturing
- OECD, Emission Scenario Documents (ESD)
- OECD Substitution and Alternatives Assessment Toolbox (OECD SAAToolbox)
- OECD, Frameworks and Guides for Substitution of Chemicals, OECD Meta- Review (OECD)
- Chemical Leasing Programme (UNIDO)

모듈 9. 물

물 소비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잠재적 및 실제적 피해를 파악

분석 활동

- 의류 및 신발 공급망은 목화 재배, 가죽 공정, 섬유 생산(예. 전처리, 염색/날염, 마감) 공정에서 가장 물 소비가 많다.
- 기업은 공급망에서 목화 재배, 가죽 공정, 섬유 생산(그리고 기타 물 소비가 많은 공정)이 물 부족 지역에서 일어나는지 가능한 한 판단해야 한다.⁶⁵⁾ 기업이 기존 자료를 이용해 물 부족 지역을 파악할 것을 권고한다.⁶⁶⁾

공급업체 평가

- 기업은 고위험 단계에서 고위험 국가 또는 물 부족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급업체를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의류 및 신발 부문 경우 고위험 국가 또는 물 부족 지역에서 목화 생산, 가죽 공정, 섬유 생산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업이 공급망 상류에서 운영하는 개별 공급업체를 파악하는게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은 상자 3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65) 특정 시기에 가용한 물의 양보다 소비가 많을 때 또는 수질이 낮아 사용이 제한적일 때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물 희소성, 수질, 환경유량, 물 접근성이 물 부족에 영향을 준다.

66) OECD (2015).

기업 자체 운영에서의 피해 중단, 예방 또는 완화

- 기업은 부문 또는 하위부문에서 최고가용기술 참고문헌(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s)에서 정의한 최고가용기술(BAT)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⁶⁷⁾
- 환경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기업은 인체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위험에 대한 과학적 및 기술적 이해와 일치시키며,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유예하는 이유로 완전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언급을 삼가할 것을 권장한다.
- 또한 기업은 섬유 생산, 가죽 공정, 목화 재배에서 물 효율성을 늘리고 그리고/또는 담수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기존 지침에 기반할 수 있다. 방법의 예시로 물 절약 설비에 투자, 물 재사용, 물 소비 감소(예. 염색 시) 등이 있다. 정책과 교육을 통해 물 관리 계획을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 공급망에서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는 노력

- 기업은 공급업체가 물 효율성을 늘리고 그리고/또는 담수 의존도를 줄이도록 하는 등 물 부족 지역에서 책임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물 수요의 순증가를 해결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기업이 물 부족 지역으로부터 책임있게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물 부족 지역이 아닌 곳에서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
- 기업이 물 부족 지역에서 책임있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업체가 물 효율성 계획을 개발 및 이행하고 그리고/또는 담수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 기업은 물 효율성이 공동체와 사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공급업체에게 의사소통해야 한다.

67) IPPC (2003).

오염 및 폐수 관리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잠재적 및 실제적 피해를 파악

분석 활동

- 기업은 수질 오염 위험이 높고, 적절한 폐수 관리가 필요한 공급망 단계를 파악해야 한다.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는 목화 재배와 (섬유 및 가죽) 습식처리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 기업은 습식처리 과정이 고위험 국가에서 일어나는지 판단해야 한다. 고려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국가(또는 생산 단지)가 적절한 폐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국가가 폐수 규제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가 (즉, 감시가 신뢰할만한가)?
- 국가 차원 정보가 위 내용을 판단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현지 차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예. 토지와 대수층에 유출 위험, 희석 용량과 방류수역 민감도)
- 목화와 관련해 기업은 목화가 상류 유역에서 재배되어 집수지 오염 위험을 높이는지 판단해야 한다.⁶⁸⁾
- 기업은 목화 재배 시 화학물질(예. 비료와 해충제) 사용에 대한 규제나 그 시행이 약한 국가에서 목화가 재배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급업체 평가

- 기업은 고위험 단계에서 고위험 국가 또는 고위험 지역(예. 상류 유역)에서 운영하는 공급업체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의류 및 신발 부문 경우 고위험 국가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목화 생산, 가죽 공정, 섬유 생산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업이 공급망 상류에서 운영하는 개별 공급업체를 파악하는게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은 상자 3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68) UNEP (2010), "Sick Water, The Central Role of Wastewater Management in Sustainable Development; A Rapid Response Assessment",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Geneva.

기업 자체 운영에서 피해를 중단, 예방 또는 완화

- 기업은 부문 또는 하위부문에서 최고가용기술 참고문헌(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s)에서 정의한 최고가용기술(BAT)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⁶⁹⁾
- 환경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기업은 인체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위험에 대한 과학적 및 기술적 이해와 일치시키며,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유예하는 이유로 완전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언급을 삼가할 것을 권장한다.
- 기업은 기존 지침에 의지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아래에 포함되어 있다. 공통된 시정조치계획(CAP) 요소는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목화 재배

- 비료와 해충제에 대한 책임있는 화학물질 관리
- 물 소비와 관개 관행 최적화
- (가능한 경우) 최고가용기술 사용
- 농업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습식처리 과정 (섬유 및 가죽)

- 책임있는 화학물질 사용, 모듈 8 유해화학물질을 참고한다
- 효과적인 폐수 관리
- 효과적인 폐수처리장(ETP) 운영 및 관리
- 공장 내 기본 물 흐름 관련 폐수처리장(ETP) 운영 및 관리, 폐수 처리 단계 기능, 폐수 측정 및 표본 수집 및 분석에 관한 기술적 교육
- (가능한 경우) 무방류 또는 물 재활용할 수 있는 물 관리 지원

69) integrated IPPC (2003).

선정된 국제 문서 및 기준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hapter VI. Environment.
- OECD Principles on Water Governance

참고자료

- OECD (2015), Stakeholder Engagement for Inclusive Water Governance,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5), “Securing Water, Sustaining Growth”, Report of the GWP/OECD Task Force on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Growth,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IPPC (2003), 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 for the Textiles Industry,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 IPPC (2013), 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 on the Tanning of Hides and Skins,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 UNGC (2010), The CEO Water Mandate, Guide to Responsible Business Engagement with Water Policy,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Geneva.

모듈 10. 온실가스 배출

기후변화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중요한 에너지 소비자이자 많은 배출원인 의류 및 신발 부문에 속한 기업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본 모듈은 온실가스 배출 측정 및 감소하는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실사의 틀 안에서 온실가스와 관련한 문제를 강조하고자 한다. 기업은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온실가스를 측정, 감소, 감시, 보고하기 위한 기존 지침을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온실가스 측정

온실가스 측정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중요한 첫 걸음이다. 이 단계는 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용효과적인 배출 감소 계획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업은 온실가스를 다양한 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다.

주요 개념

CO₂-e(또는 이산화탄소 등가) - 1 단위의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각 6개의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로 표시한 보편적 단위이다. 공통된 기준으로 배출하는 (또는 배출하지 않는) 여러 온실가스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HG)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대기 가스이다. 주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그리고 아산화질소(N₂O)이다. 그만큼 많지는 않으나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로는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그리고 육불화황(SF₆)이 있다.

출처: OECD,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Public Goals and Corporate Practices, 2010

- **자체 운영:** 기업이 자체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는데 노력하도록 권장한다. 기업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활동에서 온실가스를 대기로 그대로 배출(즉, 직접 배출)하고 기업이 구매하는 전기, 열, 증기, 냉각을 통해 소비하는(즉, 에너지 간접 배출)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 **공급망:** 기업은 공급망에서의 전체 배출량을 측정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에 집중함으로써, 기업이 활동 그리고 구매, 판매,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 지속가능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상품:** 기업은 특정 상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제거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및 제품 수명주기 평가는 기업이 설계, 제작, 판매, 구매, 또는 사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원이 제한된 기업은 자체 운영 및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공통된 재료와 공정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보를 기타 산업 주체와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배출량 감소

기업 공급망에서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곳에 자원을 집중시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기업 공급망에서 배출량을 줄이고자할 때, 기업은 공급업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공급업체가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장려거나 그리고/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공급업체를 직접 지원할 것을 장려한다.

기업은 위험에 대한 과학적 및 기술적 이해와 일치시키며,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유예하는 이유로 완전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언급을 삼가할 것을 권장한다.

**〈표 13〉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고 제품수명주기 단계별 개선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의 예시**

위험 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고 개선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의 예시
섬유 선택	<p>기업은 상품 설계 시 재료와 관련해 가능성, 비용, 수요 외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1] 예컨대 합성섬유는 원료 생산 시 에너지 소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면화나 아마 같은 식물성 섬유는 생산 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며, 특히 아마는 살충제, 비료, 관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산 단계에서 배출량이 상당히 낮다.[2]</p>
적물 마감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관리에 대해 전사적 조율 조치를 포함해 현장 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부문 또는 하위부문에서 최고가용기술 참고문헌(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s)에서 정의한 최고가용기술(BAT)을 실행한다[3] • 에너지 효율적인 조치를 실행한다(예. 에너지 절약 기술, 증기 발생 및 압력 공기 최적화, 폐수와 폐가스의 폐열 회수, 공정 최적화 등) • 에너지 절약 조치 실행한다(예. 공정 및 반응 조건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실행)[4] • 오류로 인한 재가공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효율성과 품질을 개선한다 • 정확한 계량 그리고/또는 계측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작동해 실적을 측정하고 효율성 개선을 시작하는데 기본적인 단계를 마련한다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자 4에 제시했다시피 책임있는 구매 관행을 이행함으로써 긴급한 항공 배송 필요성을 줄이도록 한다. 운송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상품 공급 장소와 관련해 창고 및 물류 센터 장소를 고려한다 • 화물 운송업체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정보를 추적하고 전달하도록 요구한다[5] • 사업 단위에 걸쳐 (운송과 관련한) 배출량을 추적한다(예. 제조 및 조립 단위, 유통 센터, 고객 센터)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크기를 줄인다 •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한다

<p>사용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6] • 사용 기간이 긴 내구성 있는 제품을 설계한다 • 탄소 배출 감소 활동에 대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한다. 예컨대 세탁 빈도를 줄이고(즉, 사용 후 매번 세탁하지 않는다), 차가운 물에 세탁하고, 포장이 작은 농축 세제를 사용하고, 자연 건조 하고, 직물 종류에 따라 건조 방식을 조정한다[7] • 상품에 쓸 재료와 관련해 가능성, 비용, 수요 외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8]
--	---

- [1] 특정 섬유 종류는 사용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린넨과 같은 섬유는 다림 질할 가능성이 높다.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기타 섬유는 건조 시 에너지가 덜 필요할 수 있다.
- [2] BSR (2009), Apparel Industry Life Cycle Carbon Mapping.
- [3] See integrated (2003),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 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 for the Textiles Industry, European Commission.
- [4] 각 특정 기술 영역에서 향후 에너지 소비 감소와 특정 공정 기술에 대한 일반 관리 기술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UNIDO and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Japan, Output of a Seminar on Energy Conservation in the Textile Industry, (1992).
- [5] 화물업체가 이산화탄소 정보를 추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의 수준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큰 차이가 있다.
- [6] 그러나 LCAs에 따르면 의류 폐기로 인한 온실가스는 매우 적으며, 자연 섬유가 분해 될 때 메탄가스가 소량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See BSR, Apparel Industry Life Cycle Carbon Mapping, (2009).
- [7] OECD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에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때 미치는 환경 영향에 대해 인식을 제고”할 것을 기업에게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제6장, 6c.
- [8] 특정 섬유 종류는 사용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린넨과 같은 섬유는 다림 질할 가능성이 높다.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기타 섬유는 건조 시 에너지가 덜 필요할 수 있다.

의사소통

온실가스 의정서(Greenhouse Gas Protocol)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산정하고 보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이다.⁷⁰⁾

협력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 감소, 감시, 보고하는데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협력 형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특정 섬유, 상품, 생산 공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추적하기 위한 전 부문적인 수단을 개발한다
-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정부에게 요구한다.

제품의 전 과정 또는 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절히 측정하는데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협력이 연관있다.

참고자료

- Greenhouse Gas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 Greenhouse Gas Protocol Product Life Cycl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 (2003),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 for the Textiles Industry, European Commission.
- (2010), “NRDC’s Ten Best Practices for Textile Mills to Save Money and Reduce Pollution”, Clean by Design, National Resource Defence Council.
- Industrial Assessment Center as part of the US Department of Energy.
- Hasanbeigi, A. (2010), Energy-Efficiency Improvement Opportunities for the Textile Industry

70) 온실가스 의정서(Greenhouse Gas Protocol)는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가 주도한 다자 이해관계자 협력이다. 이 의정서는 전세계적으로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 기준 및 수단을 개발해 채택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모듈 11. 뇌물 및 부패

본 모듈은 뇌물과 부패가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건강 및 안전 기준, 환경 기준 등 본 지침에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로 이어지는 출발점같은 범죄라는 점을 인정한다. OECD 뇌물방지협약(Anti-Bribery Convention) 및 2009 권고사항(Recommendation)은 국가 당사자가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을 범죄로 규정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여러 관련 조치를 제공한다. 뇌물 거래에서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둔 국제적으로 처음이자 유일한 반부패 수단이다.

기업 정책과 관리구조에 기업책임경영(RBC)을 정착시킨다.

기업은 OECD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에 관한 모범 관행 지침(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에서 규정한 모범 사례를 고려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고위 경영진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등 뇌물 방지 및 파악에 대한 기업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이나 조치를 강력하고 명시적으로 지지하고 약속하며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등 뇌물을 금지하는 분명한 규정과 가시적인 기업 정책이 있으며
- 이사회나 감독 위원회 내부 감사 등 독립적인 감시 기관에 직접 보고할 권한을 포함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등 뇌물과 관련한 윤리 및 준수 프로그램이나 조치는 1명 이상의 고위 임원의 의무이며, 경영진으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자율성, 자원, 그리고 권한이 있다.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잠재적 및 실제적 피해를 파악

분석 활동

뇌물과 부패 위험을 파악할 때 기업은 - 국가, 부문⁷¹⁾, 거래, 사업 기회 그리고 사업 협력⁷²⁾과 같이 - 광범위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분석 활동 시 국내 또는 외국공무원과의 교류 성격과 빈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의 기존 및 잠재적 사업관계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⁷³⁾

위험 평가 시 내부 구조나 절차 자체가 위험 수준을 얼마나 높이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자주 발견되는 위험 요소는 <표 15>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기업은 OECD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에 관한 모범 관행 지침(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에 따라 내부 통제가 이행되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표 14> 외부 청렴성 위험 요인

위험 요인	예시
국가 요인	기업이 뇌물과 부패 위험이 높은 관할권에서 운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그리고/또는 민간 부문에 높은 수준의 부패를 인지했다 • 형법상 뇌물죄 등 뇌물 방지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부재하다. • 외국정부, 언론, 지역 사업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투명한 조달과 투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부문 위험	기업이 고위험 부문과 관련돼 있다.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 및 보관^[1] • 도매 및 소매 거래^[2] • 제조: 고위험 국가의 지방 기관에 의한 감시는 위험을 높일 수 있다.

71) OECD 외국 뇌물 보고서(Foreign Bribery Report, 2014.12)는 1999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외국공무원 뇌물 공여 사례 분석을 완료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 뇌물 사례는 제조업에서 8%, 농업에서 4%를 차지했다. 또한 도매와 소매 거래는 4%였다. 임대와 같은 서비스업은 1%를 차지했다.

72) Principle 3, Risk Assessment” of the UK Ministry of Justice (2010).

73) OECD 외국 뇌물 보고서(2014)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분석한 외국 뇌물 사례 중 71%가 대리인, 법률 고문, 기업 차량, 관계자, 회계사 등 중간매개체를 사용했다.

거래 위험	고위험 관할권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무원이 특정 거래에 관여된 경우 뇌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 공공 조달, 통관, 유리한 세금, 허가, 권한[3] • 국영기업 관리, 행정, 관세, 운송, 지방 정부, 환경 및 조달 공무원, 세무당국과 교류
-------	--

- [1]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and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Bribe Payers Index”.
- [2] OECD 외국 뇌물 보고서(Foreign Bribery Report, 2014)에 따르면 199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분석한 외국 뇌물 사례 중 도매 및 소매 거래는 4%를 차지했다.
- [3] OECD 외국 뇌물 보고서(2014)에 따르면 199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분석한 외국 뇌물 사례 중 운송 및 보관은 15%, 공공 조달은 57%를 차지했다.

<표 15> 내부 기업 청렴성 위험 요인

위험 요인	예시
정책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 경영진에서 뇌물 방지 전달 내용이 부재 •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도 금지됐다는 분명한 전달 내용이 부재 • 부패 금지 법률 준수를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제한적 • 기업 운영에서 뇌물 위험 관련 근로자 교육, 기술, 지식이 부족 • 공무원의 급행료/사업원활화 자금 요구에 대한 규칙과 절차가 부재 • 해외 시장에서 기업이 거래하는 대상에 대한 금품, 식사, 향응 제공에 대한 기업의 분명한 정책이 부재 • 정치 및 자선 기부에 대한 분명한 규칙이 부재 • 분명한 재무 통제 부재 (예. 기업 계좌, 소액 자금, 재고를 해외 시장, 특히 고위험 국가에서 어떻게 감시하는가? 이 자산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가?) • 계약 준수 감시에 대한 분명한 통제 부재 • 부정행위 신고 수단 및 보복으로부터 보호 수단이 부재 • 사업 협력사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이 부재
거래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시장에서 기업 계좌, 소액 자금, 재고와 관련한 감시 및 통제가 제한적 • 계약 준수 감시가 제한적 • 뇌물 공여를 숨기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장부 및 기록상 지출 항목 • 독립적인 외부 감사 부재

사업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협력사에 대한 통제 부재 • 소매 매장이 해외에서 유지 • 해외 운영에 대한 통제가 제한적 •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합작 투자 협력사나 대표자의 자격 또는 자원이 명백히 부재 • 해외 시장에서 거래하는 대상에게 금품, 식사, 향응을 제공 • 기업이나 기업의 해외 자회사, 관련 제3자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결제 유형,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 구조 또는 특별 자금 계획 • 국영기업, 외국 정부(예.민관 협력), 외국 자치정부, 외국 입법 기관, 외국 정당, 그리고/또는 정치 엘리트와 긴밀히 연결된 왕족과 사업관계 • 외국공무원 채용
-------	--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부정적 영향을 중단, 예방 또는 완화

뇌물 위험을 예방 또는 완화하는 실사 절차는 파악된 위험에 상응해야 한다. OECD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에 관한 모범 관행 지침(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에서 규정한 모범 사례를 위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한 뇌물 방지 실사에 포함해야 한다.⁷⁴⁾ 모범 관행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등 뇌물을 예방 또는 파악하기 위한 윤리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 또는 조치는 적용가능한 모든 이사, 임원, 근로자, 적용가능한 기업이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 특히 다음 부분을 포함한다.
 - 선물, 접대, 향응 및 비용⁷⁵⁾
 - 고객 여행경비
 - 정치 기부금
 - 자선 기부, 후원
 - 급행료⁷⁶⁾

74) OECD 모범 관행 지침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파악 및 예방한다는 구체적인 목적에 적용되나, 모든 형태의 뇌물을 파악 및 예방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와 인식 제고 교육 프로그램에 뇌물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75) 현지 환경에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요구 및 강요
- 상품 수령⁷⁶⁾
- 배우자나 친척에게 이사회 자리나 취업을 발표하는 등 개인적인 투자나 취업, 그와 관련된 행위
- 대리인을 비롯한, 기타 중개인, 컨설턴트, 대표자, 유통업체,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 컨소시엄, 합작 투자 협력업체(이하 “사업 협력업체”) 등과 같은 제3자와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외뇌물 예방과 파악을 위해 마련된 윤리, 준법 프로그램 및 조치는 특히 다음과 같은 필수 요소를 고려하여 고안한다.
 - 사업 협력업체에 대한 적절하고 정기적인 감독 및 고용과 관련된 위험 기반 실사의 문서 기록
 - 해외 뇌물 금지 관련 법 준수에 대한 기업의 의지와 뇌물 예방 및 파악을 위한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조치에 대해 사업 협력업체에 공지
 - 사업 협력업체에 상호 간 의지 표명을 모색⁷⁸⁾
- 해외뇌물의 목적이나 뇌물 은폐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한 공정하고 정확한 장부, 기록, 계정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의 재무 회계 절차 체계 마련⁷⁹⁾
- 가능한 경우 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의 모든 임직원에 실시하는 해외 뇌물 관련 기업 윤리,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에 대한 교육을 문서화하고 주기적 대화가 가능한 제도 마련⁸⁰⁾
- 기업의 모든 임직원이 해외뇌물 근절을 위한 윤리, 준법 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에 대한 준수를 적극적으로 지원,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마련
- 특히 외국공무원을 포함해 뇌물 관련 기업의 윤리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조치의 위반, 또는 해외뇌물 근절을 위한 법 위반 시 모든 직급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징계 절차 마련⁸¹⁾

76) OECD 2009 Anti-Bribery Recommendation.

77) UNGC (2010).

78) 예컨대 뇌물 방지 또는 부패 방지 준수 내용을 모든 제3자 계약서에 포함하고 고위험 공급업체가 뇌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9) OECD 2009 Anti-Bribery Recommendation.

80) 대면 방식은 공급업체 구성원이 질문하고 의견에 답할 수 있어 선호되나 이 방식이 비용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 온라인 교육이 유용한 대안이다. UNGC (2010), pg. 21.

81) OECD 2009 Anti-Bribery Recommendation.

이에 더해 기업에게 다음 내용을 권장한다.

- 고위험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우 구매 공급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부패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예. 사전 자격 평가)를 실시한다.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선호 공급업체” 관계를 설정할 때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관련된 모든 부문 차원의 전체 뇌물 방지 구상과 다자 이해관계자 절차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⁸²⁾

추적

기업은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뇌물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절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 기업 구성원 설문조사, 교육을 통한 질문, 답변은 근로자와 그 관계자가 뇌물 방지 정책의 지속적 개선에 대해 알리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⁸³⁾
- 기업 고위 관리자를 위한 정기적인 공식 검토 및 보고를 고려할 수 있다.⁸⁴⁾
- 뇌물 방지 절차의 효과성에 대해 외부로부터 확인 또는 검증받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⁸⁵⁾

82) 예컨대 해상 부패 방지 네트워크(Maritime Anti-Corruption Network)는 뇌물, 급행료, 기타 형태의 부패 방지를 위해 해상업에서 모범적인 기업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해상 기업 및 고객사 네트워크이다.

83) Principle 6, Monitoring and Review” in UK Ministry of Justice (2011).

84) 위와 동일. 83.

85) 위와 동일. 83.

선정된 국제 문서 및 기준

-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VII. Combating Bribery, Bribe Solicitation and Extortion.
-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Anti-Bribery Convention)
- The OECD 200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2009 Anti-Bribery Recommendation)
- 2009 Recommendation on Tax Measures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2006 Recommendation on Bribery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000)

참고자료

- OECD, Country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www.oecd.org/corruption/countryreports/implementationoftheoecdantibriberyconvention.htm
- OECD, Regional anti-corruption programmes www.oecd.org/corruption/regionalanti-corruptionprogrammes.htm
- OECD (2006), OECD Risk Awareness Tool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Weak Governance Zone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OECD (2014), OECD Foreign Bribery Report: An Analysis of the Crime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OECD (2010), OECD 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UK Ministry of Justice (2011), The Bribery Action 2010 Guidance, UK Ministry of Justice, London.
- UNGC (2010), Fighting Corruption in the Supply Chain, A Guide for Customers and Suppliers,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Geneva.

모듈 12. 가사노동자로부터의 책임있는 공급

본 모듈의 주요 대상은 브랜드, 의류 및 신발 제조업체, 그리고 구매 중간업체이다.

본 모듈의 목적은 가사노동자의 소외 위험, 특히 착취 피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의 공식화와 합법화를 통해 책임있는 공급망을 만드는 동시에 가사노동자에게 경제와 개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본 지침은 항상 적용되거나 즉시 해결되는 방식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정부, 국제기구, 후원자, 공급망에 있는 기업, 시민사회단체는 협력을 통해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거나 국내법에 따라 적당하다고 간주된 보완적인 접근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자 15. 가사노동자와 관련한 인권 침해 및 노동 착취 방지 및 완화를 위한 기본틀

아래 정보는 가사노동자와 관련한 인권 침해 및 노동 착취 방지 및 완화에 필요한 기본틀을 제공한다. 기업은 실사 절차를 설계할 때 아래 기본틀에 맞춰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사노동자와 관련한 인권 침해 및 노동 착취 방지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다. 가사노동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좋은 고용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공식화되어야 한다. 본 지침에서 말하는 공식화란 노동자를 비공식 일자리에서 공식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가 비공식적인 원인은 많으며 일반적으로 합법성과 무관하다. 예컨대 “자영업 상태”는 공식적인 계약서를 제공할 책임을 방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고용주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사노동을 하도록 가사노동자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 제한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특히 더 취약하다. 입법 개혁을 통해서만 공식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공식화를 한 번의 조치가 아니라 과정으로 간주해야 한다.^[1] 이 공식화 과정은 다음을 통해 촉진할 수 있다.

- 공식화를 유인하고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가내 생산 제도가 공식화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2]

- 가내노동의 다양한 종류와 규모를 인정하고
- 가내노동과 다른 비공식 노동을 공식화하는데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 공식화 과정을 위해 방식을 마련하고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구상을 만들거나 참여하고
- 근로자를 합법화를 촉진한다.

운영 합법화

“노동자 지위” 그리고/또는 “사업자 지위”에 대한 법적 정체성과 인정은 근로자를 공식화하는데 필요한 첫 조치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대로 이 지위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한다.[1] 기업,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는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계약서나 다른 인정을 받도록 가사노동자를 돕고, 기타 규제 조치를 고려해 가사노동을 합법화하도록 고려할 수 있다. 가사노동을 합법화할 때 충족할 수 없는 기대치를 가사노동자에게 부과해 가사노동자를 더 소외하도록 하지 않는다(예. 집에서만 노동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에게 특정 지역에서 노동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단체, 대표 그리고 사회적 대화

가사노동자 단체는 좋은 고용 조건을 만들기 위한 가시성, 인정,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이다.[2] 가사노동 특유의 필요사항과 여건을 고려해, 가사노동 단체는 다른 노동단체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단체를 만드는 첫 번째 조치는 지역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공동체나 여성 단체가 추후 연합이나 노조가 될 수 있다. 이 부문에 여성이 압도적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단체는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자를 위해 노조나 기타 주체가 줄 수 있는 도움으로는 인식 제고,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 법적 지원, 의료 보험, 신용 및 대출 계획 그리고 협동조합이 있다. 특히 취약성이 높은 비공식 경제 노동자를 위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긍정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 ILO (2008)

[2] 어떤 공식화 계획이든 현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TI, *Homeworker Guidelines* (2010)

기업을 위한 권고사항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잠재적 및 실제적 피해를 파악

- 가사노동자는 이 부문의 다양한 공급망에서 볼 수 있다. 자수, 직조와 같은 전통적은 수공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고, 의류 기계를 이용해 더 노동집약적인 공정에 고용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이 가내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는 상품군과 생산 공정을 파악할 것을 권고한다.
- 기업은 가내노동이 만연하고 가내노동자가 착취당할 위험이 높은 공급 국가를 파악해야 한다.
- 기업은 근로자로부터 책임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는지 우선순위에 따른 공급업체를 평가해야 한다. 조치의 예시는 아래를 참고한다.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

기업이 가내근로자로부터 책임있게 공급받도록 촉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아래 조치를 이행하거나 공급업체가 이행할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하도록 권장한다.

- 가내노동자와의 계약과 연관된 중간업체/대리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 평가 제도를 수립한다. 중간업체는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 가내노동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내부 절차를 수립한다(예. 계약을 처리하는 대리업체가 사전 자격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다)
- 가내노동자와 직접 계약하는 중간업체와 계약 관계를 맺어 투명성 요건을 수립한다. 예컨대 중간업체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업무를 받는 모든 노동자 기록한다. 가족이 노동하는 경우 가내노동자로 기록한다. 예컨대 아버지나 남편만 가내노동자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 할당된 업무량과 지급액에 대해 기록한다. 가내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업무 건당 지급받으므로 중간업체는 최저임금이 될만큼의 적절한 건당 지급 시기를 기록해야 한다.
 - 가내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 또는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기록한다.

- 중간업체, 대리업체에게 법적 의무와 기업책임경영(RBC) 정책에 대해 교육을 제공한다.
- 적절한 경우 가내노동을 공식화하고 착취로부터 보호할 지역 구상을 파악하고 협력한다. 지역 구상은 권리에 대한 교육, 기술에 대한 교육, 합법화,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영역에 초점을 둘 수 있다.
- 가내노동자가 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또는 중앙 정부와 참여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비공식 경제 노동자까지 법이 적용되도록 기업(또는 산업이) 지원한다고 알린다
 - 비공식 노동의 근본 원인에 대해 조명하고 정부가 근본적인 장애물을 제거해 주류 경제와 사회 활동에 편입되도록 독려한다
 - 건강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장려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기업(또는 협력하는 경우 산업)이 이미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가내노동자를 포함한 비공식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도록 지원한다고 알린다.

선정된 국제 문서 및 기준

- ILO Home Work Convention, 1996 (No. 177) and ILO Recommendation No. 204 Concerning the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참고자료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Annex
- ILO (2008), The Informal Economy: Enabling Transition to Formalization, Background document to the Tripartite Interregional Symposium on the Informal economy: Enabling Transition to Formalizat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enev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부들 간의 고유한 협의체다. OECD는 기업지배구조, 정보경제, 인구 고령화 등 새롭게 발생하는 우려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기업이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에 해결책을 찾고, 모범 사례를 파악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OECD 회원국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그리고 미국이 있다. 유럽연합(EU)도 OECD의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OECD Publishing은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OECD 통계 수집 및 연구 결과는 물론 회원국이 합의한 조약, 가이드라인, 기준을 광범위하게 배포한다.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지침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지침’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실사 권고사항을 의류 및 산업 공급망에 이행함으로써 기업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의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 이 지침은 의류 및 신발 부문 기업의 운영과 정부 정책이 조화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업 그리고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 간 상호 신뢰 기반을 강화한다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뒷받침한다. 본 지침은 또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포함된 실사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기업을 지원한다. 본 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관련 ILO 협약 및 권고사항,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의 원칙에 관한 삼자 선언(ILO Tripartite Declaration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과도 일치한다. 구체적인 위험 영역 관련 실사에 대한 모듈과 함께 본 지침은 기업이 의류 및 신발 부문에서 운영하고 책임있게 공급망기 위한 완전한 패키지를 제공한다. 본 지침은 OECD 회원 및 비회원 국가, 기업, 노조, 시민사회 대표자가 다자 이해관계자 과정에 심도있게 참여하고, 기업책임경영 실무단(Working Party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 감독함으로써 마련되었다. 본 지침은 섬유 및 의류 부문에서의 OECD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심층 보고서에 기반하며, 라나 플라자(Rana Plaza)가 붕괴된 비극적인 사건 이후 여러 NCP가 2013년 6월과 2014년 사이 작성한 성명서에 대한 대응이다.